

발간등록번호	11-1383000-000445-01
연구보고	2013-45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2013.12.

연구보고 (2013-45)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2013. 12.

연구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 유 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최 현 미 (평택대학교 부교수)

최 소 연 (남서울대학교 조교수)

연구보조자 : 김 가 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여성가족부

본 보고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제출문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에 관한 연구 용역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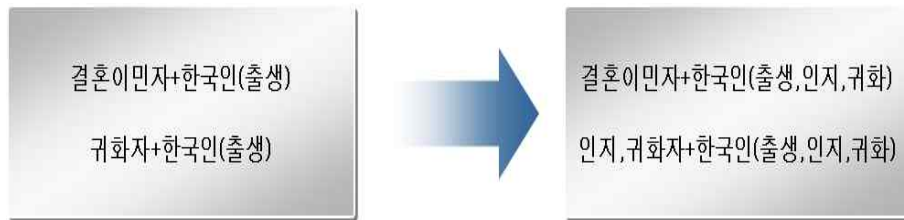
2013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연구요약

I. 연구배경 및 목적

-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다문화가족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이래, 2011년 4월 법안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의 지원범위가 ‘인지 또는 귀화로 인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확대되어 정책의 특성화 및 세분화가 필요함.

<다문화가족 정책대상의 확대>



-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과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지역계획 수립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함.
-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위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정책은 유사하고 중복되며, 부처 간에 칸막이식 수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정책의 획일성과 일회성·행사성 지원에 편중되어 정책적 효과가 떨어짐.
- 다문화가족정책 방향은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과 적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다문화가족주기의 변화와 다문화가족 내에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지 못하는 실정임.

- 다문화가족이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인 0.53%에 비해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2,000억원에 육박하여 특정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지원이라는 지적과 함께 내국인과의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내국인과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안전행정부, 2012; 통계청, 2012; 국회예산정책처, 2012).
- 그럼에도 지금까지 수행된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는 일반결혼이민자 또는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단편적·개별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되어 통합적·균형적인 다문화가족정책 도출을 위해 다문화가족 정책과 내국인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평가한 기초연구가 미흡함.
-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정책대상의 확대로 새로운 다문화가족정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전반적인 복지정책 틀 내에서 진단하고 새로운 지원 틀에 대한 기준마련이 요구됨.
 -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문화가족을 포괄하고 균형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정책 욕구 및 사각지대의 도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함.
 - 다문화가족 정책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기준과 비교분석하여 역차별·불균형적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공급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평가·진단하고, 수요측면에서 다문화가족 특성 및 정책욕구, 서비스 수혜현황 및 사각지대 등을 분석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음.
 - 첫째,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를 분석함.
 - 둘째,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 셋째,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 및 거주기간 등 특성 및 생애주기별 정책욕구를 진단함. .
 - 넷째, 다문화가족의 서비스별 수혜현황 및 사각지대를 분석함.

- 다섯째, 다문화지원 범위, 정책방향 정립, 부처역할 및 기능재편, 전달체계, 형평성 및 사각지대 개선, 전문화, 지원기준 및 지역사회통합 등 전반적인 다문화 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함.

II.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연구동향

1. 이론적 배경

□ 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범위 변화

-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전에는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 남성가족, 이주민 가족 포함
-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출생에 의한 한국인으로 구성된 협의 개념으로 사용
-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 이후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출생·인지·귀화에 의한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다문화가족 범위 확대

□ 본 연구의 다문화가족 개념 및 범위

-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법률적 정의에 근거하여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출생에 의한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협의의 결혼이민자가족으로 규정하며, 가족 형태는 한국인배우자와 결혼이민자로 결합된 가족으로 한정

2. 국내외 연구동향

-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초기연구는 결혼이민자 정착단계 등 특정 정책 문제 또는 중앙과 지방의 다문화사업 추진체계의 한계점 등에 대한 연구가 단편적·부분적으로 수행됨(최무현, 2009; 한승준, 2009).
- 「제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국내외 다문화정책 비교분석 연구, 인권보호·다문화주의, 장기적·거시적 관점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수행됨(김계선, 2010; 배금태, 2010; 이종윤, 2010; 김세환, 2011; 김응성, 2011)

- 다문화가족 지원의 성과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사회적응 및 생활지원 측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정책적 효과가 크지 않고,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종합적인 평가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음(김유경 외, 2009; 박기관, 2009; 김준식·안광현, 2012).
- 국외연구동향으로는 주로 국가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사회문화적 배경과 정책기조 및 방향, 정책내용과 성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김유경·최현미 외, 2008; 김승권·김유경 외, 2009; 신재주, 2010).
- 국가별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대두되는 배경은 상이하나 공통적으로 내국인과 다문화가족의 화합·적응에 정책목표를 두며, 호주는 동화주의에 근거한 정책이 이루어지는데 비해 독일과 일본은 다문화주의에 근거하여 정책이 수행됨.

Ⅲ.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1. 중앙부처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 중앙부처 정책은 가족생활주기 틀에 근거할 때 결혼준비 및 적응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 및 교육기, 가족역량강화기, 사회통합을 위한 인권보호 및 다문화 인식제고 등으로 분류됨.
- 중앙부처 정책은 유사 및 중복되며,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욕구를 포괄하지 못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함.
 - 부처 간에 유사한 사업을 중복 수행하여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사업 수행과 성과 기준에 있어서도 편차가 발생함.
 - 다문화가족 형성과 발달주기에 따른 부처별 예방적·전문적 차원의 지원이 제한적으로 수행됨.
 - 초기적응에 편중된 한국어교육체계를 진단하고 효과성 높은 언어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

2.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관련 서비스는 주로 다문화 인식개선, 초기정착과 관련된 지원, 자녀지원에 대한 예산은 비중이 높은 편이나, 결혼이민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업지원 등은 저조함.
- 지방자치단체별 특성화 사업이 수행되나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며, 여러 지역에서 중복으로 수행되는 과제도 특화사업으로 분류하여 차별화와 독특성이 떨어짐.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입학전형의 기회제공,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등록금 지원 등은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형평성을 담보하는 제도적 장치 또는 적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리적, 서비스 질적 제공에 한계가 발생하며 여성 결혼이민자 중심의 초기적응에 집중되어 가족통합적 접근이 저조한 실정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은 지역특성 및 가족생애주기를 반영하지 않아서 실효성이 저조하므로 생애주기를 고려한 서비스 설계와 함께 전문성과 기능강화에 대한 논의 제기됨.

4. 다문화지원정책의 진단

-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와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할 때 다문화가족 범위는 결혼이민자에 국한하여 다문화가족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높으므로 다양성에 기반하여 국내 체류 중인 이민자가족이 포괄되어야 할 것임.

- 중앙부처간 중복의 최소화와 전달체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정책과제별 주무부처가 우선적 책임을 갖고 추진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주기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수행되고 있으나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체계마련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인으로 생활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대학 입학 할당이나 가산점에 대한 논의는 기회균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내국인과 역차별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인 취약한 경제가족신체요인 등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의 접근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게토(Ghetto)를 형성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결혼이민자의 초기 한국생활 적응이후에 지역사회 내 적응과 통합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연계망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IV. 해외선진국 사례분석

1. 프랑스

- 프랑스의 이민자란 10년 체류증을 받은 경우로 10년 단위로 연장되며 이민청(OFIG)을 중심으로 이민정책이 수행됨.
 - 지원대상 및 범위는 취업으로 체류한자, 자국에서 생활할 수 없어 이주한자, 이민자의 거주정착 지원, 체류증이 없는 자 등임.
- 이민자 지원은 초기적응을 위해 프랑스어 40시간 기본적인 이수와 언어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역의 언어교육센터를 연결하여 180시간 교육받도록 지원하며, 이민희망자의 직업력·자격·학위 등을 확인하여 연계·지원함.

- 이외의 다양한 서비스는 사회구성원으로 동일하게 받는 것이 기본이며 내국인과 구분하지 않음.

2. 호주

- 이민청(DIMA)의 이주민 정착계획부서가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독립기구로 다문화위원회를 설립하여 다문화관련 사업의 자문역할, 접근형평 관련 전략 수립의 공식적인 역할 담당, 다문화정책 수립에 대한 연구자문 역할, 문화적 다양성 촉진 등을 수행함.
- 이주민 지원 특별프로그램으로 이주 초기에 언어·기술 교육, 정착지원프로그램과 통번역서비스, 사회통합프로그램 등이 제공되며, 복지혜택은 일반 호주 시민과 동등하게 적용됨.

3. 캐나다

- 캐나다는 2부서 통합모형으로 이민청(CIC)은 이주민의 첫 3년 간 지원정책을 주도하고, 그 이후는 문화유산부(Department of Heritage)와 기타 다른 정부기관에 이관되는 형태로 운영됨.
-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지역사회 기반의 비영리, 비정부조직 등 제 3의 기관을 통해 운영됨.
- 이민자를 대상으로 무료 언어지원프로그램(LINC), 이민자 정착적응프로그램(ISAP), 일반시민과 호스트프로그램, 재정착 지원프로그램(RAP), 저금리 대출프로그램 등이 제공됨.

4. 스웨덴

- 스웨덴은 의회, 정부, 이민법원, 이민대법원, 이민청위원회 등에서 이민정책을 수행하며, 비자·시민권 관련 업무는 이민청에서 지원하나, 이민자의 실질적인 지원은 기초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구조임.

○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는 정착에 필요한 의료, 주거, 언어교육, 직업교육 등 미시적 정책을 수행하며, 이민청과 협정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음.

□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소유한 이주민에게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연금(PAYG), 고용수당, 아동수당, 공적 부조 등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개별적인 욕구를 가진 이주민을 위해 스웨덴어 및 모국어 교육 지원, 취업지원, 통역 및 양육비, 법률지원, 사회참여 및 옴부즈맨 서비스를 제공함.

5. 노르웨이

□ 2010년부터 시행된 새이민법(The New Immigration Law)은 이민자 수를 제한하고 이민자의 질을 고려하는 목적으로 시행됨.

○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4년 이상 노르웨이에서 정착하며 최저생계가 가능해야 하고, 결혼을 위한 입국 시에도 2년 간 일하거나 공부해야 하는 조건이며, 시민권을 부여받은 후에는 내국인과 동등한 복지혜택을 받음.

□ 이민자 사회적응 프로그램으로는 노르웨이 언어 및 사회교육, 초기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망명자·해체가족을 대상으로 자립지원이 제공됨.

6. 미국

□ 미국은 공식적인 이주민 정착 정책이 부재하며, 이민자 지원은 종교단체·지역 사회에 기반한 비영리 기관으로 정부차원의 언어교육 및 서비스 지원에 대한 자격 및 지원기준의 규정이 없음.

□ 합법적인 사회서비스 지원 대상은 합법적인 영주권 소유자, 난민, 최소 1년 임시입국허가자, 추방 보류자, 피학대 가족 등임.

○ TANF, SSBG, Medicaid 등은 난민·망명자, 원주민, 인신매매 피해자를 제외하고 처음 5년간 신청 불가능함.

V. 다문화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전문가 그룹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문화가족의 사각지대 특성 및 필요한 정책	다문화가족정책 전달체계상 문제점 및 협력방안	내국인과의 형평성 및 지원기준 방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저조한 이용원인: 초기언어 중심 지원, 평일·공휴일 접근 제한, 가족원의 심리적 장애, 농촌의 거리적 접근 제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의 차별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가능 시간으로 사각지대 발생: 직원의 주말·야간근무, 건물개방 한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계로 사각지대 발생: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한계(인력제한 등) •복합가정·중도입국 자녀 등 적절한 지원 제한적 •남성 결혼이민자 접근성 저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부처의 일원화 •이용률·실적위주 평가: 질적 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적취득 강화 •한국사회통합 지향 지원 •정책의 형평성 담보를 위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 고려 •거주기간별 차등 지원: 초기입국시 적응지원, 국적취득 후 내국인과 동일 지원 •경제요인인 소득별 차등 지원
공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활동으로 센터 이용 어려움 •생애주기단계별로 필요시 센터접근 필요 •지자체 특수사업을 위해 예산활용의 융통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별정착단계별 서비스 필요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 조사를 통해 실증적 자료확조, 정책기초자료로 활용 •중도입국자녀 발굴 어려움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현장과의 소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지원 부처통합 및 총괄부서 필요 •부처별 정책은 특색이 있고, 접근성에서도 효율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족 정착 이후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에서 지원 필요
학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사업의 지역맞춤형 설계 필요 •이민자 역량강화를 위한 센터의 역량 강화(상담사) •근로자를 위한 공휴일 언어교육시스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착주기별 지원시스템 마련 필요 •중도입국자녀 학교 적응을 위한 학교 내 상시인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지원 사업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플랫폼 역할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정책의 가족 정책으로 통합 •적응주기 및 욕구중심의 지원체계 마련

VI.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정책욕구

- 거주기간별로 연령 및 교육수준, 출신국적 분포에 차이를 보여 다문화정책 기준으로 생활주기에서 오는 차이 외에 인적자원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임.
 - 장기거주자는 30~40대 연령층, 대학이상 학력소지자, 중국 한족과 조선족 출신이 많은 데 비해, 단기거주자는 20~30대 연령층, 고등학교 이하 학력 소지자, 베트남이 출신이 높은 분포를 보임.
- 거주기간별로 경제수준, 국적 및 언어 특성 등에 차이를 보여서 관련 지원에 거주 기간 요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임.
 - 장기거주자는 월평균 가구소득과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고, 취업여부는 거주기간이 2년 미만과 2년 이상 간에 2~3배까지의 차이를 보임.
 - 국적취득은 5년 미만과 5년 이상 간에 5~6배까지의 차이를 보였고, 한국어 수준도 '중'과 '상'을 기준으로 장기거주자의 경우 높아서 거주기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임.
- 다문화가족의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과 한국어 활용으로 나타나서 지원이 요구되며, 부모가 희망하는 자녀의 학력수준은 4년제 대학 이상이 4/5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데 비해 교육비 부담으로 모국유학 희망도 높아서 저출산시대에 양질의 인구확보를 위해 다문화 자녀의 학습권 보장이 요구됨.
 -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지출 31.5%, 한국어 가르치는 것이 16.0%로 높게 나타남.
 - 부모가 희망하는 다문화 자녀의 학력수준은 4년제 대학교 이상이 85.7%로 고학력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모국 언어·문화 또는 교육비 때문에 모국유학 희망률은 45.2%로 과반수에 근접함.
- 다문화 가족관계는 혼인상태 및 거주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여서 특성별 사례관리 접근이 요구됨.

- 가족관계 불만족도는 배우자와 자녀에 비해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장기거주 및 해체가족의 경우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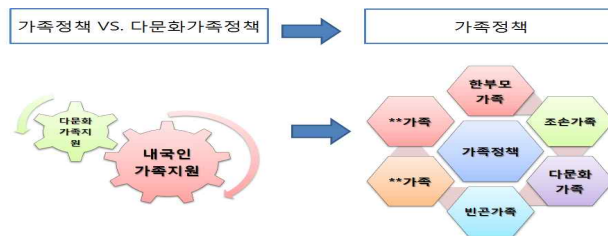
VII. 다문화가족의 서비스별 수혜현황 및 사각지대 분석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10명 중 3명은 빈곤을 경험하였으나, 비수급은 4/5분포로 일부는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해체가족과 장기거주자에서 발견되어 안전망 장치가 필요함.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빈곤율은 30.0%로 나타났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비율은 83%로 일부는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추정됨.
 - 특히 동부지역 거주자, 30대~40대 중장년층에서, 이혼·별거자와 10년 이상의 장기거주자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나타남.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서비스 이용수준은 46.2%로 과반수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고, 특히 도시지역거주자, 고연령층 및 장기거주자, 해체가족, 한국어 수준이 높은 경우에서 발견되어 지역, 거주기간 및 혼인상태 등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다문화지원이 필요함.
 -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서비스 무경험률은 53.8%로 다문화가족의 과반수 이상이 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예산대비 정책효과가 다소 떨어짐.
 - 서비스 비이용은 동부지역 거주자가 읍면부보다 2배 높았고, 고연령층 및 장기거주자의 경우 높았는데, 이는 현재 설계된 서비스가 주로 단기거주자 지원에 집중되어 장기거주자의 대응서비스가 부재한 것으로 설명됨.
- 다문화인프라 인지도에 비해 이용수준은 저조하였으며,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인지도에 비해 이용도가 낮았고, 특히 동부지역 거주자, 남성, 고연령층, 이혼·별거·사별자에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인지도와 이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설계가 요구됨.

VIII.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방안

1. 다문화가족범위 확대와 가족정책·이주민정책으로 전환

- 다문화가족 범위는 다양성에 기반을 둔 이민자와 국내체류외국인을 포괄하는 범위로 확장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할 때 다문화가족 지원대상은 결혼이민자, 난민, 영주권자, 전문외국인력, 외국국적동포, 이주노동자 사실혼 관계자 등 국내체류 외국인 해당
- 장기적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정책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틀 내에서 다양한 가족형태로 접근하여 사회통합 지향
 - 다문화가족지원은 고유한 욕구를 중심으로 가족정책 틀 내에서 조명, 직면한 욕구에 대한 차별된 지원 방향으로 재설정
 - 결혼이민자 중심의 다문화가족지원에서 이민자지원의 다문화가족정책으로 전환 고려



2. 중앙부처 간 역할과 기능 재편

- 중앙부처 간 기능 초점화
 - 다문화가족 대상 중심 지원에서 다문화가족의 욕구와 문제 중심의 지원을 초점화하여 부처 간 중복 최소화 및 책임 명료화 지향
- 중앙부처 간 컨트롤 타워 정비

- 중앙부처 간 다문화가족의 특정 욕구중심의 접근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필요
- 컨트롤 타워 역할은 중앙부처 간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면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력 및 연계 등 수행

□ 중앙부처 간 역할과 기능 재편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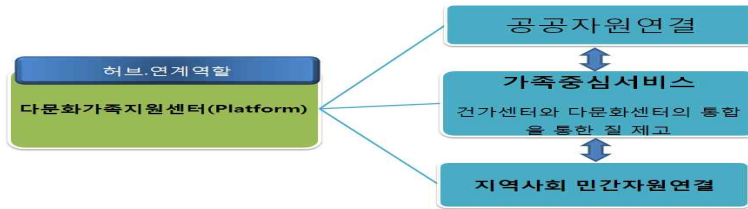
- 가족생애주기 및 영역별 욕구에 기반 한 중앙부처의 일차적 역할과 기능 분담
- 다문화 이해와 결혼이민자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 배치



3.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전달체계 개선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플랫폼 역할 강화

- 외국인근로자,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플랫폼 역할 강화 필요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민자를 위한 종합센터로서의 조정과 연계 등의 원스톱 역할을 담당할 경우 서비스전달체계상의 분절·파편화의 최소화
- 향후 가족정책 틀 내에서 다문화가족정책으로 접근할 경우 가족서비스의 효율적 전달 측면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고려
 - 통합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know-how를 반영할 수 있도록 별도의 다문화 팀 운영, 가족정책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능적인 역할 수행 담보



□ 다문화가족지원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 제고

- 시간적 접근성 확보
 - 주말·야간 등 다양한 시간 서비스 제공 확대
- 지리적 접근성 보완
 - 선-후배 멘토링 활용,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적응단계별 자원 연결
 - 농촌지역 등 교통이 용이하지 않고 수요가 발생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 이동사무소 설치
- 심리적 접근성 해소
 - 다문화(가족)센터에 권한 부여
 - 한국어 기본교육 의무이수(프랑스의 경우 40시간), 법률상식·한국역사·문화 기본이수 등



4. 다문화가족지원정책 형평성 담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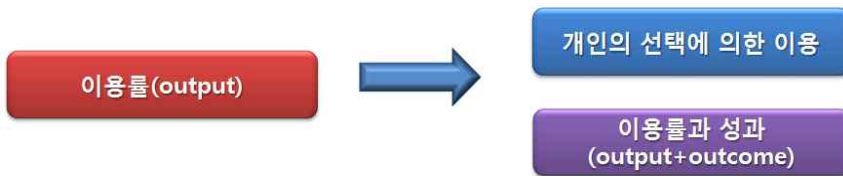
□ 가족정책 틀 내에서 접근

- 다문화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예산으로 국한하는 관점에서 가족정책의 관점으로 접근 필요

- 자산조사에 근거하여 내국인과 지원 통일화
- 다문화가족 욕구 중심의 선별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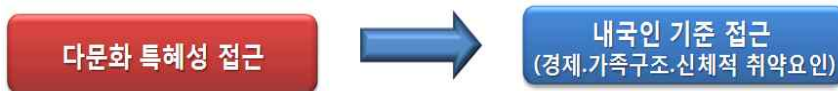
□ 다문화정책의 성과중심 접근

- 다문화가족의 이용률을 지향하는 정책은 과다 이용으로 연결되어 내국인과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용률에서 성과 지향의 정책으로 전환
 - 이용률에 대한 비교 등 단순 지원을 지양하고 다문화가족이 직면한 문제의 개선 중심으로 접근, 성과와 역차별에 대한 논란 최소화



□ 다문화정책의 차별성 제거

- 다문화 특혜성 지원(다문화가정 자녀의 대학입학 할당 및 가산점, 주택분양의 우선순위)은 기회균등 보장 측면에서 내국인과의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므로 다문화의 선별적 접근을 지양하고 내국인의 취약계층 측면에서 동일하게 접근 형평성을 담보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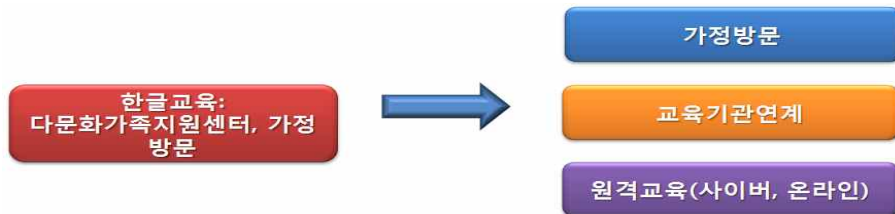


5. 가족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지원의 사각지대 개선안

□ 접근성으로 인한 사각지대 개선

-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을 일정수준 유지하는 것은 이민자 역량 및 자녀의 언어발달과도 관련이 높아서 언어역량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어야 함.
 - 일정 수준까지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 시간·지리적·심리적 제약이 있을 경우 다문화가족센터 이외에 지역사회의 대학이나 학교, 온라인 강좌 등을 통해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 확보



- 재혼으로 인한 전혼자녀의 중도입국시 심사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방임에 대비하여 공적시스템 강화
 - 입국심사와 무관하게 아동의 보육·교육지원이 담보되도록 아동인권차원에서 공감대 형성과 실효성 높은 제도적 접근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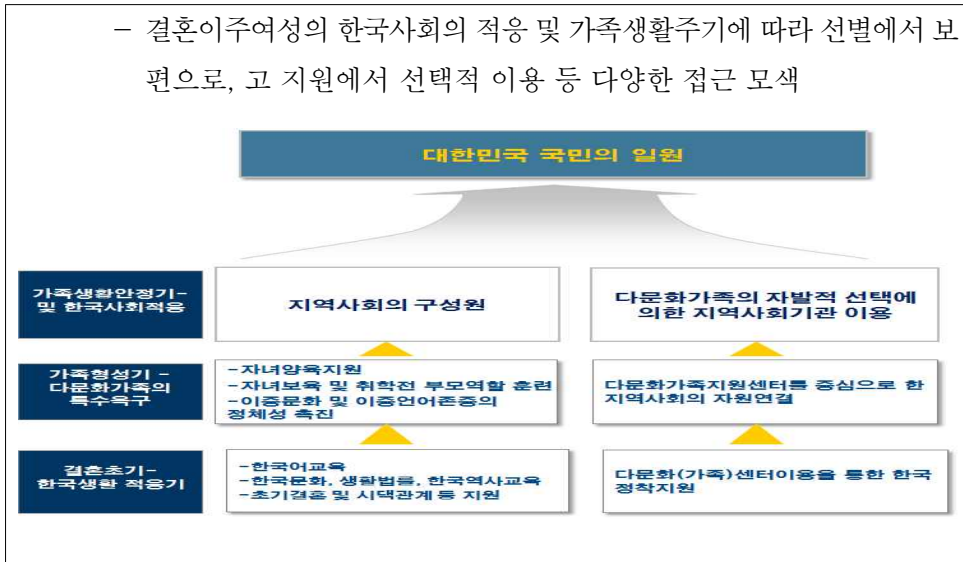
□ 결혼이민자에서 가족중심으로 전환

- 가족발달주기에 따른 여성 결혼이민자 배우자 및 남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가 발생하여서 부부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이 요구됨.
 - 다문화부부의 중년기·노년기에 대응하여 중년기·노년기 부부관계 개선, 노년기의 우울, 노년기의 경제적인 문제 등 새로운 욕구와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방안 제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 : 지역사회 기관과의 연계

- 다문화가족의 복합적·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의 전문화된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서비스의 전문화 지향
 -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센터, 가족상담센터 등과 네트워크 구축
-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여 지역사회의 내국민과 동일한 기준에서 접근

-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의 적응 및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선별에서 보편으로, 고 지원에서 선택적 이용 등 다양한 접근 모색



6. 다문화가족정책의 전문화 방향 개선안

- 지역사회 사례관리 접근 : 복합적 욕구 다문화가정
 - 다문화가족의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상담, 자원 연결, 정신건강 문제, 학교적응 문제, 갈등위기 대응 등 복합적인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함.
 - 위기가정-위험에 노출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복합적 욕구와 지역사회 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적응을 지원함.
- 인력의 문화적 역량 강화 및 다문화상담인력 배출
 -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상담가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함.
 - 대학 교과과정에 문화적 역량을 교육하는 체계 마련
- 문화충돌 예방을 위한 '문화 안전망'구축
 -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때 사회전반의 문화적 민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 안전망'이 고려되어야 함.
 - 이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자국민과 이주민 매칭 프로그램 활성화

- 다문화서비스 담당공무원을 양성·배치하여 이민자와 정부 간 의사소통 조력자로 활용

7. 다문화가족의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안

□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지원기준

- 다문화주의 관점에 기반한 문화적 다양성 수용정책
-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 등 역량강화 정책

□ 다문화 관련 기관 간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통한 지원기준

-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효과를 제고하는 지원기준 담보
- 지역사회 내 상호교류 및 실무자 간 팀 접근

□ 거주기간에 기반 한 보편과 선별적 지원 기준 마련

- 초기적응 등 보편적 서비스 지원에 적정기한 설정
-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선별적 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의 균형화

- 다문화가족 대상의 지원정책에서 이민자, 학생, 가족에 대한 지원의 균형이 필요함.

□ 거주기간을 고려한 정책차별화

- 한국사회 거주기간에 따라 결혼이민자가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접근 방향을 모색함.

□ 지원서비스의 포괄성

- 여성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 참여 제고를 위한 포괄적인 지원서비스가 요구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연구동향	11
제1절 다문화가족개념 및 범위	13
제2절 국내외 연구동향	41
제3장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91
제1절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논의	121
제2절 중앙부처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152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154
제4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187
제5절 다문화지원정책의 진단	188
제4장 해외선진국 사례분석	199
제1절 해외선진국의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203
제2절 각국 사례	209
제3절 시사점	217
제5장 다문화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221
제1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대상 FGI	231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 담당 공무원 인터뷰	241
제3절 다문화가족지원 지원기준 개선방향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254
제4절 시사점	268

제6장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정책욕구	941
제1절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분포	151
제2절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정책욕구	751
제3절 시사점	19
제7장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수혜현황 및 사각지대 분석	1·8 1
제1절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서비스 수혜현황	381
제2절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사각지대	801
제3절 시사점	27
제8장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방안	92
제1절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 확대와 가족정책·이주민정책 접근으로 전환	1·1·2
제2절 효과적 정책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간 역할과 기능 재편	3·1·2
제3절 다문화가족 지원 전달체계 개선안	512
제4절 다문화가족 지원의 형평성 담보	712
제5절 가족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지원 사각지대 개선안	9·1·2
제6절 다문화가족 지원의 전문화 방향 개선안	322
제7절 다문화가족의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안	5·2·2
참고문헌	29
부록	237

표목차

<표 3- 1> 결혼준비 및 적응기	7	2
<표 3- 2> 임신·출산지원정책	9	2
<표 3- 3> 초기한국생활적응지원	0	3
<표 3- 4> 영유아보육 지원	2	3
<표 3- 5> 아동인지능력 및 언어영재	2	3
<표 3- 6> 학교생활초기적응지원	3	3
<표 3- 7> 취약계층아동 지원	4	3
<표 3- 8> 다문화가정아동의 언어발달 및 학습지원	5	3
<표 3- 9> 부모 교육서비스	5	3
<표 3-10> 중도입국자녀 적응지원	6	3
<표 3-11> 진학 및 진로지도	7	3
<표 3-12> 다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7	3
<표 3-13>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진출	9	3
<표 3-14> 다문화가족 위기지원	0	4
<표 3-15> 긴급지원	1	4
<표 3-16> 다문화가족 주거 안정 지원	1	4
<표 3-17> 사회통합을 위한 인권보호 및 다문화인식 제고	2	4
<표 3-18> 기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3	4
<표 3-19> 서울특별시 중점과제	6	4
<표 3-20> 서울특별시 특화사업	7	4
<표 3-21> 부산광역시 중점과제	8	4
<표 3-22> 부산광역시 특화사업	9	4
<표 3-23> 대구광역시 중점과제	0	5
<표 3-24> 대구광역시 특화사업	1	5
<표 3-25> 인천광역시 중점과제	3	5
<표 3-26> 인천광역시 특화사업	4	5
<표 3-27> 광주광역시 중점과제	5	5
<표 3-28> 광주광역시 특화사업	6	5
<표 3-29> 대전광역시 중점과제	7	5
<표 3-30> 대전광역시 특화사업	8	5

<표 3-31> 울산광역시 중점과제	0	6
<표 3-32> 울산광역시 특화사업	1	6
<표 3-33> 세종특별자치시 중점과제	2	6
<표 3-34> 경기도 중점과제	3	6
<표 3-35> 경기도 특화사업	3	6
<표 3-36> 강원도 중점과제	4	6
<표 3-37> 강원도 특화사업	4	6
<표 3-38> 충청북도 중점과제	5	6
<표 3-39> 충청북도 특화사업	6	6
<표 3-40> 충청남도 중점과제	7	6
<표 3-41> 충청남도 특화사업	8	6
<표 3-42> 전라북도 중점과제	9	6
<표 3-43> 전라북도 특화사업	0	7
<표 3-44> 전라남도 중점과제	2	7
<표 3-45> 전라남도 특화사업	2	7
<표 3-46> 경상북도 중점과제	3	7
<표 3-47> 경상북도 특화사업	4	7
<표 3-48> 경상남도 중점과제	5	7
<표 3-49> 경상남도 특화사업	5	7
<표 3-50> 제주특별자치도 중점과제	6	7
<표 3-51> 제주특별자치도 특화사업	6	7
<표 3-5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사업	1	8
<표 3-5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사업	1	8
<표 3-5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화사업	2	8
<표 3-5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3	8
<표 3-56>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3	8
<표 3-57>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사업	4	8
<표 4- 1> 호주 이주민 지원 특별 프로그램	9	9
<표 4- 2> 캐나다 이주민 지원 특별 프로그램	7	1
<표 4- 3> 스웨덴의 이주자 지원 특별 서비스 기준	1	1
<표 4- 4> 노르웨이 이민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3	1

<표 4- 5> 일본의 다문화공생 프로그램	5·1·1
<표 4- 6> 대만 이주자 지원 프로그램	6·1·1
<표 5-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대상 FGI: 일반적 사항	3·2·1
<표 5-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대상 FGI 내용	4·2·1
<표 5- 3>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인터뷰: 일반적 사항	1·4·1
<표 5-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무원 인터뷰 내용	1·4·1
<표 5- 5> 다문화가족지원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5·4·1
<표 6- 1> 거주기간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인구사회적 분포	2·5·1
<표 6- 2> 거주기간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 및 국적·언어수준 분포	5·5·1
<표 6- 3> 거주기간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가족특성 분포	6·5·1
<표 6- 4>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전·월세비율	9·5·1
<표 6- 5>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미취업 및 취업의향	1·6·1
<표 6- 6>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자녀방치율 및 자녀양육상 어려운점	3·6·1
<표 6- 7>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희망하는 자녀의 학력수준	5·6·1
<표 6- 8>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자녀의 모국유학 희망률 및 이유	7·6·1
<표 6- 9>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가족관계 불만족률	9·6·1
<표 6-10>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국적미취득률 및 향후 국적취득계획	1·7·1
<표 6-11>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장소별 사회적 차별경험률	3·7·1
<표 6-12>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모임유형별 참여희망률	5·7·1
<표 6-13>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서비스 필요도	7·7·1
<표 7- 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공공부조 수혜현황	4·8·1
<표 7- 2> 가족특성별 공공부조 수혜현황	5·8·1
<표 7- 3> 인구사회적 특성별 교육서비스 수혜현황	6·8·1
<표 7- 4> 한국사회 적응 및 통합수준별 교육서비스 수혜현황	7·8·1
<표 7- 5> 인구사회적 특성별 지원서비스 수혜현황	9·8·1
<표 7- 6> 한국사회 적응 및 통합수준별 지원서비스 수혜현황	0·9·1
<표 7- 7> 인구사회적 특성별 다문화 인프라 인지도	2·9·1
<표 7- 8> 인구사회적 특성별 다문화 인프라 이용수준	4·9·1
<표 7- 9> 사회적응 및 통합수준별 다문화인프라 인지도	5·9·1
<표 7-10> 사회적응 및 통합수준별 다문화인프라 이용수준	6·9·1
<표 7-11> 인구사회적 특성별 사회적 네트워크 현황	7·9·1

<표 7-12> 한국사회 적응 및 통합수준별 지원서비스 수혜현황	8·9·1
<표 7-13>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공공부조 사각지대	0·0·2
<표 7-14>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서비스 사각지대	2·0·2
<표 7-15>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다문화 인프라 접근 사각지대	4·0·2
<표 7-16>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사회적 네트워크 사각지대	6·0·2

그림목차

[그림 1-1]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아동의 장래인구추계: 2010~2030	3
[그림 1-2] 연구흐름도	9
[그림 2-1] 다문화가족 정책대상의 확대	4·1
[그림 4-1] 호주의 이주민 정착지원 체계	8·9
[그림 8-1] 다문화가족정책 대상 확대	2·1·2
[그림 8-2] 중앙부처 간 역할과 기능 재편방향	4·1·2
[그림 8-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플랫폼 역할 강화	6·1·2
[그림 8-4]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 제고	7·1·2
[그림 8-5] 다문화 지원의 성과중심의 접근	8·1·2
[그림 8-6] 다문화가족 지원의 차별성 제거	9·1·2
[그림 8-7] 접근성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개선	0·2·2
[그림 8-8] 지역사회서비스기관과의 연계	3·2·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 규모는 2012년 704천명이다. 지속적인 세계화 현상, 이주산업의 활성화, 인적·사회적 네트워크의 국제화, 외국인 이주정책의 강화 등에 따른 다문화사회의 축진으로 결혼이민자 규모는 2012년 268천명에서 2030년 604천명으로 125.4%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안전행정부, 2012; 이삼식 외, 2009; 통계청, 2010; 통계청, 2012).

국내 총인구 대비 결혼이민인구의 비중은 2012년 0.53%에서 2030년 1.1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18년 후에는 전체 인구 100명 중 1명이 다문화인구로 구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문화 아동인구는 2012년 146,071명에서 2030년 591,237명으로 304.8%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안전행정부, 2012; 이삼식 외, 2009).

[그림 1-1]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아동의 장래인구추계: 2010~2030

(단위: 명)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다문화가족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다문화가족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이래, 2011년 4월 법안개정으로 다문화가족의 지원범위가 ‘인지 또는 귀화로 인한 한국인’과 ‘외국인 또는 귀화자’로 확대되었다.

다문화가족의 정책대상은 기존의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 기타 사유로 인한 귀화자를 포괄하여 정책대상의 다양화로 정책의 특성화 및 세분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과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을 수립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지역계획 수립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단위에서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정책은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부처 간에 칸막이식 수행으로 예산낭비를 초래하며, 정책의 획일성과 일회성·행사성 지원에 편중되어 정책적 효과가 떨어진다. 다문화가족정책 방향은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과 적응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다문화가족주기의 변화와 다문화가족 내에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족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0.53%에 비해 지원에 투입되는 예산은 2,000억원에 육박하여 특정 소수집단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지원이라는 지적과 함께 내국인과의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어 내국인과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통합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안전행정부, 2012; 통계청, 2012; 국회예산정책처, 2012). 그럼에도 지금까지 수행된 다문화가족 관련 연구는 일반결혼이민자 또는 외국인노동자를 중심으로 단편적·개별적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수행되었고, 통합적·균형적인 다문화가족정책 도출을 위한 다문화가족 정책과 내국인 정책의 비교 분석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급변하는 다문화사회에 대비하여 다양한 특성을 가진 다문화가족을 포괄하고 균형적인 정책마련을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정책욕구 및 사각지대의 도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정책대상의 확대로 새로운 다문화가족정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반적인 복지정책 틀 내에서 진단하고 새로운 지원 틀에 대한 기준마련이 요구된다. 다문화가족 정책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 기준과 비교분석하여 역차별적·불균형적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공급측면에서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을 평가·진단하고, 수요측면에서 다문화가족 특성 및 정책욕구, 서비스 수혜현황 및 사각지대 등을 분석하여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첫째,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를 분석한다.

둘째,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 및 거주기간 등 특성 및 생애주기별 정책욕구를 진단한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서비스별 수혜현황 및 사각지대를 분석한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지원 범위, 정책방향 정립, 부처역할 및 기능재편, 전달체계, 형평성 및 사각지대개선, 전문화, 그리고 다문화 특성을 반영한 지원기준 및 지역사회통합 등 전반적인 다문화 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역차별적 요인을 제거하여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증진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내용

가.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연구동향

이론적 검토를 통해 다문화가족 개념 및 범위를 정리하고, 국내외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관련 선행연구 동향을 검토한다.

나.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분석

가족생애주기별 정책 틀에 근거하여 정책을 유형화하여 분석한다. 생애주기별 정책 틀은 결혼준비 및 적응기 정책, 가족형성기 정책, 자녀양육 및 교육기 정책, 가족역량

강화기 정책, 인권보호 및 다문화인식 정책 등으로 구분된다.

정책별 지원 분석 틀을 적용하여 분석하되, 틀에는 정책별 정책수행기관, 지원대상, 지원(선정)기준 및 범위, 지원내용(수준) 등이 포함된다.

다. 내국민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기준 분석

내국민 복지서비스별 지원 분석 틀을 적용하되, 틀에는 지원대상, 지원(선정)기준 및 범위, 지원내용(수준) 등이 포함되며, 내국민과 다문화가족의 지원 수준을 비교분석한다.

라. 해외선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검토

해외사례로 프랑스, 호주,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일본, 대만 등 8개국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정책 틀과 정책별 지원 분석 틀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한국에 적용 가능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마.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분포 및 정책욕구 분석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분포를 분석한다. 인구사회적 분포로는 성, 연령, 교육수준, 국적, 거주기간, 거주지역 등, 경제적 분포에는 소득수준, 주관적 생활수준, 취업여부 등이, 한국사회 적응에는 국적취득 및 한국어수준이, 가족적 분포에는 혼인유형 및 혼인상태, 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유무, 자녀연령 등을 파악한다.

바. 다문화가족의 서비스별 수혜현황 및 사각지대 분석

다문화가족 특성 및 서비스별 수혜현황은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적 특성, 가족특성, 한국사회 적응 및 참여 수준별 서비스 수혜현황을 분석한다. 다문화서비스 관련 기관의 이용 수준을 분석하고, 다문화가족 서비스 사각지대 특성을 인구 및 사회경제적 특성, 가족특성, 사회적응 및 참여수준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사.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방안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방안으로는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 및 정책방향, 중앙부처 역할과 기능 재편, 다문화지원의 전달체계 개선, 다문화지원의 형평성 담보, 가족생애주기별 사각지대 개선, 다문화지원의 전문화, 다문화 지원기준 및 지역사회통합 등 7개 영역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2. 연구의 방법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로 다문화가족 개념 및 범위 등에 관한 이론적 정의를 실시하고, 국내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국내 다문화가족 특성 및 정책육구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서비스 기준과 내국민 대상 사회복지서비스 기준을 비교분석한다.

나. 통계자료, 행정자료 및 기존자료 재분석

외국인 이주민 현황조사, 서비스 기관 사업결과 등의 통계·행정자료와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재분석하며,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분포, 정책육구, 서비스 수혜 현황, 서비스 사각지대 특성 등을 파악한다.

다. 해외사례 분석

해외사례로는 프랑스, 호주, 캐나다, 스웨덴, 노르웨이, 미국, 일본, 대만 등 주요 선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서비스 기준을 분석하고, 국내외 다문화지원정책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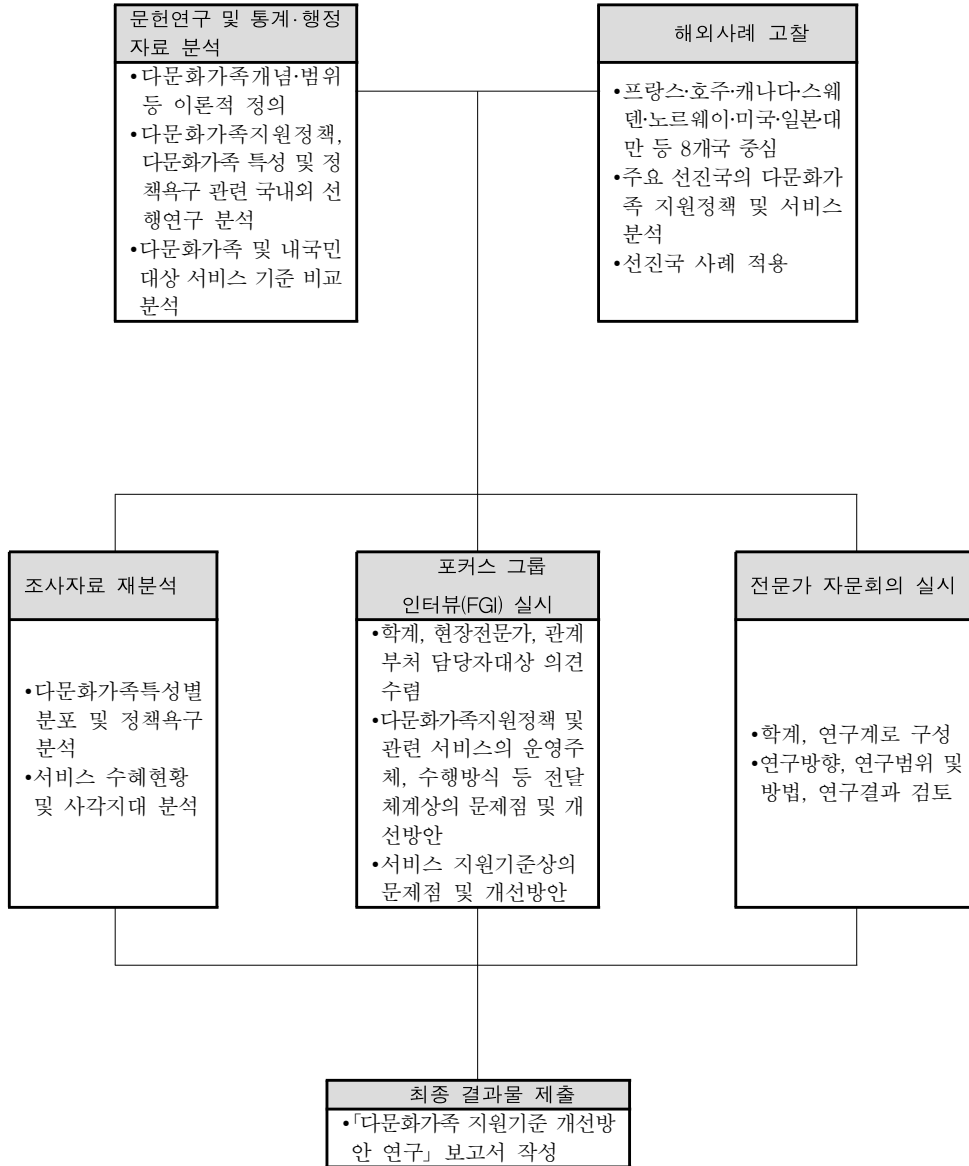
라.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학계와 현장전문가 및 관계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관련 서비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다문화가족지원의 사각지대 특성 및 필요한 정책, 다문화가족지원 전달체계와 지원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마. 자문회의 개최

학계, 연구계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연구방향 및 연구범위, 연구방법, 연구결과,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기준 및 내국인과의 형평성 등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방안 등을 검토한다.

[그림 1-2] 연구흐름도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연구동향

제1절 다문화가족개념 및 범위

제2절 국내외 연구동향

2

이론적 배경 및 국내외 < 연구동향 <

제1절 다문화가족개념 및 범위

1. 다문화가족의 개념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부터 ‘다문화가정’ 또는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가족’과 ‘가정’은 사회적 단위로는 동일 개념으로 사용하나 사전적으로는 상이한 개념이다. ‘가정’은 가족의 생활공동체로서 환경적 의미를 내포하며 ‘가족’은 가정이라는 공동체에 속한 집단 또는 구성원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이라는 내용을 말할 때 ‘다문화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이재분·김혜원·변중임·채재운,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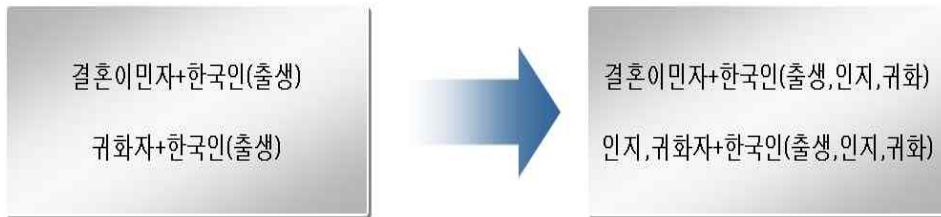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의는 정부 정책이나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 광의와 협의개념이 혼용되어 적용되고 있다. 광의의 개념은 자국 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가족을 포함하며 협의 개념은 가족 중 한 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여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기 전의 다문화가족의 개념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 이탈주민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했다(오경석, 2007; 김희정, 2007; 황정미 외, 2007).

2. 다문화가족의 범위정립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이후 동 법에서 정의한 다문화가족이란, 결혼 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출생에 의한 한국인으로 이루어진 좁은 의미의 다문화가족, 국제결혼가족만을 의미하며, 이는 최소한 한 사람의 가족구성원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로 한정되었다. 2011년 개정에서는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자와 출생·인자·

귀화에 의한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정의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가 확대 되었다.

[그림 2-1] 다문화가족 정책대상의 확대



한편, 교육부는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확대하여 ‘다문화가정’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근거한 ‘다문화가족’이 실제 학교 현장과는 대응되지 않아서 광의의 개념의 다문화가정의 개념이 요구되어 국제결혼 가정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가족 구성원까지 포함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의 이혼·별거·사별 그리고 재혼 등의 변화로 새롭게 편입된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갈등요인을 파악하여 사회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의 기능제고를 위한 정책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급속히 확대되는 다문화시대에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의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협의의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적용코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적용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협의의 결혼이민자가족으로 규정하며 가족형태는 한국인배우자와 결혼이민자로 결합된 가족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제2절 국내외 연구동향

1. 국내연구동향

가. 전반적인 연구동향

우리나라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의는 1970년 초반 문학 분야에서 처음 다루어진

후 1990년대 후반 정치철학적인 차원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접근들이 시도되었다(박기환, 2011). 초기에는 다문화주의 개념 및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론적 정립을 위한 연구(구건서, 2003; 김남국 2005)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일부 외국 사례를 기초로 다문화 정책의 방향에 대해 논의한 연구(이용승, 2004; 조현미 2004) 등이 발표되었다. 이후 소수자를 정책적 관점에서 논의 한 연구(원숙연, 2008)와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 이민자 국제결혼 자녀들을 대상의 취약계층 지원정책 차원과 함께 사회통합 정책을 제시한 연구(김세훈, 2006; 강휘원 2007)들이 발표되었다.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다문화 연구 초기연구는 담론분석 또는 탐색적 연구를 통해 다문화 사업의 방향을 제시한 연구가 주였다면, 이후는 심층면접 또는 설문지를 활용한 실태 조사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다문화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나. 사회서비스 수행 관련 연구

이선주 외(2008)는 도시와 농촌지역을 심층면접 조사를 통해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다르다는 사실을 토대로 생애주기별 사회복지 서비스의 지원 방안을 개발하였다. 최무현(2009)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관련종사자 등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여성결혼 이민자의 체류지원 및 국적취득 지원행정, 우리사회 적응 및 생활지원 행정에서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 지원행정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한승준(2009)은 다문화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추진체계가 지니고 있는 한계를 분석하기 위해 제도분석과 인식조사를 병행하여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사업 추진체계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다. 다문화가족의 실태 관련 연구

최근에는 인권보호, 한국어교육, 자녀 양육지원 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제시한 가운데(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7) 결혼이민자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문제점 해결에 주안점을 둔 연구는 사회문화적 차이와 복지서비스 차원의 연구이다. 이들 연구는 주로 결혼이민자 가정 내의 갈등과 폭력, 자녀교육, 인권문제, 한국사회의 적응, 빈곤의 심각성, 의료서비스 접근성 부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결혼이민자의 한국문화 적응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사회전반의 다문화 지향성 증진을 주장하는 경향을 보였다(정일선 2006; 장혜경 2006; 조석주; 2007; 김유경 외, 2008; 김승권 외, 2010; 김유경 외, 2012).

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관련 연구

제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김영미(2009), 지종화·정명주·차창훈·김도경(2009), 그리고 홍기원(2009)은 한국사회가 다문화 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증가하고 이와 관련한 여러 사회문제가 발생한다고 제시하였다. 이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다문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현실태 파악을 토대로 기존의 외국인 정책과 더불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개선을 주장하였다. 김계선(2010), 신재주(2010), 김응성(2011)도 정책적 효과가 높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의 원리와 그것이 한국 민족 정체성의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의 다문화정책과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을 비교함으로써 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종윤(2010)은 다문화가족들의 인권보호와 올바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 다문화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에 근거가 되는 관련법들을 다문화정책 이론과 해외 관련 사례들과 연계하여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장문자(2010), 배금태(2011), 김세환(2011)은 다문화가족을 한국사회에 동화시키고 통합시킬 대상이 아니라 상호 공존해야 할 동료 및 파트너라는 전제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에 지원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각각 구별하여 접근하였다.

김용희(2011)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들을 일시적인 사회문제를 치유하기 위한 한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과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적 지원 실태를 구분하여 살펴봄으로써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를 수립하였다.

이병량(2011)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들이 불과 10년도 수행 되지 않아 아직까지 연구의 방향성이 모호하고 연구의 양과 질적 수준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우리나라의 최근 다문화정책의 연구 동향과 실태를 총체적으로 파악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향후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한편,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김유경 외(2009)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실제로 정책적 효과가 크지 않다고 비판 하였고, 박기관(2009)과 최무현(2009)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사회적 및 생화지원 측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정상기(2010)는 지역의 다문화가족 수요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미리 정한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는 한계를 제기하였다. 김준식·안광현(2012)은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가 주로 중앙정부의 법·제도측면의 접근 또는 특정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연구대상으로 단편적인 조사를 실시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종합적인 평가에 관한 연구가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의 경우 중앙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에 근간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가 미흡하다고 평가하였다.

2. 국외연구동향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해외 다문화가족 연계(통합) 지원정책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가별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대두되는 배경은 서로 상이하지만, 모든 국가가 다문화가족이 내국인과 화합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을 매우 중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유경 외, 2008; 신재주, 2010)

호주는 미국, 캐나다 등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민자 사회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다문화가족들이 언어 및 문화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및 전화서비스를 통해 다국어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들이

국가 내에서 하나로 화합할 수 있도록 지역 다문화 커뮤니티와 학교를 통해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며, 노동, 교육, 복지 등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차별받지 않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독일은 호주보다는 비교적 늦은 1990년대 초부터 정책적으로 관심을 가졌으나 2001년부터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통계뿐만 아니라 각각의 실태에 대해서 최신정보를 제공하며, 다문화가족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집행하여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문제를 사회적 과제로 바라보고, 주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이민단체 및 비정부기구가 통합적으로 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 다문화가족들이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언어교육을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족과 내국인들이 서로의 문화를 함께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일본은 다문화가족정책을 국가적 차원의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추진 중에 있으며, 2006년 이전까지는 다문화가족을 단순히 지원 대상으로 접근하였으나, 2006년도 이후부터는 내국인과 다문화가족을 공생의 관계로 설정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문화가족들이 국내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행정·생활서비스에 지원할 뿐만 아니라, 내국인들이 다문화가족들을 우호적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언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제3장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제1절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논의

제2절 중앙부처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제4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제5절 다문화지원정책의 진단

3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 관련 서비스 <

제1절 국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논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관련 선행연구의 주된 논의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질 제고를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내용이 지배적이다. 이들 논의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대상범위의 적절성에서부터 전달체계 및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과제의 적절성과 사각지대에 대한 것까지 다양하다.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현황을 분석하기에 앞서 선행연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대상범위의 적절성에 관한 논의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다문화가족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¹⁾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과 관련하여 이경희(2010)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범위가 명확하지 못하며 해석에 따라 범위가 제한되어 외국인근로자, 북한이탈주민, 유학생 등이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상우(2009)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이주노동자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문화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로 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상이 되는 범주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마찬가지로 강복정(2012)도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제한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이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제한되어 있음에도 재혼등으로 인해

1)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2조 3항).

전혼 한국인 배우자 자녀의 경우 해석에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원을 다문화가족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에 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제주자치도민이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 가족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문화가족에 입양자녀까지 포함하고 있다(정상우, 2009).

이러한 지적에 근거하여 볼 때,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의 다문화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있어 보다 포괄적인 시각이 반영이 되어야 하며,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 포함되지 않는 국내 체류외국인 및 다양한 문화의 대상자의 포함에 대해서 숙고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 여러 부처 간 다문화가족정책과제의 중복수행 문제이다. 정부의 여러 부처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 간 조정과 통합이 이뤄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10년 11월을 기준으로 8개 부처에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30개 과제가 수행되므로 부처 간 유사사업 수행이나, 일부 사업 중복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주성훈, 2011). 또한 2006년부터 5년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성과평가에서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다문화여성을 위한 일자리사업을 중복수행하고 있으며 다문화 인식개선의 경우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중복수행하고 있고 다문화 자녀 교육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중복해서 과제를 수행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주성훈, 2011).

이러한 사업과 대상의 중복문제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시행초기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자료(2012)에 의하면 제2차 기본계획안에 13개 중앙행정기관, 법원 및 지자체에서 6대 영역 86개 세부과제가 수행될 예정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관련부처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국방부, 외교부, 방송통신위원회, 법원 등으로 이들 부처에서 독립적인 사업과 함께 유사 및 중복되는 과제가 부처별로 수행되고 있는 상황임이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중복을 피하고 부처별로 특성화사업을 지향하기 위해 부처 간 조정 및 통합을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의 중복수행은 지

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다문화가족지원에 있어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부처간 조정 및 통합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전달체계의 분산과 파편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장임숙(2012)은 부산시의 외국인 주민업무가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손경희·정일선(2010)도 안동시 다문화전달체계 주무부서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이지만 여러 부처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므로 다문화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조정이 요구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명선(2011)은 중앙부처별로 유사·중복정책이 많아 자원과 예산상 낭비가 초래 되고 있으나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동대문구, 성동구, 강남구를 제외한 22개 자치구의 경우 별도의 다문화가족전담팀 없이 1명의 공무원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다문화가족지원업무를 병행하고 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효과적인 전달을 위해 전달체계의 파편화와 분산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전달체계의 개선과 관련된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넷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장기적 기획 및 방향과 관련된 제언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대응에 불과할 뿐, 선제적이며 체계적인 중장기 전략은 다소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강복정(2012)은 다문화가족 추이변화에 따른 중장기 계획이 구비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김이선 외(2010)는 지자체 간 사업역량의 차이 및 단기간의 편익위주의 사업에 자원이 할당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마경희 외(2011)는 정책적 우선순위와 재원이 지원에 배분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방향을 지원과 초기적응 및 취업에 국한된 방향에서 결혼생활주기와 가족생활 주기를 반영한 다양한 욕구에 대한 고려와 함께 가족문제의 예방을 지원하는 중장기적인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의 문제이다.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과제는 이들의 한국사회 적응, 자녀양육 그리고 취업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초기적응 및 자녀양육 이외의 부가적인 욕구와 관련해서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사각지대와 관련된 학자들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 ① 여성 개인으로서 독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 비중이 부족(마경희 외, 2011).
- ② 부부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해체 다문화가족 보호 프로그램의 활성화(주성훈, 2010).
- ③ 폭력 등 이주여성 인권보호 부분(김이선 외, 2012).
- ④ 중도입국 자녀의 증가, 이혼, 사별, 결혼이민자 증가 등으로 인한 새로운 정책수요의 확대에 따른 대응 요구(김이선 외a, 2012).
- ⑤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를 고려한 서비스 설계 필요(김영란 외, 2012)
- ⑥ 남성결혼이민자의 센터 이용률(1.6%) 저조(김이선 외b, 2012)

여섯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있어 지역사회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지역사회중심의 다문화 정책사업 활성화(국회예산처, 2009)가 요구된다는 의견과 함께, 지역 및 대상별 특수한 수요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논의(김이선·주유선·방미화, 2012)와, 서비스 제공방식과 일정 등에 있어서 지역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어야 한다는 논의(김영란 외, 2012)가 제시되고 있다. 즉, 지역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추진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자체별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성화가 명확한 차별화정책으로 연결되기 위한 노력이 보다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일곱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추진에 있어 중요할 수 있는 인력 및 추진 기관의 전문성에 관한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전문상담인력 확보(국회예산처, 2009) 및 다문화가족지원 코디네이터 인력도입의 필요성(김영란 외, 2012) 그리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인력의 전문화 추진(강복정, 2012)이 요구됨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된 질적인 요소가 인력의 전문성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과 관련된 방향의 논의이다. 장기적으로는 내국인과 분리된 접근을 취할 것이 아니라 내국인이 이용하는 보육시설 등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할 수 있다는 논의(마경희 외, 2012)와, 다문화가족이나 그 가족의 자녀에 대한 접근과 지원에 있어 통합적인 접근이 요구됨을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다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측면에 있어 아직까지 편견과 차별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강복정, 2012).

위에 제시된 논의 외에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관련된 논의로 결혼이민자의 취업연계에 있어 언어적 장벽과 차별로 인해 질적인 지향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으며(여성가족부, 20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가능시간과 실질적인 운영시간의 차이와 지리적인 접근성으로 이용에 한계가 있음이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제2절 중앙부처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중앙부처의 다문화가족지원 과제는 2011년 61개, 2012년 53개이며,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투입예산은 중앙과 지자체를 합하여 3,278억 원이고 이 중 중앙부처의 예산은 1,815억 원이다. 중앙정부 정책과제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체계 정비’의 6개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다. 6개 분야 정책과제에 투입된 예산 비중을 보면, 중앙정부 정책분야별로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 예산이 전체 예산의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 지원(31%), 정책추진체계 정비(20%), 사회적 이해 제고(7%), 그리고 국제결혼 중개관리(2%) 순서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제2차 다문화가족 기본계획(2013~2017)에서는 가족구성원의 연령의 상승 및 육구의 다양화에 따른 정책수요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예상하고 있다(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 2012).

첫째, 가족구성원의 연령 상승에 따라 정책수요 변화가 예상된다. 결혼이민자의 연령은 2009년에 20~30대가 71.2%를 차지하고, 2020년에는 40대 이상이 60% 내외가 될 전망이다. 한국어 능력 향상과 자녀 양육 부담완화로 인한 취업육구 증가가 예상된다. 한국인 배우자의 중고령기 진입에 따른 은퇴 및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 자녀의 취학 및 학령기 자녀의 증가로 학업성취도 및 학교적응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수요가 예상된다. 둘째, 다문화가족의 다양화에 따른 육구가 증가될 것이다. 재혼한 결혼이민자의 전혼자녀의 입국으로 인한 중도입국 청소년 증가로 인한 학교 및 지역사회 적응

문제가 대두되고, 이혼, 사별 등으로 다문화가족 유형의 다양화로 인한 정책수요발생이 예상된다. 셋째,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의 문제이다. 다양한 문화의 공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 문화공존에 대한 찬성비율은 36.3%로 유럽(73.8%)에 비해 현저히 낮음)의 개선이 요구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중적인 태도(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구분 및 차별)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향후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연령 상승과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한 사회의 수용성제고 문제 등 새로운 정책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 중앙부처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과제를 다문화가족의 생활주기의 관점에서 분석해보면서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중앙부처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 가족생활주기적 접근

가족(다문화가족을 포함) 구성원에 대한 중앙부처의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가족생활주기 틀을 활용하였다. Carter 와 McGoldrick(1999)은 대가족체계를 중심으로 가족생활주기를 결혼전기, 신혼기, 자녀아동기, 자녀청소년기, 자녀독립기, 노년기의 6개의 단계로 제시하고 있으며, Collins, Jordan, 그리고 Coleman(1999)은 결혼, 학령전 자녀기, 학령기 자녀기, 10대 자녀가족, 자녀진수기 가족, 중년기 부모, 노년가족의 7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Carter 와 McGoldrick은 Collins와의 결혼기를 결혼전기와 신혼기로 세분하고 있으며, Collins와는 Carter 와 McGoldrick이 자녀아동기로 분류한 것을 자녀 학령전과 학령기로 세분하고 있는 것에서 상이하지만, 결혼, 자녀출산, 자녀성장, 자녀독립, 노년기의 주기라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학자들의 가족생활주기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부·관계부처합동(2012)에서 제시하고 있는 입국 후 초기단계, 가족형성 및 통합기의 측면을 집목하여 결혼준비 및 적응기(결혼이민초기), 가족형성기, 자녀양육 및 교육기, 가족역량강화기(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진출 확대기), 그리고 사회통합을 위한 인권보호 및 다문화인식 제고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결혼준비 및 적응기

국제결혼이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이와 비례적으로 결혼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이혼이나 가족해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 전 혹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입국초기에 결혼적응도를 높이고 결혼 이후에 야기될 수 있는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법무부에서 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각각 결혼과 한국생활의 초기 적응에 요구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으로 다른 문화권의 배우자와 국제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국가의 문화와 제도를 안내하는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해피스타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표 3-1> 결혼준비 및 적응기

지원명	대상	지원내용	소관부처
국제결혼안내 프로그램	대한민국 국민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의 국민과 국제결혼을 하려 하거나 이미 국제결혼을 한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사람	-3시간 과정으로 국제결혼 관련 현지 국가의 제도, 문화, 예절정보 등 소개 -결혼사증 발급절차 및 심사기준 등 정부정책 소개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 내 ‘이민통합지원센터’가 지정한 장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1년 3월7일부터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 의무화
해피스타드 프로그램	신규결혼이민자대상 최초입국 후 외국인등록(3개월)이전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생활정보제공 -선배 결혼자와 만남 -최초 체류기간 연장시 2년 부여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나. 가족형성기

가족형성기의 일반적인 논의는 결혼으로 인한 가족의 형성이다. 다문화가족의 형성은 결혼으로 인한 이주,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대한 이해, 이주생활에 따른 적응, 그리고 적응을 위한 자원과의 연계 등이 가족형성기의 주된 과업이 될 수 있다. 이 시기는 가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가족형성에 따른 첫 자녀의 임신과 출산이 행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가족형성기에 결혼이민자가 직면한 과업 중 하나가 한국사회와

가족생활에의 적응이며 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하는 것이 주요 과업인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결혼초기 가족형성기에는 한국사회 적응에 중요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것에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비중을 두고 있다.

한국어에 대한 교육은 여성가족부의 정책에 의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지원본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수준에 대한 기준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또한 한국어교육은 개인의 선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과 관련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국회예산처, 2009), 한국어 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손경화·정일선, 2010) 지적이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결혼이민으로 가족이 형성된 후 신혼기를 거치면서 가족형성기와 함께 임신과 출산이 이루어지는 가정도 있다. 국내의 임신·출산지원정책은 가구단위에 대한 지원으로 보건복지부가 소관부처이며 다문화가족을 포함하여 해당 조건에 부합되면 임신출산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생아산모도우미, 미숙아에 대한 지원,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지원의 경우 가정의 소득기준에 준하여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준에 해당이 될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한국어교육과 출산에 대한 지원과 함께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다. 정보의 접근성과 유용성은 결혼이민자의 초기적응과 안정적인 한국생활지원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여성가족부의 ‘다누리 콜센터’와 법무부의 ‘결혼이민자 네트워크’는 결혼이민자가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사회적 지원망의 기능을 수행하는 자원의 역할을 한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과 다문화가족을 포함하여 제공되는 가족형성기의 정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신·출산지원정책

임신·출산정책은 다문화가정을 포함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소득수준 50%이하의 가정 등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다문화가정 또한 일반가정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이다.

<표 3-2> 임신·출산지원정책

지원명	대상	지원내역	소관부처
임신출산지원	건강보험 가입자(또는 피부양자) 중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지원 신청자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용 지원(50만원 범위내, 실제 부담비용) 지정 요양기관에서 전자바우처 사용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도우미	월평균소득 50%(2,368천원이하-4인 기준)이하 출산 가정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이용권지급	보건복지부
미숙아의료비지원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미숙아 출산가정(셋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무관 지원)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최고지원액 2,499g~2,000g 5백만원 1,999g~1,500g 7백만원 1,500g 미만 1천만원	보건복지부
선천성 이상아의료비지원	출생 후 28일 이내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 식도폐쇄/협착, 장 폐색증 직장항문폐쇄/협착, 선천성 횡격막탈장, 제대기저부(선천배꼽)탈장	생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 수술 및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 본인부담금이 1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전액, 100만원 초과 경우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 추가 지원. 1인당 최고지급액 500만원	보건복지부

2) 초기한국생활적응지원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결과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중 언어문제(21.1%)로 인한 어려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어려움 다음으로 외로움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중이 14.2%로 세 번째로 높았다(여성가족부, 2013).

결혼이민자의 언어적응 문제는 입국 초기의 결혼이민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초기 한국생활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언어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언어교육의 수준별 교육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결혼이민자가 언어교육을 받는 데 있어 취업이나 가족의 이해, 시간 및 지리적 접근성의

제한으로 언어교육이 필요한 여성 결혼이민자가 사각지대에 처할 수 있음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서울시 여성 결혼이민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로 ‘한국어 교육’이 25.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직업훈련 서비스’ 18.9%, ‘의료상담 및 의료비지원’ 12.5%, ‘상담(고민·갈등·정신건강 관련)’ 7.8%, ‘약물·알코올 상담’ 7.2%, ‘주택관련서비스(집수리·도배 등)’ 6.8%, ‘법률상담(국적취득·취업·이혼 관련)’ 5.9% 등의 순으로 나타나므로 초기 적응에 있어 한국어교육은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장명선·장은애, 2010).

초기한국생활을 지원함에 있어 한국어지원 외에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한 콜센터의 운영과 결혼이민자 네트워크를 통해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다.

<표 3-3> 초기한국생활적응지원

지원명	대상	내용	소관부처
한국어교육 서비스	결혼이민자 (입국 5년 이하)	한국어교육,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한국생활 정보제공	여성가족부
사회통합프로그램-언어(한국어과정)	이민자 및 국민	-1,2단계(초급), 3,4단계(중급), 5단계(고급) -각 단계별 100시간	법무부 출입국 외국 인정책본부
결혼이민자네트워크	결혼이민자	출신국가·지역별 결혼이민자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공유, 커뮤니티 조성	법무부
다누리 콜센터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및 자녀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에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안내, 한국생활 정보제공, 다문화가족 복지 서비스 안내, 생활통역 제공	여성가족부

다. 자녀양육 및 교육기

가족형성 후 자녀 출산이후의 가족의 주된 과업은 자녀의 건전한 양육이다. 다문화가족의 경우 부모와 자녀의 이중 문화와 이중 언어가 양육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해야 함에도 이중언어의 발달이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일부 다문화자녀의 경우 언어발달의 지체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2012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중 9~18세 자녀에 대한 조사 결과 한국어 구사능력은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외국계 부모나라 언어를 잘 못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여성가족부,

2013).

다문화가정자녀의 양육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학령전기와 학령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녀 아동기: 학령전기

여성정책연구원(2012)의 지원사업군 심층평가자료에 의하면 2011년 기준 자녀세대 성장 지원 관련 사업군 예산의 약 70%(47,681백만 원/67,638백만 원×100)가 취학전 자녀 지원에 집중해있으나 실제 만 6세 미만의 미취학자녀의 비율은 56.6% 수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사업군 전체에서 취학전 자녀를 위한 지원에 투입된 예산이 과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건전양육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무상보육정책은 내국인과 비교하여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현재 무상보육이 소득과 무관하게 해당 자녀가 있는 가구 전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역차별의 논란은 더 이상 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문화가족의 생활주기 상 자녀양육기 중 학령전기 아동에 대한 지원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인지능력 향상과 언어발달을 지원하고 있다. 학령전기 아동을 위한 중앙부처의 정책은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다.

가) 영유아보육 지원

다문화가정의 자녀 뿐 아니라 전 계층을 대상으로 만5세 이하의 아동에게는 무상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한다는 조항에 의해 내국인 자녀의 보육료지원과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되었으나 무상보육이 소득과 재산 수준에 무관하게 전 계층으로 확대되므로 인해 다문화가정자녀들에게만 지원되므로 인해 야기되었던 형평성의 문제는 더 이상 논의되고 있지 않고 있다.

<표 3-4> 영유아보육 지원

지원명	대상	지원내용	소관부처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만0~2세 보육료	전계층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만0세 394천원, 만1세 347천원, 만2세 286천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만3~5세 보육료	전계층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 만3~5세 220천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장애아보육료	만12세 이하 장애아동(소득·재산 수준 무관) 394천원 *장애아누리과정(만3~5세) 414천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돌봄서비스 미이용시	만0~5세 전계층 아동 소득재산 수준 무관 만0세 200천원, 만1세 150천원 만2세 100천원, 만3세-취학전 100천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농어촌양육수당	취학전 만5세 이하, 농어촌 지역 거주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 농어업인가구의 가정 양육 아동 만0세 200천원, 만1세 177천원 만2세 156천원, 만3세 129천원 만4세_취학전 100천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장애아동양육수당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전 만5세 이하 등록 장애아동은 소득수준 무관 양육수당 지원 만0세-만2세 200천원, 만3세-취학전 100천원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나) 아동인지능력 및 언어영재

아동의 인지 및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해 독서도우미가 파견되고 있으며 특별히 일반 가족과 함께 다문화가족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의 언어발달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의 만3세 이상부터는 이중언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언어영재교실에 참여할 수 있다.

<표 3-5> 아동인지능력 및 언어영재

지원명	대상	내용	소관부처
인지능력향상 독서도우미	만2세~만6세 일반 자녀 및 다문화가족 자녀 (월평균 가구소득 100% 이하)	주1회 독서도우미 방문, 책읽기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언어영재교실	다문화가족 자녀(만3세~초등학교 재학생), 非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배우자, 시부모 등)도 참여 가능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및 문화 수업 ※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여성가족부

다) 학교생활초기적응지원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은 예방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보다 유용할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에 입학 후 학교생활의 안정적인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에서 학령 전 다문화가정 아동에 대한 입학 전 프로그램 및 예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표 3-6> 학교생활초기적응지원

지원명	대상	내용	소관부처
초등학교입학 전 프로그램	학령전 아동 다문화가정의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의 특별활동 등을 통해 준비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예비학교 운영	학령전 아동 다문화가정의 아동	정규학교 배치 전 사전 적응 교육(2012년 26개 소)	교육부

2) 자녀아동기: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령기 주요 과업은 학교와 지역사회 적응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정체감, 친구지지, 학교에 대한 흥미, 지역사회지지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남영옥, 2012). 따라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지원과의 연계를 통한 학교생활에의 적응도모가 필요한 시기이다.

학령기의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능력 향상과 학업성취도 증진 그리고 인종과 문화 차이로 인한 따돌림 예방을 위해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자녀의 지원 뿐 아니라 자녀의 건전 양육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양육지원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학교 중도탈락을 예방하며 학업성취도를 제고하는 다양한 접근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2012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중 학업을 중단한 자녀들은 1,029명으로 학업중단자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9%였으며, 연령대별로 보면, 9~11세 자녀 중 학업중단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2~14세는 0.5%, 15~17세는 2.5%, 18세 이상은 6.9%로 연령이 높을수록 학업중단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이들의 학업중단 이유는 친구나 선생님과 관계 문제가 23.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가정 형편의 어려움(18.6%), 학교공부가 어려워(9.7%) 순이었다(여성가족부, 2013).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도를 제고를 위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일반아동과 함께 방과 후 공부방이나 드림스타트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언어능력 향상 및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 취약계층아동 지원

취약계층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드림스타트’와 ‘지역아동센터’가 있다. 두 사업의 특성은 방과 후 혹은 방학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인적인 발달개입을 한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으나 드림스타트는 12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므로 주로 초등학교의 아동을 위한 것이며, 지역아동센터는 초중고교 재학생이 대상이기 때문에 청소년기에도 이용을 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 두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자녀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대상에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포함되어 이용할 수 있다.

<표 3-7> 취약계층아동 지원

지원명	대상	지원내용	소관부처
드림스타트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120%),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임산부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기초학습·사회성 함양·부모교육·가족지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보호, 교육, 문화지원, 정서지원, 지역사회연계	보건복지부

나) 다문화가정아동의 언어발달 및 학습지원

다문화가정자녀의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만 12세까지 지원이 되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 적응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자녀를 대상으로 방문교육서비스와 대학생 멘토링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언어발달 및 학습지원과 관련하여 특이점은 13세 이상의 언어능력의 보완이 필요한 다문화가정자녀의 경우 언어발달과 관련하여 사각지

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학생에 대해서 미국 등에서는 정규교육과정에 외국학생을 위한 ESL과정을 개설하여 통합적인 교육을 지향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다문화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KSL(Korean as a Second Language)은 다문화학생의 수가 많은 일부 학교에서 정규수업이나 방과 후에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언어발달 지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표 3-8> 다문화가정아동의 언어발달 및 학습지원

지원명	대상	지원내용	소관부처
언어발달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만12세 이하)	언어평가(초기) 및 언어교육(개별교육/모듬교육)	여성가족부
대학생멘토링	다문화가정의 자녀	기초학력 향상 및 학교적응력증진	교육부
자녀생활서비스	다문화가족 자녀(만3세~만12세)	독서코칭, 발표토론, 숙제지도, 기본 생활습관, 건강 및 안전, 가정생활, 진로지도 등	여성가족부
한국어교육과정(KSL)	다문화배경을 가진 학생	다문화학생이 다수 재학하는 학교에서 방과후 혹은 정규수업 중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다) 부모 교육서비스

학령전기 및 학령기 자녀를 위한 부모교육서비스의 경우 만3세~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부모자녀 관계, 가정생활 전반, 건강 및 영양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자녀 양육 및 교육에 있어 부모의 일관된 접근이 중요하나 다문화가족의 부모교육과 관련된 지원은 주로 결혼이민자인 모에게 국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9> 부모 교육서비스

지원명	대상	지원내용	소관부처
부모교육서비스	만3세~만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결혼 이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성장, 부모자녀 관계 형성, 영양 및 건강관리, 학교·가정생활지도 · 생애주기별 3회 서비스 지원 (임신·신생아기, 유아기, 아동기) 	여성가족부

3) 자녀 청소년기

청소년기는 발달과정에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면서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이다(조흥식 외, 2010). 다문화가족자녀를 대상으로 한 청소년기 지원정책은 진학 및 진로지도와 더불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중도입국자녀들의 학교생활부적응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지원체계를 구비하고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가) 중도입국자녀 적응지원

여성정책연구원(2012) 지원사업군 심층평가 자료에 의하면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어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중도입국자녀의 연령을 보면, 18세 이상이 44.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5~17세(19.5%), 6세 미만(10.8%), 12~14세(9.1%), 9~11세(8.5%), 6~8세(7.7%)의 순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3분의 2정도(63.8%)가 고등학교 학령기(15~17세) 및 고등학교 학령기 이후(18세 이후)에 중도입국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 등 한국사회 문화 적응을 위한 지원과 자립 지원이 주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3-10> 중도입국자녀 적응지원

지원명	대상	내용	소관부처
중도입국청소년 Rainbow	중도입국청소년 (9~24세)	멘토링, 기초생활한국어, 교우관계 및 정체성, 진로, 학과 지도 등	여성가족부

나) 진학 및 진로지도

2012년 다문화가정실태조사에서 13세 이상 자녀의 절반 이상이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요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13~14세(46.4%), 15~17세(54.9%), 18세 이상(47.6%)으로 고등학교시기에 진로상담 및 진로교육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11> 진학 및 진로지도

지원명	대상	내용	소관부처
진로진학지도	다문화가정의 초·중고생	수학·과학, 언어, 예체능 우수학생 육성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고등학생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교육부

4) 다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다자녀에 대한 지원 정책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을 포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다자녀에 대한 정책은 출산을 제고를 위해 다자녀가구에 대해서 전기요금 감면, 세금 추가공제, 주거 안정 지원 및 저소득층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이 해당된다.

<표 3-12> 다자녀에 대한 지원정책

지원명	대상	내용	소관부처
다자녀전기요금 감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	전기요금 20% 할인 (월 12천원 한도, '13년 기준)	보건복지부
다자녀세제지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기획재정부)	자녀 2인 : 100만원 자녀 2인 초과 시 :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다자녀주거안정 지원	민법상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	주택 특별·우선 공급 실시 공공분양주택은 10%, 민영주택은 5%를 특별공급하며, 국민임대주택은 20%를 우선공급	
다자녀 둘째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저소득층 둘째아 이상 자녀	2011년 이후 출생하는 저소득층 둘째아 이상 자녀에 대해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라. 가족역량강화기: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진출 확대기

결혼을 위한 이주과정을 통해 한국사회의 초기 적응과정과 출산 및 자녀 양육과정을 거치면서 가정생활의 적응과 안정을 경험하기도 하며, 가정생활의 해체와 부적응을 경험하기도 한다. 가족관계에서 갈등, 개인적인 심리·사회적인 적응 상의 문제, 자녀 양육부담, 사회경제적인 활동 및 참여의 욕구 등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역량이 강화되며 가족과 개인의 탄력성이 증진되도록 지원함이 요구된다.

1)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진출

결혼이민자는 원국가의 경제활동 경험이나 학위, 자격증 등 기준에 보유하고 있는 직업 역량이 있을 수 있다. 프랑스 OFII에서 이민자의 직업역량을 파악하여 취업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직업관련 배경이 취업으로 연결되는 것은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결혼이민자의 역량이 취업으로 연결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가 이들의 다국어 능력을 활용하는 이중언어 강사이다. 교육부 소관으로 이중언어 구사능력을 갖춘 다문화가정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통해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는 전문적인 직업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로 외국의료코디네이터와 다문화IT 강사가 있다.

그러나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지원정책은 추진기관의 다원화, 비전문기관의 개입 등으로 인한 낮은 효율성으로 실질적으로 취업과 경제적 자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여성정책연구원, 2012), 또한 실제 여성 결혼이민자는 취업을 한 이후에도 직장생활의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취업과 관련 ‘어려움 없다’는 응답이 26.6%였으나 ‘한국어가 서툴러서 어렵다’는 응답이 25.5%, ‘맞는 일자리가 부족해서’ 22.3%, ‘한국에서 경력이 부족해서’ 18.3%, ‘외국인에 대한 차별’ 14.5% 등으로 취업과 관련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결혼이민자의 취업이나 경제활동과 관련된 소관부처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으로 취업지원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13>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진출

지원명	대상	내용	소관부처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결혼이민자	구인구직등록 후 상담 통해 취업 알선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제(직업능력개발계좌제)	결혼이민자	고용센터에서 훈련상담을 거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훈련과정 수강(연중수시)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으로 직업훈련 등 취업지원	고용노동부
이중언어강사 양성 사업	이중언어 구사능력 갖춘 다문화가정 학부모	이중언어강사 양성 교육	교육부
결혼이민여성 인턴 운영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의 자녀와 그 보호자	여성결혼이민자 채용기관에 지원금 지원하여 인턴으로 연결되도록 함	여성가족부
결혼이민 여성 직업교육 훈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등록된 구직희망 여성결혼이민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운영 중인 직업훈련과정 제공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민여성 인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여성결혼이민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인턴으로 사업장	여성가족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	취업을 희망 여성결혼이민자 중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한 자	여성새로일하기센터(100개소)에서 운영 중인경력단절여성 대상	여성가족부
여성결혼이민자 지도자 양성교육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새마을부녀회원간의 멘토 결연 추진 및 지도자 양성 교육	안전행정부
다문화 IT방문 지도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8개권역(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북, 경남, 충남, 전남)	한국어와 IT 능력을 갖춘 결혼이민자를 다문화 IT방문지도사로 양성, 동일 출신 국가 다문화 가정에 방문하여 IT교육 및 국내 조기 정착 지원	안전행정부
국내거주 외국의요인 진료코디네이터 양성사업	국내거주 외국인 의료관련 인력으로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자(중국·몽골·베트남 등)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응대에 필요한 진료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중국·몽골·베트남 등)	보건복지부
결혼이민여성 기초 농업교육	농촌지역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 대상 농업이론 및 현장체험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1:1 맞춤형농업교육	거주기간 1년이상 실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촌지역 여성 결혼이민자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전문 여성농업인(멘토)을 연계하여 1:1 맞춤형 농업교육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착지원과정	가족단위(결혼이민자와 그 배우자, 시부모, 자녀 등)로 참여(2~4인)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농촌정착지원 교육	농림축산식품부

2)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결혼이주여성의 직업관련 역량 개발 이외에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의 자조모임 활성화, 결혼이민자 재능기부 등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3) 다문화가정 위기 및 긴급지원

다문화가족의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족의 안전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와 이주여성보호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할 경우 가구중심으로 지원되는 긴급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 다문화가족 위기지원

결혼이주여성의 인권과 관련된 피해자보호 정책으로 다문화가족의 위기지원서비스가 실시되고 있는데, 지원사업군 심층평가 결과에 의하면 국적별 상담원이 부족한 현실이며, 쉼터 퇴소 후 자립지원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여성정책연구원, 2012).

<표 3-14> 다문화가족 위기지원

지원명	대상	내용	소관부처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결혼이민자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여성	긴급지원 및 보호시설, 경찰, 병원 등 유관기관 연계	여성가족부
이주여성보호시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일시 보호, 상담, 의료, 법률, 출국 지원	여성가족부
정부합동고충상담 실시	재한외국인	고충상담, 무료법률지원, 무료건강검진	법무부

나) 긴급지원

긴급지원은 위기 상황에 처한 대한민국 모든 가구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자격여건에 부합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표 3-15> 긴급지원

지원명	대상	내용	소관부처
긴급복지 지원	갑작스러운 위 기상황으로 생 계유지가 곤란 한 저소득 가구	소득·재산기준 소득 : 최저생계비 150%(4인기준 2,320천원)이하 재산 : 대도시(1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어촌(7,25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소득, 금융재산 기준은 ' 13.12.31일까지 한시적 완화 적용	보건복지부

4) 다문화가족 주거 안정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국민주택 등’에 해당하는 공동 주택을 공급(분양)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9조제1항 제7의2호에 의거 무주택세 대주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특별공급을 알선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3-16> 다문화가족 주거 안정 지원

<p>○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전체공급물량 중 10%범위 내에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국 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원 등에게 특별 공급하므로, 다문화가족의 수요범위 내에서 최대한 특별공급 이 이 루어지도록 추진</p>

마. 사회통합을 위한 인권보호 및 다문화인식제고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사회의 인 식을 제고하면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것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2012년 전국 다

문화가족실태보고서(여성가족부, 2013)에 의하면 결혼이민자·귀화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41.3%가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의식을 제고하면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정책은 지역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의 정책과제는 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방송을 제작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과 일반국민을 위한 공공도서관내 다문화 자료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표 3-17> 사회통합을 위한 인권보호 및 다문화인식 제고

사업명	대상	내용	소관부처
한국어 교육 방송 제작, 반영	다문화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송 방송 언어 :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방송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다문화 자료실 설치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	다문화가족, 외국인, 일반 국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도서관내 다문화 자료실 설치(총11개관) 공공·작은도서관에서 다문화 관련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총40개관)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에서 세계를 만나다	일반 국민(14세~16세 청소년)	<p>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타문화 인식 제고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연계 세계문화 체험 교육 음식으로 배우는 다문화 교육 	문화체육관광부
다문화가정독서진흥 콘텐츠서비스	다문화가족, 외국인, 일반 국민	<p>전래동화 및 우수그림책 5개 국어 번역 동화구연 및 애니메이션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태국어, 몽골어 	문화체육관광부
디브리리포털 다문화정보 서비스	다문화가족, 외국인, 다문화 관련 실무자 및 연구자, 일반 국민	<p>다문화 정보(7개 언어), 다문화 책정보, 다문화블로그 콘텐츠 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다문화 이해 제고	학생	유치원, 어린이집교재 및 초·중등교과서 다문화 교육내용 포함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병영환경조성	간부 및 병사	<p>군 대상 다문화교육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종교자 배려 다문화가족 병영체험실시 등 	국방부
시설종사자: 다문화 이해제고	다문화 관련 종사자	공무원, 경찰, 다문화 시설 종사자 등	여성가족부 안전행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바. 기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타 지원은 가족의 특정 생활주기와 무관하게 지원되는 의료 및 정신보건 등 결혼이주여성이나 국내 체류외국인의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정책이다. 치과 및 정신보건 그리고 결혼이주여성의 건강증진과 국적취득전의 결혼이민자에 대한 의료지원이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통해 지원되고 있다.

<표 3-18> 기타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사업명	대상	내용	소관부처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	다문화가족,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가족의 자녀와 그 보호자	무료 구강검진, 불소도포, 치과 질환에 대한 (2차)심화진료	여성가족부
정신보건센터	결혼이민자와 자녀	무료 정신 건강 상담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
결혼이민여성 건강증진	여성결혼이민자	보건소 통역서비스 및 교육자료 제공, 여성결혼 이민자 자조모임 지원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취득 전 여성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입원 및 외래 수술 총 진료비, 입산부 산전진찰비, 아동 외래 진료비 등 * 건강보험 미가입자	보건복지부

2. 중앙부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시사점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에 대한 고찰을 통해 현재 중앙정부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중앙부처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관계로 유사 및 중복사업이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유사한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중복 수행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사업의 수행 기준과 성과에 대한 기준에 있어서도 부처 간 차이가 존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유사 및 중복사업에 대한 일원화 또는 책임부처의 명확화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과제가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중앙부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예산 중 가장 낮은 예산

비중이 국제결혼 중개관리이다. 가족생활주기 상 가족형성기에 상대방 배우자의 문화에 대해서 상호간에 이해를 증진하는 예비부부교실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의 초기 접촉에 있어 법무부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생활주기의 가족을 형성하기 위한 예비부부교실과 같이 상대방을 상호 이해하는 과제의 운영은 제한적일 수 있다. 법무부와 공조하여 초기 입국시 안정적인 결혼을 준비하기 위한 예방적인 차원의 접근이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사회의 적응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 언어 역량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한글교육의 체계에 대해서 숙고해야 할 것이다. 먼저,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역량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한글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언어능력의 격차가 크며, 언어문제로 인한 한국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은 상황이다(여성가족부, 2013). 언어역량의 개별차를 고려함과 동시에 한국생활의 적응에 요구되는 언어수준을 획득하기 위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원함에 있어 취학 전에 한글에 대한 이해력을 적정 수준에서 획득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취학 후 언어역량의 편차가 있을 경우 KSL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다양한 정책과제에 있어 사각지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생성과 발달주기에 따라서 자녀의 청소년기의 진입에 따른 진로지도,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에 따른 다문화가정 자녀의 적절한 보호제공의 문제, 가정의 해체에 따른 개입, 가족 갈등에 대한 상담 등 보다 전문적인 개입과 관련된 지원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함에 있어 개인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일자리의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1.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2013)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제시하였다. 다양한 지자체의 사업의 방향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살펴보기 위해 각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과제의 예산을 확인하여 세부 과제별로 예산비중이 높은 5개 과제를 살펴보았으며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화과제를 정리하였다.

지자체의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을 김이선의 연구에서 살펴보면,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된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8개 기초자치단체 국비보조 사업은 각각 165개, 14개, 지방비 자체사업은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각각 150개, 900개로 집계되고 있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자체사업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지자체는 서울(33.2억), 가장 적은 곳은 전남(0.2억).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 예산은 13.2억, 가장 적은 사업은 50만원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218개 자치단체에서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사업 예산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북 순창(3.8억)이며 사업 미추진 10개를 제외하고 가장 예산이 적은 곳은 인천 부평구(60만원)이고 예산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2.2억원 가장 작은 예산은 40만원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6대 과제²⁾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150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중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가 36개(2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초기 적응 지원 사업’이 29개(19.3%)로 2개 사업군 비중이 전체의 43.3%를 차지하고 있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사업군에 따른 사업이 고르게 수행되지 않고 특정 사업군에 편중되는 현상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제를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2013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2013)에 제시된 내용을 근거로

2) 6대 과제는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임.

하여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각 지자체의 과제의 특성과 예산 투여 비중이 높은 세부 과제와 특화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서울특별시

광역자치단체 중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예산이 가장 많은 서울특별시의 정책과제는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로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지원예산과제의 35.5%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결혼이주여성의 위기 및 피해 상황에 대한 지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다문화가족지원과제 중 특화과제의 특이점은 다문화가족이 생애주기에 따른 전반적인 측면에서 특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한 생활정보제공과 다산콜센터를 통해 외국어정보제공을 실시하는 등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외국인 생활의 불편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에서부터 아동과 중도 입국 및 청소년 자녀를 위한 지원 그리고 대학입학 시 다문화가족 자녀의 입학전형 기회제공까지 다양한 특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마을 공동체, 자립역량강화와 농촌직거래 등 다문화 사회적기업 등 서울특별시의 특성이 반영된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3-19> 서울특별시 중점과제

(단위: 백만원)

영역	중점과제	과제수	예산	예산(%)
		30	6,804	100.0
다양한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구현	상대방문화에 대한 이해제고	2	2,418	35.5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구축	피해자보호	1	1,029	15.1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다문화자녀건강발달지원	5	939	13.8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구축	한국생활초기적응지원	4	788	11.6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학교생활초기적응지원	2	315	4.6

<표 3-20> 서울특별시 특화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다문화가족 문화다양성지원	각국의 도서 지원을 통한 다문화가족 문화다양성 지원 및 폭넓은 문화적 감수성 증진	베트남, 필리핀 등 각국 동화 도서전집 제작(50,000부) 배포
생애주기별 동화집 시리즈 제작	다문화가족의 한국문화와의 정서적 교류 지원 및 자녀 육아, 교육 등의 정보 제공	생애주기별 동화집 3탄 발간 • 2012년 태교·육아동화집→ 2013년 교육동화집 제작(10개 국어, 3만부)
다문화자녀 보육시설 운영 (다문화 통합어린이집 지정 운영)	다문화자녀 통합보육시설 중 서울시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을 지정하여 적용 지원	다문화자녀 통합보육: 2,280개소 4,253명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지정: 17개소
다문화자녀 및 일반청소년 교류지원 사업	청소년수련관 등을 통한 다문화자녀에 대한 한국문화 적응	한국어·한국문화 등 다문화자녀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설
중도입국자녀 종합지원	한국어 교육, 심리·정서지원 등을 통한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및 학교생활 지원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 교육, 개인 심리정서 지원, 학력인정교육 지원, 진로 및 취업 지원 특기적성교육(미술태권도), 이중언어교육(영어·중국어), 한국사회적응교육
한국어 향상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	다문화자녀의 취학 전·후(저학년) 기초학력 지원을 통한 학업수행 및 학습지원	만 7세~12세 저소득계층 다문화자녀 대상 서울시-전문 방문학습기업간 업무협약을 통해 영수과학 등 기초과목 방문교육
다문화가족 학위취득 지원	대학 입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회적 배려계층의 고등교육기회 확대	서울시립대학교 기회균등 전형(입학사정관제)의 대상범위와 모집인원 확대 추진
온-오프라인 생활정보 제공	다문화가족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서울생활편의 정보 제공 및 참여·소통기능 강화를 통한 지역 내 커뮤니티 활성화	서울시 다문화가족 한올타리홈페이지 운영 다문화가족 전용 스마트폰 앱(5개국어) 개발 추진. 다문화가족 종합생활정보지 제작발행 (10개국어 30,000부)
120다산콜센터 외국어상담 서비스 제공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서울 거주 외국인의 생활 편의 제고를 위하여 의사소통 지원, 생활	-5개 외국어(영, 중, 일, 몽골, 베트남어) 생활정보, 대중교통, 관광 등 정보 안내 및 특화 상담 서비스
다문화가족자녀 외갓집 방문	엄마나라 방문기회 제공을 통한 자긍심 고취 및 가족화합 제고	저소득층 다문화가족(30가족 120명)
외국인 생활불편 살피미 운영	외국인의 시각에서 일상생활 불편 및 개선사항을 상시적으로 의견 제시하는 모니터링단인	'서울시 외국인 생활불편 살피미'를 구성·운영하여 외국인의 거주 생활 만족도를 증진

나.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예산이 1,361 백만원으로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정책과제의 예산 비중이 전체의 48%를 차지하며 다음으로 다문화자녀의 성장발달지원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한 지원의 순이다.

특화사업으로는 고국방문이나 결혼식지원 등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지원하는 과제 뿐 아니라 스마트 앱을 운영하던가 아니면 다문화대표자 회의를 개최하는 등 간접지원적인 측면에서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민간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시된 특화사업에서 가족생애의 욕구에 따른 자녀 양육 및 교육과 관련된 특화사업은 별도로 제시되고 있지 않다.

<표 3-21> 부산광역시 중점과제

(단위: 백만원)

영역	중점과제	과제수	예산	예산(%)
		26	1,361	
다양한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구현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1	654	48.1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3	243	13.9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2	112	8.2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구축	소외계층 지원 강화	3	100	7.3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구축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5	85	6.2

<표 3-22> 부산광역시 특화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다문화가족 홈페이지 내실화	한국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결혼이민자 간의 커뮤니티 형성	-다문화가족지원 사업 및 생활정보 5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로 제공 -다문화 관련 보도자료 게재 및 각종 행사 정보제공
스마트 앱을 활용한 다문화 홍보	취업, 교육, 상담 등 각종 지원 사업을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 형성 필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증진을 도모	결혼이민자 수요 조사에 의한 앱 개발 및 배포
결혼이민자를 위한 모국어 도서 보급	한국 생활 초기 정착을 돕고, 모국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하여 모국어로 된 서적구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비치	중국과 베트남의 모국어 서적(도서 및 잡지)을 구입하여, 부산 시내 각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비치 및 열람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개최	가정형편 상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족들을 위하여 합동결혼식 개최	합동결혼식 예식 진행 및 허니문
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사업	부산시 거주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친정방문 기회를 제공	베트남, 필리핀, 중국, 캄보디아 출신 저소득층 결혼 이민자 가족 대상 왕복 항공권 지급
다문화가족 생활편의 지원사업	경제적 부담을 경감 및 자립 기반 구축	국제특송요금(EMS) 할인 : 요금의 10% → 부산지방우정청 외환 송금수수료 면제 : 외환 송금수수료 전액 → 부산은행
결혼이민자 대표회의 운영	다문화가족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차원의 정책 수립 등에 반영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추진상황 설명 -결혼이민자 고충, 애로사항 건의 및 관심사항 토론 등 -건의, 토론 등 의견 검토 및 시책에 반영 등
다문화가족지원 민간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민간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지원함으로써 타 민간단체에 파급효과 기대	-다문화가족을 위한 민간공모사업 : 3개 분야, 35백만원 -공모 분야 : 취약업지원, 청소년이동 지원, 다문화사회 이해

다.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는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예산이 전체 다문화가족지원과제 예산에서 4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인종의 문화를 조성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의 과제(14.4%)의 예산 순이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두 예산의 비중이 전체의 62%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예산 비중이 높은 5대 과제에 결혼이민자의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과제가 포함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특화사업은 주요과제의 방향과 맥을 같이 하여 다문화의 이해 및 일반국민과의 교류를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이점으로는 사각지대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결혼이민자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자녀의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 등 다양한 특화사업이 결혼생활주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의료지원으로 임신부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며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위기가족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히 결혼이주여성의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결혼이민자 방송통신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표 3-23> 대구광역시 중점과제

(단위: 백만원)

영역	중점과제	과제수	예산	예산(%)
		33	1,607	
다양한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구현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2	757	47.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4	231	14.4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구축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5	172	10.7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5	151	9.4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2	111	6.9

<표 3-24> 대구광역시 특화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엄마와 함께 배우는 역사공부방	결혼이민여성과 자녀와 함께 배우는 역사공부방을 통해 자랑스러운 제2의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	-다문화가족의 엄마와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역사 공부방 운영 -동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여 자녀교육에 필요한 역사의식과 기초 지식 습득
쌍방향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확대 (다문화 어린이도서관 운영)	이중언어능력 향상 및 독서공간을 통한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	다문화어린이 도서관 운영(남구, 동구 각 1개소)
다문화가정 책보내기 사업	자녀 교육 도모 및 정서발달과 언어 발달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하여 4개국어로 이루어진 동화책을 제공
아빠와 함께 하는 무지개 놀이 운영	다문화가족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와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관계 형성 및 다문화 부모 자녀 간 소통으로 올바른 가치관 확립	다문화가족 아빠와 자녀(10~15세대) -내용 : 동화 구연 및 역할 놀이 등을 통한 가족화합과 소통
CYS-Net에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 및 복지 포함 (중도입국자녀 적응지원)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재혼다문화가족의 건강성 증진 및 가족관계 향상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어교육 및 진학지원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중도입국자녀의 한국문화적응을 위한 문화체험활동
다문화가족 서비스 종합안내지, 정보매거진 배포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	생활안내 책자 발간 다문화가족신문 '무지개세상' 발행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결혼이민자의 자긍심 고취 및 경제적 자립지원, 성공적인 정착모델로서의 파급효과 제고	한국어가 능통한 결혼이민여성들을 서포터즈로 양성하여 새내기 결혼이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및 통역, 상담 등과 의료·공공기관 동행)
결혼이민자 친정방문 사업	부부간의 화합과 친밀도를 높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데 목적	결혼 후 경제 사정 등으로 친정과 교류가 없는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하여 친정 방문 및 초청을 위한 왕복항공권 및 체제비 일부 지원
정부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다문화가족 중 갑작스러운 생활고 및 의료비 등으로 인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 대하여 긴급 자금 지원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연중/20명) •의료비, 간병비, 생활비 등 긴급 사유 발생시 긴급 자금 지원
다문화가족 의료지원 서비스	임신기 다문화여성에게 임신·출산에 대한 교육, 정보 제공 및 건강한 아이 출산과 안정된 산후관리 지원	-다문화가정 임산부: 건강한 출산 및 산후관리를 위한 임신·출산 교육 프로그램, 가족교육 및 자조 -결혼이주여성: 대상자별 맞춤형 무료검진, 방문무료 건강검진, 여성암 무료검진 -다문화가족:치과(병)의원 의료 자원봉사단체 연계 진료실시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실시	결혼이민자들에게 전문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결혼이주여성 직업능력향상 사업: 취업과 직접적 연계되는 과목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개발사업: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검정고시반 등)

<표 계속>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훈련 실시	결혼이민자들에게 전문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	-결혼이주여성 직업능력향상 사업: 취업과 직접적 연계되는 과목개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수시책 개발사업: 결혼이주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검정고시반 등)
결혼이민자 방송통신교육사업	고등교육실시로 취업기회 확대 및 경제적 안정기반 조성	고졸이상 학력의 결혼이민자의 방송통신대학 입학금, 등록금, 교재대금 등 지원
다문화가족 예술단 운영	지역사회활동 참여로 자긍심 고취 및 다문화사회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 다문화가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개선	-시 : 대구컬러풀다문화합창단 -남구 : 다다함마음풍물단 -수성구 : 해피코러스(합창단) -달서구 : 레인보우 공연단(무용) -달성군 : 플라워합창단
일반국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 확대	다문화가족 간의 문화적 충돌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여 가정의 화목과 일체감을 도모	행복한 설 명절 보내기 행사 추진
문화다양성 교육	다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열린 마인드 함양 제고 및 지역주민들의 다문화 인식 개선	시민 다문화 이해교육, 청소년 다문화 이해교육(25개교), 다문화 상설교육과정(민방위 기본교육과정에 포함) 운영
다문화가족 교류소통 강화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다문화를 존중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다문화가족 자매결연사업(시) -다문화가족 행복쌓기:다문화가족 인성 개발 프로그램 및 전통 문화 체험 활동 등 -글로벌 빌리지 만들기: 문화 해설자 양성,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다문화가정을 위한 영어멘토 등 -다문화가족 생활체험 수기공모
다문화 체험 사업	결혼이민자들의 자긍심 고취 및 경제적 자립 지원 - 다문화 이해 증진 도모	다문화강사 양성과정을 수료한 결혼이민자대상 다문화홍보교사 운영 원어민 및 다문화체험

라.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또한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예산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0.8%). 다음으로 한국생활의 초기지원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지원, 일자리 확대의 순서로 예산 비중이 높았다.

특화사업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지역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인력풀운영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등 결혼이주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특화사업을 다른 지역자치단체에 비해 활성화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에 부합되는 특화사업을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으로 접목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가정생활적응에 있어 사각지대일 수 있는 고부간 관계개선을 특화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표 3-25> 인천광역시 중점과제

(단위: 백만원)

영역	중점과제	과제수	예산	예산 (%)
		32	2,152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구현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2	878	40.8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구축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4	297	13.8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4	266	12.4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3	263	12.2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4	138	6.4

<표 3-26> 인천광역시 특화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가족 지원의 사각지대였던 고부갈등 해소와 가족 간 긍정적 관계 및 평등한 가족문화 형성	다문화 고부 대상 고부관계 힐링 캠프 다문화부부 대상 화합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 멘토링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인성교육 및 한국어교육 등 학습지도로 원활한 사회적응 지원	대학생 자원봉사자 활용 1:1 멘토 멘티 결연을 통한 기초학습 및 교과 지도와 특기 및 적성지도, 인성지도 및 상담활동, 체험문화 활동
다문화가족 서비스 종합안내지, 정보매거진 배포	입국 초기부터 결혼이민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 적응 지원	-다국어판 정보 매거진 제작배포 -다문화가족지원사업 가이드북 제작 배부
생활법률교실 가정상담 정례화	결혼이민자와 귀화허가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안정적 가족생활 기반 구축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 지역주민 -사업내용 : 생활법률교실 출장강의 및 가사 건 상담제공, 법 캠프연계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일자리 상담 카페 운영	결혼이민자의 생계형 일자리 욕구 증가에 따른 구직상담 및 연계	다문화가족 일자리상담 창구 운영
결혼이민여성 인력 Pool 구성	결혼이민자중 통역, 재능기부, 자원봉사 등이 가능한 인력 Pool을 구성하여 지역사회참여 확대	인력 Pool 관리를 위한 D/B 구축 -통역가능자, 재능보유자, 자원봉사활동
다문화사회 재능나눔 풀 (POOL) 확산 전개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사회적응에 필요한 전문지식, 재능 등을 갖춘 기관·단체·개인으로서 맞춤형 지원	•전문가의 전문성 기부 •기관 및 기업의 사회공헌사업 •대학생 전공분야 실제사회 적용 •전문 자원봉사단 등
아름다운 다문화특화 존 (ZONE) 조성사업	2014 아시아경기대회대비 남동하모니센터주변 논현포대공원 내 세계화 특화인프라 구축	•하모니센터, 남동공단, 논현포대공원, 호구포전철 역 특화가로 조성 •글로벌 공원조성(구역별 각국 특색 공원 조성 15개국) •세계 페레이드 길 인도정비 등
다문화가족지원 유관기관 실무 협의회 구성·운영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사회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지역 단위 서비스 접근성 및 수준 제고	인천 다문화가족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구성·운영

마.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는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예산이 582백만 원이며 이 중 35.6%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며, 다음으로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확대 및 직업교육 훈련에 관한 예산의 비중이 높다.

광주광역시의 특화사업은 한국문화체험이나 다문화가정 멘토링 사업 등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기한 점은 결혼이주여성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해 한국이름 개명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서는 다문화 관점에서 볼 때,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표 3-27> 광주광역시 중점과제

(단위: 백만원)

영역	중점과제	과제수	예산	예산(%)
		20	582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 문화 조성	4	207	35.6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2	111	19.1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직업교육훈련 지원	1	90	15.5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1	85	14.6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1	50	8.6

<표 3-28> 광주광역시 특화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국사회 및 지역사회에 대한 자긍심, 소속감 고취를 위한 기회 제공 필요	설추석맞이 명절음식 만들기 및 한국 전통문화 체험, 가족과 함께하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문화가족 자녀 인지정서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의 자기주도 학습의 기반을 마련 및 정서안정을 통한 학교부적응 해소	다문화가족자녀 방과후 학습 지원 및 문화체험 활동 실시
친정엄마 멘토 결연사업 실시	다문화가정의 멘토-멘티 결연을 통해 심리적·정서적·사회적 지원	다문화가정 20세대 내외 -다문화가족 심리 정서지지 서비스(정기적인 만남주선) -가족친화여가지원서비스(멘토-멘티 야유회 및 여행) -월2회 이상 밀반찬 서비스 제공
결혼이주여성 성·분창설 및 개명지원사업	외국식이름 사용으로 인한 선입견·편견, 자녀 따돌림 등의 문제발생 완화	한국국적 취득 후 개명을 원하는 이주여성
이주여성 합동결혼식 지원	저소득층 동거부부에게 행복한 가정 조성	저소득층 다문화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추진
한국의 정(情)보내기 EMS 지원	결혼이주여성 고국으로 선물을 보냄으로써 한국의 정(情)을 통한 지역애착심 고취	5월 어버이날 및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연1회 결혼이민자 고국으로 발송하는 국제우편요금(EMS) 지원 세대당 15kg 범위 내에서 지원
다문화 희망하우스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이주여성과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및 문화·복지를 위한 주민과의 문화적 소통공간 조성으로 '더불어 삶' 공간 실현	다문화희망하우스 건축
가족친화마을-우리동네 보물찾기	다문화 이주여성들에게 "친골목 가족 커뮤니티"를 통해 양3동 주변 골목의 희망주체로써 아름다운 골목 가꾸기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꿈을 만들어가는 양3동 홍보대사 활동 •이야기가 있는 골목지도 및 동네소식지 제작 •자투리 공간에 벽화그림 제작 •월 1회 이상 동네 지킴이 활동

바.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의 다문화가족을 위한 중점과제의 예산은 1,139백만원이며 예산 중 다문화가족구현의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과제에 32.4%가 배정되어 있으며 다음으로 한국생활 초기 적응지원에 8개 과제 2억5,400만원(22.3%)이 배정되고 있다.

특화사업으로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다양한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서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취약계층의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취업역량을 지원하는 사업 및 모국과 관련된 지원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가족발달주기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비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다중언어 교실이나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은 지역사회와의 통합을 지향하는 특화사업이다,

<표 3-29> 대전광역시 중점과제

(단위: 백만원)

영역	중점과제	과제수	예산	예산(%)
		38	1,139	
다양한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구현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 제고	2	369	32.4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구축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8	254	22.3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5	156	13.7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구축	소외계층 지원 강화	2	148	13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3	48	4.2

<표 3-30> 대전광역시 특화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 문화 교실 운영	한국생활 적응력 향상 및 가족관계 증진 도모	서구 및 유성구 거주 다문화가족 -주요내용 : 다양한 문화 체험 현장 견학 등 한국문화 프로그램
다문화 자료실 및 가족관 운영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간의 만남의 장 마련으로 친화력 형성 및 자녀들의 모국어 독서기회 제공으로 이중언어 발달 지원	-도서관내 "지구촌 한가족" 코너 운영 : 4개소 -다문화가정 및 일반인 대상의 자료실 운영으로 다문화 이해증진 -유성온천축제 및 동마을축제시 다문화가족관 운영
다문화가족 아동발달서비스 제공	다문화 저소득가정 자녀대상 사례 발굴 및 서비스제공대상자로 선정하여 건강하고 밝은 아동의 성장을 돕는 아동발달 지원서비스를 제공	다문화 및 저소득층가정 취학전 아동(30개월 이상) 중 정서행동 장애 등으로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내용 : 언어치료, 인지학습, 감각운동치료, 미술심리치료, 놀이행동치료
중국인 자녀 부모나라 알기 캠프 운영	중국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중국 문화 체험의 기회제공으로 부모나라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이해로 긍정적인 자존감을 고취시키고자 함	언어, 음악, 음식, 명절, 전통공예, 경극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입학 전 준비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입학 준비를 하고 있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아이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결혼이주여성(만7세 자녀를 둔 학부모)• 입학절차 •입학전 준비사항 •학교생활 지도
한국어 향상 및 기초학력 지원 강화	다문화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동화책 읽고 책과 관련된 다양한 독후활동을 통해 한국어 이해능력을 향상	다문화가정 어린이 6세~8세 대상 다문화 어린이를 위한 신나는 책읽기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전담 민원상담창구 운영	민원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다문화가족 상담창구 운영
다문화가정 앨범 제작 모국 발송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에 기여하고 유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세계에 전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신뢰도 제고	다문화가정의 사진촬영 모국으로 발송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정한 선생님』 지원사업 실시	- 결혼이민자가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정보 제공 및 지원	노인일자리 사업을 활용, 다문화가정에 방문하여 한국기본예절, 상담, 요리, 동화책 읽어 주기, 육아보조 등을 지원
다문화가족 방문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결혼이민자가 한국생활의 조기정착 및 가사지원을 위한 서비스제공	한국음식만들기, 육아가사지원, 기타생활 지원서비스등
다문화가족 신문배부	다문화가정의 신문 보급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보 제공 및 빠른 문화 습득으로 한국생활의 안정과 지역에 대한 소속감 제고	지역정보 제공을 위한 다문화 가정 일간지 배부

<표 계속>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다문화가족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 실시	의료접근도가 취약한 다문화가족에게 건강검진 및 무료진료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토록 지원	다문화가족, 외국인노동자, 유학생, 북한 이탈주민 등
결혼이주여성 토탈공예 작업장 운영	결혼이주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적 자립 도모	결혼이주여성 -내용 : 리본, 비즈, 풍선, 종이공예 등 다양한 토탈공예 전문강사를 활용, 소득 창출 및 토탈공예 전문강사 양성 교육기회 제공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 훈련 실시	결혼이민자의 취업교육·연계프로그램 운영 및 일자리 발굴지원으로 사회·경제적 자립 역량 지원	직업컨설팅 및 직업교육훈련으로 취업 연계 •네일아트, 공예제작, 비누제작, 제빵, 요리 등 자격과정
다문화가족 대표자회 구성·운영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다문화가족 대표자 회의 개최
인터넷을 활용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홍보	다문화인식개선 및 홍보	•네이버 해피빈 활용 •후원자 개발 및 프로그램 공유 •인터넷 내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등
일반국민과 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기회 확대	다문화와 비다문화가족이 함께 어울려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도모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지원과 다문화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을 위해 다문화 가족과 일반시민이 함께하는 다문화가족 화합한마당 추진
다문화 다중언어학당 운영	이주 외국인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 등 긍정적인 자질을 활용 세계화에 걸맞는 언어와 문화 등 다양한 교육으로 사회 통합에 기여	다중언어가 가능한 이주외국인으로 강사를 선정하여 비다문화 초·중학생 대상으로 외국문화와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실 운영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아이들이 문화의 다양성을 인식하고 국제적인 인재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관내 초등학교 신청학급,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6개 국가의 언어 및 문화 소개(베트남, 중국, 몽골, 필리핀, 일본, 태국1)

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는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제고 과제가 차지하는 예산이 다문화가족지원예산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조성에 27.4%의 예산을 할당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과제에 예산비중이 적은 편이다.

울산광역시의 특화사업은 다양하지는 않으나 임신출산부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3-31> 울산광역시 중점과제

(단위: 백만원)

영역	중점과제	과제수	예산	예산(%)
		16	1,038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구현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제고	1	436	42.0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1	284	27.4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3	125	12.0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구축	소외계층 지원 강화	1	50	4.8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구축	피해자 보호	1	41	3.9

<표 3-32> 울산광역시 특화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지지 환경 조성	-다문화 이해 증진 -외국인주민의 집중거주에 따른 치안 불안감을 개선하고 내·외국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울산남구청과 일본 아마시리시 어린이 미술작품 전시회 개최 -울산 남구 야음장생포동 외국인집거지 환경개선
다문화가족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임신부의 안전한 분만 유도 및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다문화가정 임신부 및 영유아 건강 관리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조기정착 지원 사업 추진	다양한 사업의 발굴,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조기적응 도모	다문화가족 대상 사업을 공모.
두문화 브릿지 사업 추진	다문화리더(결혼이민자여성) 양성	•유아 어린이 강의 기법교육, 교육 강의 안 작성교육, 교육제작 훈련, 사례교육, 글로벌 문화교육 등 -다문화 사회에 대한 지역내 인식개선 활동(문화 알림이 활동)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외국인지원업무와 다문화가족지원 업무를 통합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지원 서비스의 전달체계 효율성 강화	다문화가족지원 업무의 여성정책 소관부서와 통합 추진 구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확대 운영 •2010년 3개소 → 2012년 4개소 → 2013년도 5개소

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시는 다문화가족예산이 1억7천만 원으로 다른 시에 비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적으며 이 예산 중 다문화가족을 구현하기 위한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제고의 과제에 42%의 예산이 할당되고 있다. 또한 아직 특화사업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표 3-33> 세종특별자치시 중점과제

(단위: 백만원)

영역	중점과제	과제수	예산	예산(%)
		11	170	
다양한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구현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1	72	42.4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 달 지원	2	40	23.5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2	30	17.6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1	12	7.1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구축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1	8	4.7

자. 경기도

경기도는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정책과제의 예산이 8,077백만 원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예산배정이 많은 상황이다. 이 예산 중 상대방문화제도에 대한 이해제고 과제에 할당된 예산비율이 64.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한국생활초기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지원, 기초학력 및 진학지도의 순으로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경기도의 특화사업은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주기에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형성을 위한 사업, 18세 이하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각지대의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서포터즈 운영 및 피해가족에 대한 지원 등으로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다문화가족이 문제를 중심으로 특화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표 3-34> 경기도 중점과제

(단위: 백만원)

영역	중점과제	과제수	예산	예산(%)
		26	8,077	
다양한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구현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1	5,193	64.3
다양한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구현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2	760	9.4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4	642	7.9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2	564	6.9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구축	피해자 보호	2	401	4.9

<표 3-35> 경기도 특화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자아정체성 강화 및 긍정적인 또래관계 형성 기반 마련	초등학교 다문화가족자녀를 대상으로 다문화인식개선 및 부모나라 이해 교육, 또래와 함께 하는 단체협동 프로그램, 생태 체험 활동, 자아찾기 프로그램 등
안산 We Start 글로벌 아동센터 운영 사업의 개요	저소득 외국인가정의 특별한 서비스 요구에 대해 건강·교육·복지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이주배경을 가진 18세 이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이주배경 아동을 위한 복지건강교육(보육)의 통합적 맞춤형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글로벌봉사단 운영	직장인 글로벌 봉사단을 운영을 통해 친밀한 가족관계형성 및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동화책 읽어주기 (만 3세 이상~7세) •다문화가정 학습지도, 문화체험하기 등 지원
한국생활 적응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통합프로그램	가족친화프로그램을 테마별로 운영하여 보다 친밀한 가족관계형성 및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생활 도모	도내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정 서포터즈 운영	다문화가정 서포터즈를 운영하여 어려운 다문화가족 발굴 및 수혜를 받지 못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여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지원	어려운 다문화가족 및 신규 결혼이민자 발굴 센터에 연계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개선 사항 건의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결혼과 가정에 대해 올바른 인식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정착	다문화가족 부부 및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 다문화가족 지원 자문위원회 운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자문위원회 구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등 -내용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사업에 관한사항등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가입	다문화도시 협의회 원활한 운영	다문화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협의 및 개선방안 제시 •다문화 관련 현안 등에 관한 의견교환 및 해결방안 공동모색 •다문화 관련 시책에 관한 연구

차. 강원도

강원도의 경우도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도예산에서 상대방 문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과제에 할당된 예산이 67%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과제에 11.5%의 예산이 할당되고 있어 그 이외의 과제에 할당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강원도의 특화사업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정착 및 인식제고를 위한 다문화가족사랑 공동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표 3-36> 강원도 중점과제

(단위: 백만원)

영역	중점과제	과제수	예산	예산(%)
		14	1,742	
다양한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구현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1	1,174	67.4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	200	11.5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구축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1	103	5.9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직업교육훈련 지원	2	74	4.2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사회참여 확대	1	54	3.1

<표 3-37> 강원도 특화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사랑 공동캠페인 추진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유관 기관 및 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다문화자녀 교실, 다문화 공동캠페인, 화합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10개사업 하이원리조트·북지법인 함께사는 강원세상과 공동으로 지속 추진

카. 충청북도

충청북도는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예산 중 한국생활초기적응과 다문화가족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예산이 각각 38.5%와 35.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두 과제의 예산 비중이 균형적으로 높게 할당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른 과제에 할당된 예산의 비중은 낮은 편이다.

충청북도의 특화사업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학용품지원이나 결혼이주여성들의 직업훈련에 1:1 매칭을 하는 지원 사업이 특징적이며(보은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역량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표 3-38> 충청북도 중점과제

(단위: 백만원)

영역	중점과제	과제수	예산	예산(%)
		27	1,504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구축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8	579	38.5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학교생활 초기적응 지원	1	537	35.7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강한 발달 지원	2	125	8.3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및 사회적 지지 환경 조성	1	83	5.5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1	60	3.9

<표 3-39> 충청북도 특화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을 위한 방통융합 공공서비스 시범사업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및 상담지원 체계 구축 등 다문화가족의 사회정착 지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화상 통신 서비스 -다매체 연동기반 방송통신융합 미디어 플랫폼 및 인프라 구축
다문화가족 정서지원	다문화가족의 정서안정	<다문화정서지원프로그램- 청원군> <함께 그리는 무지개- 증평군> <다문화 부부교육>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조기정착지원	다문화가족 농촌생활 조기적응으로 농업, 농촌의 인적자원 역량강화	생활 개선회 다문화여성 영입하여 농촌생활 조기적응
다문화가족 고국방문 지원사업	친정방문을 통한 한국사회 정착지원	자녀 출산 및 경제적 여건 등으로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이주여성 및 다문화 가족들에게 고향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 제공
행복한 가정이루기 합동 결혼식(전통혼례)	경제적 이유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합동결혼식 및 전통혼례 실시, 결혼지원금지원
다문화가족 모국 국제특송요금 지원	다문화가족의 경제적 비용부담 경감을 위한 모국 국제특송요금지원	생활용품, 의료, 농특산물 등 모국발송 국제 특송 EMS이용시 요금지원(1가정당 5만원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학용품비 지원	자녀의 학습발달 및 올바른 성장과 이들을 가정의 생활안정을 도모	지원기준 : 1인/5만원(연 2회), 학용품비 지원
결혼이민자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	건강한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건강검진 등으로 조기정착지원	방문건강관리, 모자보건 및 영양보충사업, 예방접종, 여성암 건강검진, 구강관리 실시
결혼이주여성 매칭적립금 지원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매칭 적립 방식으로 지원하여 원활한 가정생활 육성 및 한국생활의 조기 정착 지원	보은군에 주소를 둔 농촌총각과 국제결혼한 여성으로서 6월 이상 거주한 결혼이주여성(본인의 자율적인 적립금에 따라 군에서 1:1 매칭 지원(월 1~5만원))
공무원 교육원에 다문화 교육과정·과목 개설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행정서비스 제고	다문화 사회 이해를 제고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자체 공무원 마인드 함양을 위한 연수원 다문화이해과정 편성 운영

타.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같은 충청권의 충청북도와 달리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과제에 다문화가족지원예산의 57.2%가 할당되고 있으며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자녀의 성장을 지원하는 4개 과제의 예산이 23.5%를 차지하고 있어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한 예산 비중은 낮게 배정되고 있다.

특화사업은 사업의 개수로 볼 때 다양하지 않으나 가족의 적응지원, 자녀의 양육관련, 인식개선, 취업지원 등 핵심적인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3-40> 충청남도 중점과제

(단위: 백만원)

영역	중점과제	과제수	예산	예산(%)
		25	3,441	
다양한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구현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2	1,969	57.2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4	807	23.5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구축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3	196	5.7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문화 이해 제고	1	169	4.9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1	100	2.9

<표 3-41> 충청남도 특화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다문화어울림사업 추진	다문화가족 및 비 다문화가족 간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통해 상대방의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다문화감수성을 증진	가족간 갈등해소, 배우자 출신국가의 문화언어교육, 한국문화체험 및 문화예술 동아리육성 지원, 다문화 인식개선 추진 등
다문화 청소년 워크숍 등 교류 강화	다문화가족이 청소년이 국내 청소년과 동일한 환경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한·중 꿈나무 국제교류 참가 백제문화역사탐방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사업 추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실시	TF팀 구성 및 매뉴얼 개발, 매뉴얼 배포 및 지역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캠프 진행
친정부모 초청 또는 모국 방문 지원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에게 친정부모 초청 및 모국방문기회를 제공하여 정서적 안정 도모	다문화가족 부부 및 자녀(1가족당 3명 이하) -지원내용 : 결혼이민자 친정부모 또는 모국방문을 위한 항공료 지원 -신청기준 : 한국거주 4년이상 된 국적 취득자
결혼이민자 자립강화를 위한 취업지원	지역특성 및 결혼이민자 수요 등을 고려하여 결혼이민자를 전문가로 양성, 교육기관 및 의료시설 등에 파견함으로써 이들의 경제적 자립도모	전문교육, 자격증 취득비, 자녀돌봄(교육시) 등
찾아가는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전개	다문화강사역량강화교육 수료자의 다문화가족밀집지역 및 공공기관 등 지역 파견을 통해 도내 다문화감수성 향상	대학교수, 다문화전문가, 다문화강사 등 TF팀 구성을 통한 도내 다문화인식개선 매뉴얼 개발
시·군 다문화사업 컨설팅 운영 지원	시·군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점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향후 다문화사업 추진방향 제안과 효율성 증대	다문화전문가, 대학교수, 거점센터 등을 포함,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시·군에 적절한 컨설팅을 제공

과. 전라북도

전라북도는 4,779백만 원 예산 중 상대방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한국생활초기 지원 순서로 예산이 할당되고 있다. 특화사업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며 결혼이주여성의 가치 개발이나 직업역량강화와 관련된 특화사업의 비중이 크다.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특화사업으로는 아버지교실, 결혼이민자의 학력증진을 위한 지원, 도내 대학재학 시 학비 지원, 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등이 있으며 농촌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영농관련 역량을 지원하는 특화사업이 계획되고 있다.

<표 3-42> 전라북도 중점과제

(단위: 백만원)

영역	중점과제	과제수	예산	예산(%)
		40	4,779	
다양한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구현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3	1,491	31.2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	889	18.6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구축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6	840	17.6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3	235	4.9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결혼이민자 역량 개발	2	231	4.8

<표 3-43> 전라북도 특화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다문화가족 행복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간 네트워크 강화	센터별로 다문화가족 워크숍 등 프로그램 운영
아버지 교실 운영	아버지상 정립과 행복한 다문화 가정생활 지원	배우자와 함께 하는 다문화 전문상담 및 집합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식재료 판매업소 운영	전통시장에 다문화가족 국가별 식재료 판매점을 운영, 다문화가족의 먹거리 존중 및 소통공간 제공으로 정서적 안정 도모하여 한국 조기 정착 지원	전통시장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문화 국가별 식재료 판매점 운영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실 운영	학부모 역량강화	다문화가정 상담실 운영,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자녀 교육 관련 정보 습득공유 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만남의 날 운영, 다문화가정 학부모 사랑방 운영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학습에 소외되기 쉬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습활동비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으로 교육경비 부담 경감
다문화가정 자녀학습도우미 "키봇" 지원	한국어 소통 능력부족으로 자녀학습지도에 한계가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언어발달 및 기초학습 능력을 향상시켜 학습과정의 학습능력 향상을 도모	다문화과정 자녀 언어발달 및 기초학습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키봇을 통한 재미있는 학습 유도 지원
다꿈사랑방학교 운영	다문화가정 학생 정체성 함양	학교별 다문화가정 학생 기초학력 정착 책임 지도, 다문화이해교육 실시 및 다문화학생 심리-정서프로그램 운영, 다문화 학부모교육(아버지 학교 등) 실시, 다문화가정 학생 학교생활 부적응 해소 위하 일반 또래 친구 1:1 결연지도
다문화마을학당 운영	지역사회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각종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제공	결혼이민자 대상 한국어학당 운영, 결혼이민자 학력취득지원 및 맞춤형 직업훈련
다문화가족 생활정보강좌 운영	다문화가족 사회적응력 향상	생활정보강좌 운영 지원(노래교실, 아트플라워 교육 및 문화체험 등)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결혼이민자의 모국 가족에 "한국의 정을 담은 선물"을 배송할 수 있도록 국제운송비 지원하여 지역사회 자존감 고취 및 사회통합성 제고	이주여성 국제운송비 지원 : 연 2회, 280명 - 지원내용 : 이주여성 국제 운송비 지원/1인 50,000원
결혼이주여성 한국예절 및 생활요리교육	결혼이민자 조기 정착	결혼이주여성 대상 가정생활에 필수적인 기본예절 교육 및 음식 만들기 교육
결혼이주여성 친정부모 댁어주기 및 전통혼례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한국 친정가족을 댁도록 하여 안정적 정착 지원	입국한 지 2~3년 이내의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와 한국인을 멘타·멘토로 결연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	건강관리와 의료이용에 대한 정보가 취약한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건강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할 기회 제공	40세미만 외국인 여성결혼이민자

<표 계속>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다문화가정 정착지원금 지원	다문화가정 조기정착지원	입실군내 3년 이상 거주하는 자와 결혼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날로부터 혼인상태 3개월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 지원	결혼이민자 경제적 자립지원	사업내용 : 지역별 맞춤형 결혼이민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농촌지역 결혼이민자 영농교육 및 자활훈련	농촌 이민여성의 자기정체성 확보 및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안정적 정착 유도	농촌이민여성 영농교육, 자립 및 자활 훈련, 자녀상담 및 학습도우미, 다문화 체험 및 놀이 등
결혼이민자 학력취득 지원	결혼이민자 학력취득 기회제공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인정 희망 결혼이민자검정고시반(중졸, 고졸반) 운영 지원
결혼이민자 대학 학비 지원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업을 지속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에게 학위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경쟁력 확보를 통한 성공적 정착 지원	도내 대학 재학 결혼이민자 -지원 금액 : 1인 1백만원 이내 -지원 시기 : 2회(3월, 8월)
다문화 누리 개최	다문화 자녀 및 일반학생(초, 중학교)에게 다문화에 대한 바른 이해교육을 통해 다문화 학생과의 통합 및 열린 다문화 사회 준비 교육 실시	초등, 중학생 대상 다문화 글짓기, 그림대회, 엄마나라 동요 부르기, 이중언어 경시대회를 통해 열린 다문화사회 준비
전북다문화포럼 운영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대안 마련	전문가, 전·현직 공직자 및 시군 공무원, 현장 활동가 등 정기포럼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협회 운영	네트워크 활성화	도내 14개 시군 센터 간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활성화하여 전라북도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효율적 추진 도모

하. 전라남도

전라남도는 여러 중점과제에 할당된 예산이 과제별로 균형이 있는 편이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과제에 39.2%,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에 30.4%, 한국생활초기적응지원에 20.4%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다.

특화사업은 입국 7년 이내의 다문화가정에 대해 인터넷 요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 제시되고 있다.

<표 3-44> 전라남도 중점과제

(단위: 백만원)

영역	중점과제	과제수	예산	예산(%)
		22	2,866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3	1,125	39.2
다양한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구현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1	870	30.4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구축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4	584	20.4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2	240	8.4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구축	피해자 보호	3	34	1.2

<표 3-45> 전라남도 특화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다문화가정의 인터넷 요금 지원	통신요금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 및 인터넷 활용을 통한 정보, 문화교류로 결혼이민자의 조기 정착 유도	다문화가정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 - 입국 7년 이내 가정을 대상으로 월 21,450원 지원

거. 경상북도

경상북도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다문화가족정책추진체계 정비를 위한 과제에 예산의 16.5%가 할당되고 있다.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는 대부분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예산 비중에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화사업으로는 전라북도와 마찬가지로 결혼이주여성의 학위취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 비해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나 공무원이나 다문화가족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기획 홍보 등 다문화가족정책추진체계나 토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표 3-46> 경상북도 중점과제

(단위: 백만원)

영역	중점과제	과제수	예산	예산(%)
		25	7,300	
다양한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구현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1	2,934	40.2
안정적인 가족생활기반구축	한국생활 초기 적응지원	5	1,787	24.5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2	1,205	16.5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	452	6.2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3	200	2.7

<표 3-47> 경상북도 특화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국제교류 지원	해외 현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양질의 해외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자녀의 학습능력 제고	다문화가정자녀 현지 대학 교육 캠프, 홈스테이, 문화체험 등 다문화가정자녀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결혼이민여성 우리말공부방 운영	결혼이민자 한국사회 조기정착 유도	다문화가족 - 주요내용 : 한국어교육, 교양교육(남편, 시부모), 생활상담 등 서비스 제공 등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다문화가족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발굴 추진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국내방문 지원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및 인식개선 제고	다문화가족 친정부모 국내방문 지원
결혼이민여성 교육지원	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생활 적응 및 사회활동 경쟁력 강화	학위취득 의지가 있는 결혼이민여성 1인당 1백만원 이내
다문화가족 사회참여 지원	지역사회 참여확대로 다문화 이해 제고 증진	예: 다문화 음식문화축제
다문화정책 기획홍보	사회적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도내 다문화가족 소식 및 경북도의 정책 홍보
다문화업무담당자 전문성 제고지원	다문화이해 폭 확대 및 장기근무	도 및 시군 다문화업무 담당공무원 선진다문화 국가 제도 비교 견학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효율성 제고	도내 다문화가족 전체대상 다문화가족 현황 및 관련 정책 연구, 삶의 질, 경제상황 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효과성 제고	각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를 평가단으로 구성하여 시군별 교차 평가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조성(출연금)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정책 재원 마련	경상북도 다문화가족지원기금 조성

너. 경상남도

경상남도의 중점과제는 대부분의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상대방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수용, 자녀의 건전성장 지원 등의 과제 순서이며, 결혼이민자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2개 과제에 10.7%의 예산을 할당하고 있다.

특화사업은 다양하지는 않으나 시군별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3-48> 경상남도 중점과제

(단위: 백만원)

영역	중점과제	과제수	예산	예산(%)
		24	6,912	
다양한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구현	상대방 문화제도에 대한 이해 제고	1	1,938	28.4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다양한 인종·문화를 인정하는 사회문화 조성	3	1,038	15.1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기초학력 향상 및 진학지도 강화	2	896	12.9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	866	12.5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확대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2	740	10.7

<표 3-49> 경상남도 특화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다문화가족 외갓집 방문사업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결혼이민여성 및 자녀에게 친정(외가) 방문기회 제공
여성결혼이민자 멘토링 사업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선주민 여성간 친정어머니 맺어주기 등 멘토-멘티 연결
경상남도 다문화체험관 운영	다문화가족, 도민, 교사, 학생 등에 대한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실시로 사회통합에 기여	도민에 대한 광범위한 다문화 이해 교육 실시
다문화가족 특수시책 사업 추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시군별 지역에 적합한 다문화 특수시책 개발 지원 - 시군별 지원센터에서 건의한 특수시책을 채택하여 사업비 지원

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각 중점과제별 예산 비중의 편차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적은 편이다. 한국생활초기지원, 다문화가족정책총괄추진력 강화, 일자리 확대, 자녀의 건강지원, 피해자 보호에 28%~11%의 예산이 할당되고 있다.

특화사업으로 제주자치도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사이버교육으로 도서지역 및 농촌지역의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표 3-50> 제주특별자치도 중점과제

(단위: 백만원)

영역	중점과제	과제수	예산	예산비중
		18	1,774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한국생활 초기 적응 지원	4	499	28.1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체계 정비	다문화가족정책 총괄 추진력 강화	3	341	19.2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 확대	결혼이민자 일자리 확대	1	214	12.1
다문화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발달 지원	2	197	11.1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피해자 보호	3	191	10.8

<표 3-51> 제주특별자치도 특화사업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다문화가정 문화 역사 언어교육 지원	한국사회 이해도 제고	결혼이주여성 대상 인성교육 강사 양성과정 운영
다문화가족 전통문화 체험 기회 확대	상호 문화 이해를 통한 지역사회 조기정착 및 소통의 장 마련	제주거주 외국인 및 가족 - 전통음식체험, 전통놀이 체험 등 전통문화체험 운영
다문화가족 온라인 교육 서비스 지원	도서지역 및 농어촌 등 소외된 다문화가족 대상 언어 온라인 교육 서비스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조기적응 지원	- 한국어 교육 등 사이버 교육을 위한 온라인 사용료 지원 - 제주생활 바로알기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공
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사업	경제적 여건 등으로 고국방문이 어려운 결혼이민자가족에게 고향방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상호간 문화이해의 장 마련 및 결혼이민자로서의 자긍심 고취	결혼이민자 대상 방문국 및 방문시기 수요조사 후 방문국(1개국) 선정

2. 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시사점

17개 광역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중점과제와 특화사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지자체 별로 지역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이나 다문화가족의 분포, 지리적 특성, 예산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과제가 수행되고 있는데, 이들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과제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자체에 따라 과제별 예산 투여 비중은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지자체의 결혼이주여성의 가족생활주기나 지역사회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현재까지는 다문화 인식개선, 초기 정착과 관련된 지원, 자녀지원에 대한 예산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이는 결혼이주 이후의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욕구에 대한 대응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둘째, 가족생활주기를 고려하였을 때, 지자체별 중점과제의 예산 비중에 있어 결혼이주여성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업지원 등의 예산 비중은 다른 과제들에 비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취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정책과제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원중심에서 사회참여 지향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이 다문화가족의 일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하기 위한 개인의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도록 관련 과제의 활성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자체 별로 다양한 특화 사업이 제시되고 있으나 지역적인 특성이 반영된 것은 일부지자체에 국한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여러 지자체에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도 각 지자체에서는 특화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특화사업의 차별화와 독특성은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넷째,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입학전형의 기회제공이나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등록금 지원 등은 역차별이 될 소지도 있는 부분으로, 다른 저소득 가정의 여성이나 대학입시를 희망하는 취약계층에게 차별적인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 혹은 적정 기준에 대한 논의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제4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관련 서비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요

가. 목적 및 법적 근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의 법적근거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조의 목적 하에 이 법 제12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조항을 마련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는 사회복지사나 건강가정사 혹은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 중 최소 1인 이상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두어 다문화가정의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주요 업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지원 사업’, ‘그 밖에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4항, 5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은 크게 기본사업과 특성화 사업으로 구분된다. 기본사업은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 상담이며, 특성화 사업은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언어영재교실, 다문화가족자조모임,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 인식개선, 지역사회협력 네트워크강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배치 시범사업 등이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www.liveinkorea.kr).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는 개인, 가족, 단체,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체계와 업무를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여러 인종과 민족의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미시적 개입에서부터 중범위 체계와의 네트워크, 더 나아가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인식개선과 옹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는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은 다문화의 결혼이주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지식과 기술을 구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2012년 1월 안전행정부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민자 및 혼인귀화자는 총 220,687명이며 이 중 여성이 196,789명으로 전체 결혼이민자 중 89%를 차지하고 있다. 거주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1,280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서울(48,587), 경남(13,637), 인천(13,052) 순이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로 2,158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결혼이주여성의 비율과 맥을 같이하여 2013년 현재 211개소 중 서울이 24개소, 경기도가 30개소이며, 제주도 2개소 등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각 지역에 다문화가정의 수와 비례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

『2013년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안내』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 지원은 다음과 같다. 총 예산은 43,647백만원(국비), 센터 기본운영비(국비+지방비)로 가형 기준 169,860천원, 나형 기준 140,730천원이 편성되어 있다. 지원방법으로는 지자체 경상보조와 국비(서울 50%, 지방 70%) 형태로 지원된다.

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조직특성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센터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하는 형태(법 제12조 제2항)인 위탁센터가 있다. 대부분이 3년 계약의 위탁센터이다. 소규모의 정규직 인력에 의존하여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관리자로는 소장과 팀장이 있으며, 소장의 경우 비

상근인 경우도 있다. 전문 인력으로는 사회복지사와 건강가정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이들 정규직원의 수는 많지 않으며 이들과 함께 통번역지도사, 언어교사 등 다수의 계약직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2). 이러한 조직의 인력구조는 결혼이주여성의 비율이 높은 지역의 사회복지사에게 업무과중을 야기할 소지가 많다. 뿐만 아니라 농촌이나 도농 복합지역의 경우 접근성 문제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등 업무관련 요소에 대응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업무환경의 현실은 전문성 개발이나 역량 증진을 위해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문제로 연결된다(최소연, 2013).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내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본사업은 한국어교육,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개인·가족 상담이 해당된다. 그 외에 특성화 사업은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언어영재교실, 다문화 인식개선, 지역사회협력 네트워크강화, 다문화가족 사례관리사 배치 시범사업 등이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www.liveinkorea.kr).

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1) 교육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사업으로 방문교육사업의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방문교육사업은 가족적, 지역적 요인으로 집합교육형태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큰 대상들에게 서비스 수혜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입국 5년 이하나 10세 미만의 자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가 필요한 입국 5년 이후 혹은 10세 이상의 자녀는 사각지대가 될 소지가 있다.

<표 3-5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교육사업

영역	대상	공통필수	선택예시	비고
한국어교육	집합: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방문: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	-1단계, 2단계 -방문 한국어교육서비스	3단계, 4단계, 특별반	400시간 (방문교육시간 별도)
다문화가족 통합교육	집합교육: 다문화가족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생애주기별 각 1회 지원(최대 15개월, 총 3회 지원)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만 3~10세 미만의 다문화가족 자녀	-가족의사소통 프로그램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부부-배우자교육프로그램 -아버지교육 -다문화 이해 및 인식교육 -법률과 인권교육 -방문 부모교육서비스 -방문 자녀생활서비스	결혼과 가족의 이해 가족의 의미와 역할 배우자이해프로그램 예비-배우자교육프로그램 부모-자녀관계 및 자긍심향상프로그램 자녀교육프로그램 부모역할교육, 자녀건강지도 자녀생활지도 한국사회적응교육, 소비자경제교육	60시간 (방문교육시간 별도)
다문화가족 취업연계 및 교육지원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자녀(20세 이상)	-취업기초소양교육 -워킹넷 등록 및 연계		워킹넷 3건 이상

2) 상담사업

중도입국 자녀의 증가, 이혼 사별 결혼이민자 증가 가족생활주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거나 지극히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여성 결혼이민자에 대한 가정폭력 등 인권피해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 인권 보호 부문의 예산 역시 부족한 실정으로 지적되고 있다(여성정책연구원, 2012).

<표 3-5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상담사업

영역	대상	공통필수	선택예시	비고
상담	다문화가족 (이혼가족 포함)	가족상담	개인상담, 집단상담, 사례관리, 심리검사, 외부상담기관 연계	연간 80회기 이상 (가족상담 30회기 이상 필수)

3) 문화사업

문화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사업과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이 수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사업은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나눔봉사단 구성 및 운영 등의 봉사자 소양교육이 6시간 이상 실시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자조모임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에게 있어 사회참여 및 사회적 지지는 가족응집 및 적응, 사회통합 등의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전 생애주기별로 사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다.

<표 3-5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화사업

영역	대상	공통필수	선택예시	비고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구성 및 운영 - 봉사자 소양교육		봉사자 소양교육 6시간 이상 실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자조모임,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등	

4) 홍보 및 정보제공

다문화 인식개선 및 지역사회 홍보,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정보제공 등이 수행되고 있다.

나. 특성화사업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특성화 사업으로는 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외국인부모 국가의 언어발달 지원 등이 제시되고 있다.

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은 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초기 언어평가와 개별 및 모둠 등의 언어교육이 수행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양육 상의 어려움 중의 하나로 언어생활 및 언어지도가 지적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욕구로 언어교육이 높게 나타나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표 3-5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

대상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만12세 이하)	언어평가(초기) 및 언어교육(개별교육/모둠교육)

2)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사업군 심층평가결과에 의하면, 결혼이민자를 위한 통번역서비스는 개별센터의 상시적 운영의 한계와 지역별 수요분석을 통한 공급계획의 부재, 소수언어에 대한 통번역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표 3-56>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대상	내용
다문화가족 및 관련 공공기관	행정 및 사법기관, 병원, 경찰서 등 공공기관 이용시 통·번역 국적 및 체류 관련 정보 제공, 임신 및 출산과 양육 등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등

3)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사업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사업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재학생, 비다문화가족자녀, 그리고 다문화가족 등을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의 언어 및 문화수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다문화주의에 근거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내 결혼이민자에 대한 언어 및 문화생활의 지지가 낮은 상황에서 가족응집력 및 사회

통합 차원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표 3-57> 엄마(아빠)나라 언어습득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사업

대상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만3세~초등학교 재학생), 非다문화가족자녀, 다문화가족(배우자, 시부모 등)도 참여 가능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및 문화 수업 ※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러시아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개선안 논의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관련된 국민의 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국민권익위원회, 2011),

첫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시·군청에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어 없는 시군이 있다는 지적이다.

둘째, 상근인력도 2~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질적인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셋째, 농촌지역의 면단위 외곽지역에 사는 대다수의 다문화가족은 대중교통이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에 어려움 호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가족 통합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한국인 배우자나 시댁가족의 참여가 매우 저조한 실정임도 문제로 제시되고 있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의 전문성과 기능강화와 관련된 논의도 제시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이고(손경희·정일선, 2012),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지역여건에 따라 세부서비스 내용의 변형이 가능하도록 융통성이 발휘될 필요가 있다. 서비스 제공 방식과 일정 등에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구성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농촌지역이나 도농복합지역의 경우 지리적 근접성이나 교통여건에 의해 방문교육이나, 주거지인근지역의 단위농협 및 마을회관을 거점으로 하는 하위거점을 운영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생애주기를 고려한 서비스 설계 필요와 함께 다문화가족지원 코디네이터 인력 도입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김영란 외, 2012).

제5절 다문화지원정책의 진단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선행연구, 중앙정부의 다문화지원정책,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 및 과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진단 및 방향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결혼이주여성 중심의 가족으로 국한할 것인가 아니면 다양성에 기반을 둔 이민자와 국내체류외국인 포괄하는 범위로 확장을 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상에 제시된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결혼이주여성에 국한하므로 다문화가족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한계가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에 국한된 범위를 초월하여 다양성에 기반을 두고 국내체류 중인 이민자가족을 포괄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시되고 있다. 그럴 경우 현행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이 이주민지원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명칭 또한 다양한 이주민을 포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에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앙부처간 정책과제 중복의 최소화와 전달체계 정비의 문제이다.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하여 여러 중앙부처에서 관여하면서 유사사업이 행해지고 있어서 중복과제수행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다. 초기 정착과 관련하여서는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고용 및 취업과 관련하여서는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교육은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문화관광체육부, 인식제고 등은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체육부,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복지와 관련하여서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서로 연관된 부분에 있어 부처간의 중복을 피하면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효율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추진체계가 구동되어야 할 것이며,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제별 주무부처가 우선적 책임을 갖고 추진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족의 보육은 보건복지부, 교육은 교육부, 취업은 고용노동부, 가족의 안정 및 생애주기 지원은 여성가족부 등, 6대 중점과제별 핵심소관부처를 정하여 중복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며, 현행을 유지할 경우 부처간 조정을 위한 허브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중점추진 부처가 정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족지원에 있어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의 문제이다.

다문화가족의 생활주기에 따른 다양한 지원이 정책과제로 수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과제는 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차원에서 수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소규모 인력이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족생애주기에 있어 다문화가족의 특수한 욕구가 수렴되고 반영되는가에 대해서도 숙고해 보아야 한다.

초기 입국 후 결혼전 상대방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와 결혼 후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예비 배우자가 함께 참여하는 결혼준비교실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에 대한 초기 정보제공이나 적응서비스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용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초기적응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뿐 아니라 보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을 포괄하는 측면에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 후 초기적응기에 있어 한국어 습득 및 능력향상 및 체계적 지원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해서 주지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행해지는 한국어강좌가 업무 중에 진행되기 때문에 기초의 한국어구사능력을 보유하고 취업을 한 경우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취업 후에는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고급의 경우 개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혼이주여성의 선택에 의해 강좌가 개설되기 때문에 고급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어 능력을 일정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후 자녀의 언어발달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주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가족의 발달 주기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이나 결혼이주남성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부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녀양육과 관련된 다문화가정의 기능강화가 요구된다.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가족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학령준비, 학령기의 부모의 역할,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법 등 다문화자녀의 건전양육을 직접지원 하는 것 뿐 아니

라 부모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가족위기 혹은 갈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적응과 자녀의 학교적응 문제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가족생활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위기가정 혹은 위험에 노출된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족 단위의 사례관리를 통해 이들의 복합적인 욕구와 지역사회의 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적응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상담, 자원 연결, 가족의 정신건강의 문제, 자녀의 학교적응 문제, 갈등 및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복합적인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구비될 필요가 있다.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의 연령의 증가에 따른 중년기 및 노년기 생활적응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에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이 내국인과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논의이다.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무상보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역차별의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무상보육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역차별에 대한 논란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학령전기에 아동이 또래 활동을 통해서 건전한 발달단계로 연결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무상보육의 긍정적인 측면은 오히려 부각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가정 내에서 질적인 보육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적인 서비스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 무상보육이 전 계층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에 있어 차별이나 역차별의 논란을 넘어서, 이들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보육시설이용에서 경험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더욱 유익한 경험이 가정보육에서 제공되므로, 영유아기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양질의 보육 제공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역차별의 논란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대학입학³⁾이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주택분양의 경우도 형평성과 관련하여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하여 기회가 박탈된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 부분이지만, 단지 다문화이기 때문에 기회를 더 부여한다는 논리는 설득력을 담보할 수 없을 것이다. 한국에

3)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대학입시에 기회균등 할당제를 도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함.

서 출생하여 한국인으로 생활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대학 입학 할당이나 가산점에 대한 논의는 ‘기회의 균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또 다른 역차별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일부 대학의 입학기준에 대한 분석이 별도로 전제되어야 할 것). 따라서 다문화이기 때문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국민 중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취약한 측면으로 사회적 보호가 용인되는 수준에서 지원의 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즉, ‘다문화’로 문제를 일반화하는 접근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이 직면한 욕구와 필요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령기 자녀의 경우 학교적응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대한 지원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학생의 건전육성을 지원하는 학교교육의 일환으로 학교현장의 전문가에 의해 개입하는 것이 보다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에서 접근의 방향을 제설정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이라는 범주에서 접근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민정책이 우리나라에 비해 선구적인 프랑스의 경우 이민자를 분리하여 지향하기 보다는 지역사회에서 통합된 상황에서 개입하는 방법을 지향하고 있다. 다문화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개입이 학교현장에서 행해지는 것이 다문화를 지향하는 선진국의 추세인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다문화학생의 지도와 관련된 현재 학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중도입국청소년의 적응지원과 관련하여서도 다문화가족정책의 일환 뿐 아니라 국내 체류민의 학습권과 교육권의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학교적응의 우선적인 책임은 다문화정책의 접근 뿐 아니라 교육과정의 학교현장에서의 접근으로 해결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시적 이용에 대한 논의이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다양성의 일부분인 ‘다문화’가족만을 분리하여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이주여성과 그 가족에 대한 게토(Ghetto)를 형성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초기한국생활의 적응이후에 지역사회의 적응과 통합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시설과 센터로 자연스럽게 연계하며 이용하므로 통합을 지향하는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결혼생활주기에서 초기 정착과 적응기에 해당하는 한시적인 이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역량과 관련한 체계적인 사정과 함께 이들이 보유한 자격과 능력이 취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접근은 적응과 자녀양육에 보다 초점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문화에 대한 정책이 지원중심이라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보다는 개인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사정을 하여 직업적인 역량의 증진을 통해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Wolfensberger & Tullman, 1982). 지역사회에 다양한 일자리의 발굴, 결혼이주여성의 직업역량의 강화,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직업역량에 대한 사정과 취업연결,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중문화의 강점을 활용한 직업역량개발 등 단순 일자리 연결을 지양하고 직업역량을 활용한 취업으로의 연결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취업연결이 지역사회의 상생의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일자리의 파이를 확장하지 않은 취업연결은 또 다른 역차별의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이주여성의 강점을 활용한 일자리의 발굴, 직업역량의 개발과 강화를 통한 질적인 취업 연결 등에 대한 가치를 지향하면서 결혼이주여성의 개개인의 역량 발휘와 함께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증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제4장 해외선진국 사례분석

제1절 해외선진국의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제2절 각국 사례

제3절 시사점

4

해외선진국 사례분석 <



제1절 해외선진국의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1. 법·제도적 기준

가. 법적 기준

우리나라는 헌법상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법적 기틀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세부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만 다문화 관련 법령이 모두 법적 강제력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고 각 법령의 적용대상이 협소하여 다문화사회의 모든 구성원을 보호 내지 규율할 수 없는 실정이다(서원상, 2011). 따라서, 그동안 제안되어 온 대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대상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정부가 다문화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다문화가족 지원기준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 인권보호에 관한 보편적 규범을 담고 있는 UN헌장,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A규약, B규약), 둘째, 다양성 또는 이질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의 금지를 담고 있는 인종차별철폐협약, UN총회차별금지선언, 소수자를 위한 UN총회선언, 셋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의 보호에 관한 일반국제관습법 내용은 물론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 아동권리협약, 마지막으로, 난민 및 무국적자의 보호에 관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문화가족 또는 이주자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원 기준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국제법상 기준이 다문화가족 지원기준의 첫 번째 잣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나. 국적취득 기준

이민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영주권이나 국적 취득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국적을 부여하는 기준에 따라서 국가의 이민정책을 유형화할 수 있는데 첫째, 출생지에 따라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는 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가 있다. 둘째, 거주지에 따라 국적취득이 가능한 나라는 스웨덴, 프랑스, 네델란드, 이탈리아, 독일, 벨기에가 해당되며, 셋째, 혈통주의 원칙에 따라 국적이 부여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도 오스트리아,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대만, 말레이시아, 태국, 일본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적취득은 일차적으로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을 유지하거나 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할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의 경우나 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이 외국인 근로자와 재혼하는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중도입국자녀(15세 미만 만 입양형태로 가능) 등은 국적취득이 불가능하여 가족 재결합권이 제한되고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다문화가족 유형의 요구에 맞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출생지나 거주지에 따라 국적취득이 가능한 외국의 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정책 및 서비스 기준

가. 제도적 배제 vs 공존적 통합

1997년 국적법이 개정되어 양성평등주의를 채택하게 되었지만, 현 다문화가족지원법은 여성을 출산과 보육의 주체로 한정하고, 결혼을 통해 남성 사회에 편입하는 객체로 보는 부계주의가 들어있다. 다문화정책을 배제와 통합, 동화와 공존을 기준삼아, 우선 제도적 단계에서 배제와 통합 그리고 제도적 통합 이후에 비제도적 단계에서 동화적 통합과 공존적 통합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실질적인 배제는 비제도적 단계에서 동화적 통합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향후 다문화정책이 공존과 사회통합을 추구한다면, 실질적 배제의 형식 즉 성·문화·정체성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다문화주의 실현이 가능함을 의미한다(이용재, 2010). 우리가 다문화가족이라고 명명할 때의 ‘다문화’는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의미하는 바, 우리사회처럼 다문

화사회의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화주의 접근에서 벗어나 일진보할 수 있는 방법과 사회적 배제로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제에 대한 성찰과 예방책이 필요하다.

나. 제공자중심 서비스 vs 이용자중심 서비스

「2012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한국어교육이지만,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취업연계(3.56/5.0), 자녀생활및학습지원(3.23), 가정방문을통한교육지원(3.06)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정부에서 현재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을 다각도로 펼치고 이에 맞는 인력지원과 예산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정부와 민간의 다문화가족 지원책은 실상 이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다. 최근 한 연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입국 초 가족 형성기, 자녀양육 및 정착기, 역량강화기의 생애주기별로 분류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경험을 조사했을 때 한국어교육의 심화과정의 부재, 방문서비스의 기한 제한, 가족교육의 어려움 등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많은 제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주, 201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좀 더 이들이 요구하는 사업방향으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고안할 필요가 있다.

다. 다문화주의 통합 정책 지표

퀸즈 대학교(Queen's University)에서 1980년, 2000년,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21개 서구 국가들을 대상으로 7개의 정책분야를 기준으로 다문화주의 정책 지표(Multiculturalism Policy Index, MPI)를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다. 2010년의 결과를 살펴보면, 해외출생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들로는 스위스,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스웨덴, 독일, 미국 등이 보고되었다. 다문화주의 통합 정책을 MPI와 이민자 통합정책 지표(Migrant Integration Policy Index: MIPEX)를 통해서 비교한 결과, 스웨덴이 8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캐나다 72점, 미국 62점, 독일 57점, 프랑스 51점 순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가 다문화가족 지원기준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두 지표, 즉 다문화주의 이민자 통합정책 지

표의 평가기준이 적용 가능할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2절 각국 사례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국가는 다문화주의 통합 정책지표가 높은 국가들 중 연구진이 직접 방문한 프랑스 외에 호주, 캐나다, 스웨덴을 선정하였고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노르웨이를 포함하였다. 또한, 우리와 같이 결혼이민자 대상의 정책과 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을 살펴보았다. 각국의 이민자 대상의 지원 프로그램을 이주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프로그램의 영역은 크게 언어 및 노동시장진입을 위한 기술 습득과 같은 교육영역, 사회생활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포함하는 일상생활영역, 마지막으로 사회통합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국의 이민자 지원기준과 관련하여 지원 프로그램 수혜자격 및 이용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프랑스: 이민청⁴⁾

프랑스의 경우 이민자의 의미는 10년 체류증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체류증은 10년 단위로 연장된다. 이민자는 참정권만 없고 다른 부분은 자국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매년 20만 명 정도 입국하며, 이 중 10만 명이 체류증을 받기 위해 이민청(Office Francais L'Immigration et de L'Intégration: OFII)에 신청한다. 경시청에서 이민허가(10년 체류비자)가 난 사람에 대해서 이민청에서 이민체류자에 대한 계약서 작성 등 계약업무를 담당한다. 계약서 서명시 1) 프랑스의 중요한 가치에 대한 이해 2) 프랑스의 거주자로서의 의무와 권리 3) 프랑스어 수준 확인 및 프랑스어 지원(수준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40시간 의무로 프랑스어 교육받아야 계약가능) 4) 프랑스 역사, 문화, 관습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그 과정에서 이민자 정착지원 등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 및 연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민청의 주요 미션으로는, 1) 취업을 위해 체류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 2) 자국에서 생활할 수 없어 이주한 사람에 대한 지원, 3) 이민자의 거주정착에 대한 지

4) 2013년 9월 17일 연구진이 프랑스 이민청을 직접 방문하여 부서장인 Frédéric Viel 외 직원 5명과의 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임.

원, 4) 체류증이 없는 자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민자의 적응에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것이 프랑스어의 구사능력으로 40시간 기본적인 이수에도 불구하고 언어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역의 언어교육센터를 연결하여 180시간을 교육받도록 지원한다.

이민청에서 이민희망자의 직업력이나 자격여부, 학위 등을 확인하여 그에 맞게 취업하도록 연계, 지원한다. 또한, 이민자와의 계약 후 사회복지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안내와 소개를 해주며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연결해 준다. 이민청 방문자 중 전체 5% 내외가 사회복지사에게 연결된다. 그 이외의 다양한 서비스는 사회의 구성원으로 동일하게 받는 것이 기본이며 일반인과 구별짓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민희망자 대부분이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이 취약하여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이민청에서의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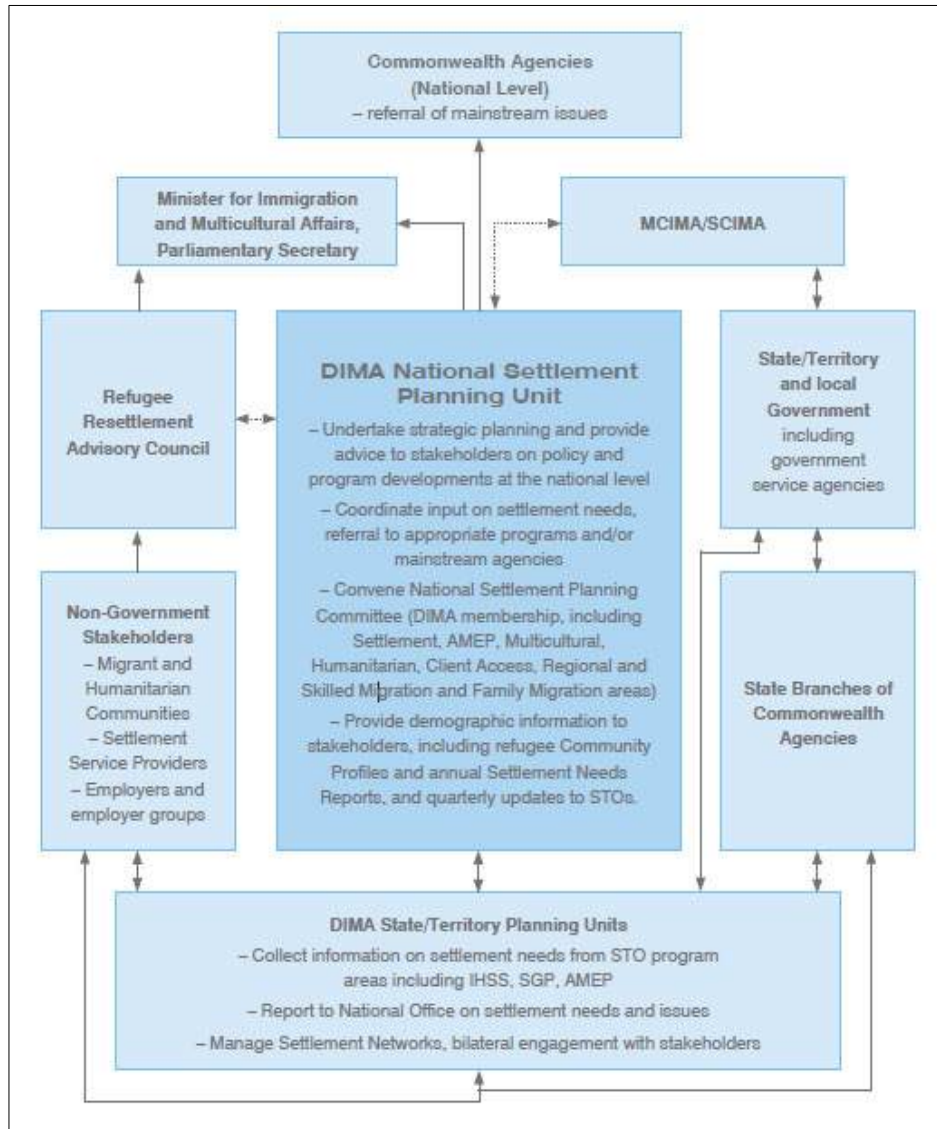
결혼이주여성만을 별도로 지원하지는 않는다. 프랑스의 불법이민자에 대한 정책은 추방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는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그 외 불법체류자가 자녀를 출생한 경우나 불법체류자가 직장에 다닐 경우는 추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한다. 불법 체류자 중 1년에 10만명 정도가 출생한 자녀로 인해 국적을 취득한다.

2. 호주: 초기정착 가족지원프로그램

이주민 정착 지원에 대한 기본 체계는⁵⁾ 아래 [그림 4-1] 과 같다. 난민이나 이주자의 서비스 욕구에 초점을 두고 적합한 서비스 기관으로의 의뢰와 지역사회 관련 서비스를 조정하는 호주 이민청(DIMA)의 이주민 정착계획부서가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5) 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delivering-assistance/government-programs/settlement-planning/pdf/sett_plan_framework.pdf p.7

[그림 4-1] 호주의 이주민 정착지원 체계



이민·국경보호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다음 <표 4-1>과 같다. 이 외에 제시되지 않은 이주민을 위한 복지 혜택들은 일반 호주시민들과 동등하게 적용된다. 또한 호주 정부는 기존의 호주 다문화 자문위원회를 대체하는 독립기구로서 호주 다문화위원회를 설립하였다.⁶⁾ 주 기능은, 1) 다문화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 자문역할 2) 접근성 및

형평성 관련 전략 수립에 있어서의 공식적인 역할 담당 3) 다문화정책 수립에 대한 연구 및 자문 역할 4) 문화적 다양성 촉진 및 Harmony Day 관련 활동 지원 5) ‘People of Australia Ambassadors’ Program을 실시한다.

<표 4-1> 호주 이주민 지원 특별 프로그램

시기	이주초기	중기	장기
교육 (언어, 기술)	- Adult Migrant English Program(AMEP) ⁷⁾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에서 주관, 적격성 심사 없음.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 18세 이하이나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경우(호주 입국 후 12개월 내에만 가능), 임시 비자를 가진 몇몇 경우도 가능, 최대 510시간		
일상 생활 (사회생활, 상담 및 기타)	- 정착지원 프로그램(SGP) ⁸⁾ 가족을 따라 이주(영어능력이 미흡한 자)하거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주, 숙련이주민의 피부양자(영어능력이 미흡한 자)를 대상으로 이주 후 5년 동안 제공 - 케이스워크, 서비스전달 지원, 청소년 정착서비스, 특정문화권의 지역사회 지원(담당 비영리기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를 지역사회 실정에 맞게 제공 가능하도록 함. 지역서비스 지원, 연계, 정부기관과의 중개 역할) - 통.번역 서비스(TIS) ⁹⁾ : 호주전역에 160개 언어 2400명의 통역사와 연계, 통.번역 서비스와 연계되어있는 22,000개 기관(주정부, 연방정부, 지역의회, 의사, 약사, 응급 서비스, 법률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의사소통 시 통역비 무료, 영어 사용이 어려운 모든 이민자들에게 지원 - 다문화 서비스 직원 / 다언어 전화 서비스 호주 전역에 70명 정도, 인간봉사부에 상주, 이민자와 이민자 지역사회가 정부와 의사소통하도록 돕고 있음. 무료 서비스.		
사회 통합	- 다양성과 사회통합 프로그램 ¹⁰⁾ : 1998년부터 지역사회 내 비영리집단들의 사회통합을 위한 계획실행을 지원 - 지역사회 차원의 다문화 예술과 축제 기금 ¹¹⁾		

6) <http://www.amc.gov.au/>

7) <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help-with-english/amep/learning-english/index.htm>

8) <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delivering-assistance/settlement-grants/what-sgp.htm>

9) <http://www.tisnational.gov.au/Non-English-speakers/Frequently-Asked-Questions-for-non-English-speakers>

10) <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delivering-assistance/government-programs/dscp/dscp-grants.htm>

11) <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delivering-assistance/bmcp/>

호주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민자 서비스별로 대상자와 지원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성인 이민자 영어프로그램(AMEP)

성인 이민자 영어프로그램(AMEP)는 이민부(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에서 주관하며, 적격성 심사가 없다. 18세 이상의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되, 18세 이하나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경우(호주 입국 후 12개월 내에만 가능), 임시 비자를 가진 몇몇 경우도 가능하며, 최대 510시간을 제공한다.

AMEP 이외에 의사소통 문제로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언어수리프로그래밍(LLNP)을 최대 800시간을 제공한다.

직장내 영어프로그램(WELL)은 고용주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피고용인 이민자를 교육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나. 통역서비스(TIS)

통역서비스(TIS)는 영어 사용이 어려운 모든 이민자들에게 호주전역에 160개 언어 2,400명의 통역사와 연계하여 제공된다. TIS와 연계되어있는 22,000개 기관(주정부, 연방정부, 지역의회, 의사, 약사, 응급 서비스, 법률 서비스,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의사소통 시 통역비 없이 무료로 지원된다. 이외에도 다문화 서비스 담당공무원(Multicultural Service Officers)이 호주 전역에 70명 정도 배치되어 정부와 이민자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다. 이주민을 위한 공적 부조 및 서비스

1) 자녀를 둔 가족

가)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자산조사에 근거하며, 수당 지급조건은 첫째, 20살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연금이나 청소년수당과 같은 부조를 받고 있지 않은 경우, 둘째,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최소 35%를 자신이 돌보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Part A는 아동 한 명당 지급되며, 16살 이하 또는 16~17살이며 12학년을 마친 경우, 혹은 16~19세이며 학업중인 아동 등이 해당된다. Part B는 한부모에게 주어지는 추가지원으로 16살 이하 혹은 18살이 되기 전 중등학교(secondary school)에 재학 중인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제공된다.

나) 아동보육수당

아동보육수당은 자산조사에 근거하지 않으며, 허가받은 기관 혹은 등록된 보육시설에 아동을 맡길 경우, 아동의 보육비를 본인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을 경우, 모든 면역을 받은 경우, 거주기간조건 등 모두 조건에 해당될 경우만 지원 받을 수 있다.

다) 직업훈련 시 아동보육수당

아동양육, 유가족수당, 청소년수당 중 하나를 받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취업참여 계획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직장을 구하거나, 직장생활, 학업, 직업훈련 등과 자녀 양육을 병행하는 경우 아동보육수당이 지급된다.

2) 장애를 가진 이주민이나 보호자 지원

장애 이주민 또는 보호자 지원으로 장애연금, 장애인보호자급여 및 장애인 보호자

수당이 제공된다.

장애연금은 자산조사에 근거하여 지원한다. 장애인 보호자 급여(Carer Payment)는 만성 장애 및 질환자를 집에서 돌보고 있는 경우 주어지는 소득지원프로그램으로 자산조사에 근거하여 지원된다. 그리고 장애인 보호자 수당(Carer Allowance)은 추가적인 주간보호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자를 위한 추가 프로그램으로 자산조사에 근거하여 지원된다.

3) 사회보장급여와 서비스

각종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 제공은 자산조사에 근거하여 지원되며 호주시민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제공된다.

4) 건강관련

건강관련서비스는 자산조사에 근거하여 지원되며, 호주시민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제공된다. 이주민은 입국 후 7~0일 내에 메디케어 사무소를 방문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해당의료센터에서 무료서비스가 가능하다.

5) 심각한 위기 상황

가) 위기 급여(Crisis Payment)

위기급여는 소득부조를 받고 있는 경우,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는 경우, 가정 폭력 등으로 위기에 처한 경우, 형을 마치고 나온 경우, 망명자 혹은 인도주의 비자로 입국한 경우 받을 수 있는 일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기존 소득의 1주일 치와 동일한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

나) 특수 급여(Special Benefit)

특수급여는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거나, 본인과실이 아니지만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소득을 벌어들이지 못하는 경우, 다른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우, 기타 사회보장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 지원된다.

3. 캐나다: 2부서 통합모형

캐나다 이민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CIC)은 이주민의 첫 3년간 지원정책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 이후부터는 문화유산부(Department of Heritage)와 기타 다른 정부기관에 이관된다. 첫 3년과 그 이후로 나누어지지만 두 기간 동안 모두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제 3의 기관들인데 이들 대부분은 지역사회 기반의 비영리, 비정부조직들이다. 이들은 연방정부로부터 조달 받는 자금과 기부금을 통해 운영된다.

이민자를 위한 저금리의 대출 프로그램(Immigration Loans Program)의 경우 대략 2003년 4월 기준으로 CIC에서 이주민 정착과 통합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3억 9천 6백만 달러였다. 역시 가장 많은 자원이 투입되는 영역은 언어영역이며, ISAP에는 오리엔테이션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의뢰, 고용지원 및 상담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Host Program은 이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안정적인 캐나다인과 이주민을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RAP는 즉각적인 서비스, 예를 들어 재정지원, 망명 사례, 인도주의적 사항에 대한 개입을 담당한다. 언어교육서비스 및 Host Program 등은 의 경우 특별한 적격성 심사를 거치지 않으나, RAP와 같은 재정지원 프로그램은 적격성 심사를 거쳐 제공된다. 캐나다 헌법과 정부, 지역사회, 개개인들이 기반으로 삼는 다문화정책의 기본 가치를 표방하고 있다(Mulholland, 2004).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4 영역의 이민자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가. 언어프로그램(LINC)

언어프로그램(LINC)은 18세 이상 성인 이민자를 위한 무료 언어지원 프로그램으로 온타리오 주의 경우, 대상자는 캐나다 영주권을 소유한 이주민, 혹은 영주권 신청 중인 자, 난민 등이 해당되며, 언어능력평가원에서 테스트 받고 수준별로 수업에 배정된다.

대략 2003년 4월 기준으로 볼 때 이민청에서 이주민 정착과 통합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3억 9천 6백만 달러이다.

나. 이민자 정착 및 적응 프로그램(ISAP)

이민자 정착 및 적응프로그램은 오리엔테이션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의뢰, 고용지원 및 상담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지원대상은 영주권자, 이민자 및 난민 보호법(Immigration and Refugee Protection Act)에 근거하여 보호받는 자, 영주권 신청 중에 있으며 초기승인을 받은 자, 보호자프로그램을 받고 있는 취업비자 소지자 등이 해당되며,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 이민청의 자체연구결과에 따르면 최장 9년 넘게 서비스를 받기도 하는데 평균적으로 10.8개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다. 일반시민과의 호스트 프로그램

일반시민과의 호스트 프로그램은 이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안정적인 캐나다인과 이주민을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위의 두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영주권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다. 적격성 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기간을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라. 재정착 지원프로그램(RAP)

재정착 지원프로그램(RAP)은 소득지원을 포함한 이주민 재정착을 돕는 맞춤형 서비스로 정부가 지원하는 망명자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민청에서 예산지원을 총

관리하고 있다. 일반 클라이언트의 경우 통역서비스의 경우 최대 13시간, 특별서비스 클라이언트의 경우는 18시간, 전체 합하여 최대 12개월을 지원한다.

마. 이민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이민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프로그램으로는 난민, 망명자를 위한 건강검진 비용, 여행비자, 캐나다 내 교통수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새 이민자에게도 임대주택, 전화 임대료, 취업을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자산조사에 근거하여 제공되고 있다.

이상 캐나다 모형은 양부서 통합모형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이민청이 이민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데 주력한다면 문화유산부는 캐나다 사회에 통합되도록 제도적 변화를 꾀하기 때문이다. 문화유산부는 매해마다 의회에 캐나다의 다문화화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부서와 기관을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캐나다 다문화주의 법(Canadian Multiculturalism Act)을 잘 시행하도록 돕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된 연방정부, 주정부, 준주정부 이외에도 지자체에서도 실질적인 통합정책과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준하는 관심을 받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예로, 토론토시만 하더라도 시의 모토를 “Diversity Our Strength”로 걸어들 만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이주민들의 정착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사업을 자체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기본 방향은, 1) 통합되고 응집력 있는 사회를 구성하는 것, 2) 캐나다 내 다양한 집단들이 통합되도록 돕는 기관들을 지원하는 것, 3) 다문화주의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다문화 관련 사업은 문화유산부에서, 이민/시민권과 관련된 사업은 이민부에서 담당하였으나¹²⁾ 2008년을 기점으로 다문화관련 사업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이민청(CIC)으로 넘어가게 되었다.¹³⁾ 그러나, 문화유산부에서는 여전히 사회통합을 포함한 문화 사업들을 주관하고 있고 2부서 전통은 이어지고 있다.

12) Schmidt, R. (2007). “Comparing Federal Government Immigrant Settlement Policie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n Review of Canadian Studies 37(1): 103-122.

13) 박동진·임경진 (2012) “다문화주의와 사회통합-캐나다와 호주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21(2): 123-151

다음의 영역별 지원프로그램¹⁴⁾은 연방정부의 지원(예산지원은 프로젝트나 이벤트의 두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음)으로 주정부, 준주정부, NGO들이 2011년~2012년 한 해 동안 진행한 프로그램이다(전액지원 혹은 일부지원-주정부, 준주정부, 영리집단의 후원). Projects stream(장기간, 몇 년에 걸친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는 30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Events stream(지역사회 이벤트 지원)에서는 202개의 이벤트를 지원하였다. 그 외 CIC의 Settlement Funding은 각 지역의 이민자 수에 비례해서 제공된다. 여기에서는 이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들을 소개하고 있으나, 이주민들은 캐나다의 기본적인 정책에 의해 의료서비스 및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기타 복지혜택을 일반 캐나다국민들과 동일하게 받고 있다. 이주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은 다음 <표 4-2>와 같다.

14) <http://www.cic.gc.ca/english/pdf/pub/multi-report2012.pdf>

<표 4-2> 캐나다 이주민 지원 특별 프로그램

	이주초기	중기	장기
교육 (언어, 기술)	-Federal Internship for Newcomers Program : 초기이주민을 위해 캐나다에서의 work experience를 제공, 20개의 연방정부기관이 참여하여 63개 일자리 제공		
	-Language Instruction for Newcomers to Canada(LINC) Program ¹⁵⁾ : 18세 이상 성인 이민자를 위한 무료 영어 혹은 불어 교육제공 (British Columbia, Manitoba, Quebec은 각 준주정부에서 관할) -English Language Services for Adults(ELSA) program ¹⁶⁾ : 17세 이상 이주민 무료 영어 교육, 지역사회 내 NGO에서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운영, 몇몇 기관에서는 자녀돌봄 서비스를 함께 제공		
일상 생활 (사회생활, 상담 및 기타)	-Public Service entorship Pilot for Newcomers : 연방정부직원이 지역사회 내 초기이주민과 멘토/멘티가 되어 연방정부 사업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고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도록 지원 -연방기관과의 연계 1) Parks Canada : 연간 캐나다 내 국립공원 및 유적지 등에 대한 무료입장권 제공 2) Financial Consumer Agency of Canada : 지역사회 교육가들 대상으로 금융관련용어들에 대한 설명 제공, 이들이 초기이민자들 및 기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시 교육하는 구조 3) Canada Morgage and Housing Corporation : Affordable Housing Project 등 -Immigration Loans Program : 새 이주자에게 주택 임대, 전화 보증금 지원, 직업자활을 목적으로 제공 (자산조사가 기본임)		
	-Immigrant Settlement and Adaptation Program (ISAP) : 오리엔테이션 서비스, 통번역, 서비스 의뢰, 고용지원 및 상담 서비스 등이 포함 -the Host Program : 이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안정적인 캐나다인과 이주민을 매칭해 주는 프로그램		
사회 통합	-청소년 포럼, 그 해에 선정된 14-17세 사이 청소년들이 26주에 걸쳐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 Ottawa를 방문하여 캐나다에 대해 배우고 유명인사들을 만나보는 기회를 제공, 29년간 진행해왔음 -the Multicultural Youth Community Connections project, 24개월 간 지역사회 내 다문화 청소년 리더들을 양성, 문화적 역량을 기르고, 다문화사회에서의 리더십을 양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 위기청소년들, 이주청소년들 중 120명이 참여 -The Federal-Provincial-Territorial Network of Officials Responsible for Multiculturalism Issues, 연방-주-준주정부 관계자들의 네트워크 -Community Historical Recognition Program: 과거 인종차별에 대한 공식적 사과/보상, 관련교육프로그램 진행 -Multicultural Day, Black History Month, Asian Heritage Month 지정을 통해 이민자들의 기여에 대한 사회의 인식, 공감대 고양 -A Canada for all: Canada's action plan against racism -다문화주의법 직원교육 의무화 -Annual Report of the Operation of the Canadian Multiculturalism Act, 매해 연구 결과 발표 -Settlement Outcomes Surveys, 주정부-준주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연구진행 -Inter-Action Projects and Events: 지방정부, 주정부, 사회기관, 비영리기관의 통합을 위한 프로젝트 재정 지원		

이러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들은 대부분 비영리, 비정부조직들로 이들 조직들은 다시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살펴 볼 수 있다¹⁵⁾. 첫째는, 오타와 지역 사회 이주민 서비스 조직과 같은 이민자 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둘째로, 다문화나 다민족, 다인종, 다종교, 다언어 소수자 조직으로 연방정부, 주정부, 준주정부 등 모든 정부와 사적 부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이 두 가지 유형은 특정 문화권 유지를 위한 사업과 좀 더 포괄적으로 지역사회차원에서 만나게 되는 특정 이슈를 다루는 사업(캐나다 민족문화위원회)으로 분류된다. 셋째, 캐나다 시민연합 같이 사회이슈 기반 조직들은 비영리조직이면서 다문화 조직과는 다르게 증오범죄, 인종차별, 주택, 교육, 사회정의와 같은 하나 이상의 문제들을 다루는 조직이다. 넷째, 캐나다 모금기관 등의 보편적인 조직이 이에 속하며, 마지막으로 민간조직은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할 시 정부보다도 사적 영역의 손실이 더 크게 되므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영리조직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스웨덴

스웨덴 이민자 지원정책의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찬반이 분명히 존재한다. 앞서 언급한 국제지표들에 근거해 볼 때 스웨덴은 기타 유럽 국가들과 미주국가들 및 아시아 국가들에 비하여 월등히 개방적인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주류사회 구성원들과 이민자들 간의 실제 갈등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미디어 등에서 적지 않게 다루어지고 있으며(Daley, 2011; 박병희, 2013), 이는 스웨덴이 최근 다문화사회 혹은 통합정책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프랑스, 영국과 다르지 않은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스웨덴은 185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의 송출이 유입에 비해 월등히 높은 국가였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점차 이주민의 비율이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그 원인에는 시기에 따른 특성들이 존재하는데 먼저

15) http://www.settlement.org/sys/faqs_detail.asp?faq_id=4001178

16) <http://www.elsanet.org/site/what-is-elsa>

17) Mulholland, M. L., & J. Biles (2004) "Newcomer integration policies in Canad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Report

전후 내수산업이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그에 필요한 노동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을 겪었다. 이 시기부터 남부유럽으로부터 많은 개인 이민자들이 노동이민의 형태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이후 이주민의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입국 전 비자 및 입국허가를 의무시하는 이민규정이 만들어졌다. 이후 80년대 이라크 전쟁, 아프리카 내전으로 인한 정치적 망명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도 하였다. 1995년 EU에 가입하면서 정치적 망명자들과 전쟁 난민들을 대거 받아들이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민의 역사는 미국이나 호주에 비해 월등히 짧으나 이민자의 비율은 스웨덴인구의 4분의 1이 이민자이거나 이민자인 부모를 두고 있을 만큼 대표적인 다문화사회가 되었다(Integration report, 2009).

이들이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하는 스웨덴의 이민정책 혹은 사회통합정책을 살펴보면,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사회의 통합에 있어서 스웨덴이 매년 언급되는 이유는 사회민주주의에 근거한 강한 국가개입모델이 적용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보수당이 여당으로서 집권하게 되고 2013년 현재에도 보수당이 여당이다. 총 7개의 정당이 존재하는데 각 정당에 따라 이민정책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인다. 현 집권정당인 보수당의 이민정책은 이민자들과 망명자들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으며 이민자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스웨덴어를 숙히 익혀 자립할 것을 강령으로 채택하고 있다(백석인, 2008). 여당인 보수당의 집권 하에 2008년 8월 정부가 제시한 사회통합전략은 다음과 같다(Ministry of Integration and Gender Equality, 2009).

- 새 이주자에 대한 조속한 대처
- 취업에 주력, 산업에 기여
- 학교 내 평등과 학업능력 향상
- 좀 더 나은 언어능력과 좀 더 많은 평생교육의 기회
- 효과적인 반 차별 측정방법 고안
- 사회적 배제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 지역의 개발
- 다양성 증가에 따라 사회전반의 공통의 기본 가치 창출

스웨덴 이민청위원회(Swedish Migration Board, SMB)의 자료에 따르면, 이민 관련 기관에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의회, 정부, 이민법원, 이민대법원, 이

민청위원회가 있다. 비자, 시민권부여와 관련된 업무는 이민청에서 이루어지지만, 유입된 이민자들에 대한 지원은 실질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구조이다. 정착에 필요한 의료, 주거, 언어교육, 직업교육 등과 같은 미시적 정책은 모두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에서 시행하며 이민청과 협정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정착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는다. 특히 1996년에 공표된 통합정책은 모든 분야에서 다양성을 최대화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그 외에도 2009년부터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직장 내에서, 혹은 교육, 사회서비스, 사회보험 등의 혜택을 받는데 있어서 외국인들을 차별(성, 성적 정체성, 인종적 배경, 종교, 신체적 장애, 성적 취향, 나이에 근거한)하지 못하도록 옴부즈맨을 두고 있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영주권을 소유한 이주민에게 일반 국민에게 제공되는 개정된 연금(Pay as you go, PAYG), 고용수당, 아동수당, 공적 부조 등의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복지체계 외의 개별적인 욕구를 가진 이주민들을 위해서 추가로 제공되는 복지서비스는 다음 <표 4-3>과 같다.¹⁸⁾

18) <http://www.government.se/> 및 백석인(2008) “스웨덴의 이민자 복지와 사회통합 정책에 관한 연구 및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스칸디나비아 연구 9: 35-68.

<표 4-3> 스웨덴의 이주자 지원 특별 서비스 기준

목적	서비스 내용
교육 (언어 , 기술)	-Swedish For Immigrants(SFI) 스웨덴어 지원 :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음. 16세 이상이라면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평생교육원 및 기타 교육 기관 등에서 525시간의 언어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음. -언어지원과 함께 취업지원 : 최고 3년간 임금지원 보장 -부모의 모국어 교육 지원 :이민자의 자녀가 부모의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음.
일상 생활 (사회 생활, 상담 및 기타)	-통역지원 : 법조항에 명시하고 있는데, 행정법, 보건·의료법, 재판과 관련한 법에서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 기준 5,000-6,000명 지원, 800명 정도가 자격증 보유 -양육비지원 : 부모가 이혼할 경우 자녀가 만18세가 될 때까지 자녀를 돌보지 않는 부모에게 양육비에 대한 책임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회보험청에서 금액 지원, 차후 청구 -법률지원 :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사무소에 변호사가 1주일에 1회씩 상주, 무료상담 제공
사회 통합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민자총연맹(Land's organization for immigrants) 중앙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을 매년 지원받는데, 이 지원금은 자신들의 문화, 언어유지와 이민자들의 사회참여를 돕는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는데 쓰임. -옴부즈맨 서비스 : 기초자치단체에 옴부즈맨을 두어 이민자들이 차별받는 경우, 대변해 주는 기능

스웨덴어 지원은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16세 이상이라면 기초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평생교육원 및 기타 교육기관 등에서 525시간의 언어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민자들 자녀들이 부모의 모국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 이민자 총연맹은 중앙정부로부터 일정금액을 매년 지원받는데, 이 지원금은 자신들의 문화, 언어유지와 이민자들의 사회참여를 돕는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는데 쓰인다. 통역지원도 법조항에 명시하고 있는데, 행정법, 보건·의료법, 재판과 관련한 법에서 통역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백석인, 2008;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2013).

5. 노르웨이

가. 연방정부 이민정책 기본방향

1990년까지는 공식적으로 다문화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북유럽 국가들이 그러하듯 실질적인 정책들은 모국어교육, 이슬람권 여성과 소녀들을 위한 수영시간 허용, 건강관련 상담서비스 등 다문화주의를 지향하는 듯 보인다.

노르웨이와 네델란드에서는 걸프전쟁 이래 이슬람민족들에 대한 반감이 형성되었고 2001년 미국 내 9.11 테러 이후 반-무슬림 감정이 고조되었다. 노르웨이 정치인들은 사회통합이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많은 수의 이주민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복지지표에 근거해 볼 때 비서구권 출신 이주민들은 매우 낮은 점수로 이주민들이 주변화 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FRP(Fremskrittspartiet, 진보당-극우)는 1980년대부터 이민을 아젠다에 올려놓고 망명자들의 입국을 반대하였고, 정당 이외에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학계나 활동가들의 우려도 있어 왔다. 1990년대 들어서 진보당과 페미니스트, 사회민주당들이 이주민 사회 내 젠더 및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이주민 사회 내 강제 결혼, 여성성기절제(FGM), 기타 종교적 이유로 희생당하는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반대의견이 모아지고 있고,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 사회전반에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배어있기 때문에 더욱 반감을 살 수 밖에 없다(Akkerman and Hagelund, 2007).

진보당은 위의 이슈가 다문화주의의 폐해라 보고 이들이 제 2야당으로 자리매김한 뒤 공식적으로 사회통합을 위해서 보다 엄격한 unitarianism을 추구하고 있다. 모국어 교육을 반대, 공공 기관 정보 제공 및 학교에서 노르웨이어 사용할 것, 서양의 가치 특히 기독교를 강화하는 등 다시 동화주의로 돌아가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즉, 진보당의 논리는 이주민 여성들이 겪는 문제들을 지적함으로써 다문화주의적 관점에 대한 회의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2010년 국가 간 MIPEX 비교 지수¹⁹⁾를 통해 볼 때 노르웨이에서 2010년부터 시행된 새이민법(The New Immigration Law)은 기존의 이민정책보다 엄격하고 제한적

19) <http://www.mipex.eu/norway>

인 성격을 띠며, 이민자의 수를 제한하는 반면 이민자의 질을 고려하겠다는 목적을 나타낸다. 가족들의 재결합을 위해서는 먼저 입국한 가족구성원이 4년 이상 노르웨이에서 정착해 살면서 최저생계가 가능해야 하며, 결혼을 위한 입국 시에도 2년 간 일하거나 공부해야 하는 조건이다. 노르웨이 시민권을 부여받은 후에는 동등한 복지혜택을 받는다.

나. 이민자 사회적응 프로그램

다음 <표 4-4>에서 보듯이 노르웨이 언어 및 사회교육과 초기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지원 외에도 더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프로그램이 잘 나타나 있다. 이주 초기 5년간 일정시간의 노르웨이어 교육과 노르웨이 사회 교육을 제공하며, 망명자나 가정 폭력으로 해체된 가족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제공된다. 2013년부터는 이주 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언어 및 취업기술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표 4-4> 노르웨이 이민자 사회적응 프로그램1)

목적	이주초기	중기	장기
교육 (언어, 기술)	-노르웨이어 및 사회 교육 : 망명자 및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 가족재결합을 위해 입국한 이민자 대상 5년간 제공. 노르웨이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한 이민 후 초기 5년간 충분히 노르웨�어를 배워야 한다는 전제. 16세부터 55세까지 해당됨. : 이민자가 정착한 자치도시에서 5년간 550시간의 언어교육과 50시간의 사회 교육, 필요시 2,400시간까지 무상교육 제공(정부로부터 보조금). 외국인 근로자는 300시간 가능함.		
	-초기지원프로그램(Introduction programme) : 망명자 신분, 재정착하는 망명자, 인도주의적 입국, 이들의 가족, 가족폭력으로 인해 가족이 와해된 자 대상으로 직장 및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재정적 독립을 이룰 수 있도록 노르웨�어와 기타 취업을 위한 교육 및 기술훈련 제공. 프로그램 참여의 경우 introduction benefit 수급자격 부여, national insurance 평균의 2배 정도 지원가능, 25세 이하는 그의 2/3 지원.		
	-Job Opportunity programme : 2013년 여름부터 정부에서 시행, 현재 노동시장에 속해 있지 않은 18세에서 55세 이주민을 대상, 기본 기술이 필요하며 다른 서비스들로부터 커버되지 않는 자, 특히 가정 내 머물면서 보충연금을 받지 않는 자를 대상으로 함. 대상자가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그 속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노르웨�어 교육과 필요한 기술 훈련 제공 -New Chance(Ny sjanse) programme : 파일럿 프로젝트로 노르웨�에 입국한 지 몇 해 되도록 취업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민자들을 대상. Introduction programme과 같은 맥락, 욕구과약/개개인별 계획 작성, 연락 가능한 연결망 형성, 프로그램 참여 후 자격자 혜택(qualification benefit)받을 수 있음.		

6. 미국

이민과 관련한 미국의 입장은 최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2013년 이민개혁(Immigration Reform)과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200만 명의 불법이민자들을 강제로 반출시키지는 않겠지만 이들이 미국사회에 통합되어 경제성장과 중산층 살리기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법입국에 대한 타당한 벌금을 내고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 영어를 배우고 시민으로서 대우 받고 함께 살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Whitehouse.org, 2013).

어떠한 시기에 입국이 이루어졌든 상관없이 현 시점에서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서비스의 종류와 그 규모는 주마다 다르며, 카운티별로도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연방/주)차원에서 직접 제공하는 5가지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며, 그 외에 이민자들의 적응에 필요한 서비스들은 지역사회 기관에서 정부와 파트너십을 갖고 제공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인, 합법적인 영주권 소유자, 난민, 최소한 1년간 임시 입국이 허가된 자, 추방이 보류된 자, 1980년 4월 1일 이전 조건 입국한 자, 피학대 배우자와 그의 자녀, 피학대 자녀와 그의 부모, 특정 카테고리에 해당되는 피학대 부모의 자녀, 쿠바인과 아이티인, 인신매매 피해자 등이다. 특별히 학대나 폭력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눈에 띈다.

이중에서도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SSBG(Social Services Block Grant Program), Medicaid는 각 주에서 그 적격성을 개별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연방정부차원에서는 권한이 없다. 예산이 각 주로 할당되고 주에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난민/망명자, 원주민, 쿠바, 아이티인, 인신매매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입국 후 처음 5년간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캘리포니아, 하와이, 미네소타, 뉴욕, 워싱턴 주에서는 적격성 기준에 맞지 않는 이주민들을 위해 전적으로 주정부차원의 현금부조를 지원한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주민의 정착과 관련된 공식적 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다.²⁰⁾ 이주 관련 부서는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이고 종교단체나 지역사회

20) Schmidt, R. (2007).. "Comparing Federal Government Immigrant Settlement Policies in Canada and the United States" American Review of Canadian Studies 37(1): 103-122.

기반 비영리기관들이 이민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이주민이 많은 주의 경우 주정부에서 비용을 담당한다. 따라서 언어교육 및 서비스지원에 있어서 정부 차원의 특정한 자격기준이나 지원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7. 일본과 대만

일본은 2005년 기준 ‘다문화 공생’을 국가 주요과제로 설정하였고, 다문화공생추진 플랜을 발표함으로써 1) 외국인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완비, 2) 인권보장, 3) 지역사회 내 주민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감안, 지역별로 차별화된 체제를 정비 중이다. 도도부현은 광역적 과제에 대응, 지침/계획의 책정 및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추진하고, 시구정촌은 지역사회 특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주민 직접지원(상담업무, 지역주민 교류 활성화, 연결망 도모)에 주력하도록 하며, 지역국제화협회는 지자체와 NPO 간 다리역할을 담당한다. ‘다문화공생 프로그램’의 기본 틀은 다음 <표 4-5>와 같다.²¹⁾

<표 4-5> 일본의 다문화공생 프로그램

목적	서비스 내용
교육 (언어, 기술)	-일본어 및 일본사회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일상 생활 (사회생활, 상담 및 기타)	-행정, 생활서비스를 다양한 언어로 제공 -외국인 주민의 생활상담을 위한 창구 설치, 상담원 배치 -거주관련: 정보제공, 주택구입 후 오리엔테이션 실시 -학교입학 시 취학안내 및 취학지원제도 다양한 언어로 정보제공 -병원/약국에 관한 외국어 정보 제공 -광역의료 통역자 파견 시스템 구축 -사회보험 가입의 촉진 -재해 시 외국인에게 다언어로 정보전달
사회 통합	-지역사회에 대한 의식개발 -외국인 주민자립과 사회참여 -네트워크, 자조조직 육성 -외국인주민의 의견을 지역정책에 반영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외국인 주민의 표창제도

21) 신재주. (2010). “일본, 독일, 호주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 다문화정책의 특성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17(3): 5-38

반면, 대만은 이민자 가정의 유지를 도와 사회 안정을 촉진하고, 국내 인력자원 양성, 국가이미지 및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 배우자를 위한 지도업무에 있어서 민간조직과 협력하여 서비스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육부, 내정부, 외교부, 노동자위원회, 신문국, 교통부, 문화건설위원회, 위생성 등이 다문화 관련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다음 <표 4-6>과 같다.

<표 4-6> 대만 이주자 지원 프로그램

목적	서비스 내용
교육 (언어,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국인 배우자 입국 전 대만에 관한 정보 제공 -외국인 및 대륙배우자에 대한 성인 기본 교육과정 개설(대만어교육 및 다양한 언어로 교육과정 지원) -자녀교육 프로그램 -언어 및 사회문화에 대한 교육 -방과 후 학습 -국제결혼, 다문화가정,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외국인, 대륙배우자의 정규학력 취득지원 -취업서비스 제공 -구직자 등록, 취업상담, 취업소개 -취업 및 창업능력 향상(직업훈련 기회 제공)
일상 생활 (사회 생활, 상담 및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국 전 건강검진 -다문화가정 소외된 자녀 찾아가는 서비스/영유아건강검진제도/신체발육검사 -외국인 배우자의 생활적응지도(가족구성원 공동참여) -민사 및 형사소송법 상담서비스 -외국인 배우자의 자조집단(단체) 포함한 민간자원을 통합, 네트워크 구축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전국 통역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회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 교육과정 및 대학 교양과정에 다문화 관련 내용 삽입 -결혼광고 관련 관리 강화 -다문화관련행사 -라디오, TV 방송 다국어 확대 -의료인력에 대한 다문화교육 및 연구활동

제3절 시사점

이상 국내 다문화가족 지원기준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외국의 경우 다문화정책 지원대상의 범위가 이민자 외에도 난민이나 원주민, 불법체류자나 폭력피해자, 중도입국자녀 가족, 해체가족 등을 포함함으로써 결혼이민자와 귀화자에 국한하는 우리나라 보다는 지원 대상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도 결혼이주여성 외에도 결혼이주남성에 대한 지원,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체류자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불법체류자가 자녀를 출생한 경우나 불법체류자가 직장에 다닐 경우는 추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정하며, 불법 체류자 중 출생한 자녀로 인해 국적을 취득한다.

둘째, 외국의 경우 이민자 지원서비스나 프로그램의 이용 가능한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특히 언어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체류자 계약을 체결하거나 국적취득을 위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시간이나 지원기간 등을 정하고 있고, 모든 이민자에게 일정기간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에는 서비스를 더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는 한국어 프로그램의 경우 이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간에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어 습득을 위해 필요한 수준별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서비스 만족도도 떨어지는 현실이다. 단계적으로 한국어 수준별 교육프로그램을 체계화하는 것이 요청되며, 현재 수준별 교육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어렵다면, 다문화가족의 초기적응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기간을 정함으로써 서비스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다.

셋째, 한국어교육 못지않게 이민자가 의료기관이나 법률서비스 등을 필요로 하거나 응급상황에서 통역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통역비를 지원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호주는 전국에 160개 언어 2,400여명의 통역사를 배치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할 때 정부가 관련기관에 통역비를 지원함으로써 통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한국어교육이지만, 이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취업연

계(3.56/5.0),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3.23),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지원(3.06) 순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3). 프랑스처럼 이민희망자의 직업력이나 자격여부, 학위 등을 확인하여 그에 맞게 취업하도록 관련기관에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자원에 연계하는 서비스가 잘 되어 있다. 호주의 경우도 취업이 어려운 이주자에 대한 지원, 특히 고용주에게 교육비를 지원하여 직장 내 영어프로그램(WELL)을 운영하는 방안은 주목할 만하다.

다섯째, 호주와 같이 위기에 처한 가족이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 연구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를 입국 초 가족 형성기, 자녀양육 및 정착기, 역량강화기의 생애주기별로 분류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경험을 조사했을 때 한국어교육의 심화과정의 부재, 방문서비스의 기한 제한, 가족교육의 어려움 등 많은 제한점이 발견되었다(박현주, 2013)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국내 다문화가족의 사정에 맞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우리나라처럼 이민자 지원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간에 중복지원이나 역할분담 상의 갈등은 눈에 띄이지 않는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이주 후 3년 전후로 이민청과 문화유산부의 두 부서가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이주기간에 따라 첫 입국 및 정착기와 두 번째 사회적응기를 분류하여 각 부처의 역할을 분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 하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민국 또는 이민청을 두어 이민자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를 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민청 신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선은 현행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처 간에 역할분담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장기적으로는 이민청 신설을 통한 통합이 바람직해 보인다.

각국의 이민자 정책이 각기 다르지만, 프랑스나 캐나다 등 많은 국가에서 이민 업무를 담당하는 이민청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10년 체류허가를 얻은 이민자에 대해 이민청에서 프랑스 거주자로서의 서약과 교육 등의 절차가 갖추어져 있고 이민자의 욕구에 맞는 개별화된 평가와 서비스 계획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호주의 경우도 이민청의 이주민정착 계획부가 핵심 기능을 담당하여 이민자의 초기적응을 위해 적합한 서비스 기관으로의 의뢰와 연계가 잘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부에서 사회통합이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처럼 언어수준 평가와 정보제공과 맞춤형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제한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민자 관리와 사회적응 지원을 체계화하고 여러 부서의 다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의 설립

이 필요해 보인다.

일곱째,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족 지원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국내 다문화정책의 기본 철학과 원칙 등 가치와 기본전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현행 동화주의 원칙에서 어떻게 단계적으로 다문화주의 원칙으로 진보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사회적 배제를 줄이고 공존의 통합 모형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때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설정에 주요한 지표가 되리라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국제법상으로 이민자 인권보호 등 제시되어 있는 국제 기준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서구 국가들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다문화주의 정책 지표에 대해 검토한다면 장기적으로 국내 다문화가족 지원기준을 설정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제5장 다문화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제1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대상 FGI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 담당 공무원 인터뷰

제3절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향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제4절 시사점

5

다문화 전문가 포커스 그룹 < 인터뷰(FGI) <

제1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대상 FGI

1. 일반적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을 위해 1차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FGI를 진행하였다. 실무자는 다문화지원 사업 초반부터 이 사업을 진행한 실무경력 5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에서 각 1인을 섭외하였고 총 3인이 FGI에 참여하였다.

<표 5-1>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대상 FGI: 일반적 사항

구분	성별	기관소재지	비고
사례1	남	서울지역	- 다문화지원센터 경력 5년 이상의 실무자
사례2	여	광역시	
사례3	여	농촌지역	

2. 실무자 대상 FGI 내용

FGI는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실무자 대상 FGI의 세부 내용은 <표 5-2>와 같다. 인터뷰는 녹음하여 이후 녹취록을 작성하였고, 녹취록을 읽으면서 인터뷰 내용을 범주 별로 정리하였다. FGI를 통해 도출 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5-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 대상 FGI 내용

영역	내용
센터유형,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지원사업 현황	① 센터의 형태 ② 지역 내 다문화가족과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의 특성의 차이 ③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의 현황 및 지역 특성사업 운영여부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①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족의 만족도 및 이용상 장애요인 ②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효과성 ③ 다문화사업의 운영상 어려움 ④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개선 점
다문화가족지원의 사각지대 특성 및 필요한 정책	① 다문화가족지원의 사각지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② 최근 다문화가족은 이혼 및 사별 등으로 가족해체와 재혼이 발생하면서 발생하는 중도입국 청소년 등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한 대처 및 향후 필요한 지원
다문화가족정책 전달체계 상의 문제점 및 협력방안	① 중앙정부에서 수행하는 다문화정책의 효율성 및 전달체계 문제점 ② 다문화가족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앙과 지자체, 공공과 민간의 역할 ③ 중앙과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가센터, 그리고 민간기관 간에 협력정도와 장애요인
내국인과의 형평성, 지원기준 방안	① 다문화가족정책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가족정책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② 다문화가족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질 경우 지원수준 및 지원방안

가. 다문화가정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의 특성

(1) 지역의 전체 다문화가족대비 이용률이 낮은 이유

- 언어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없는 경우 또는 취업으로 인해 평일 서비스 이용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음. 공휴일에 진행되는 서비스의 욕구가 있지만 현재 구조상으로는 지원의 어려움 있음.

“사실 주말요청이 많습니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말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각 센터들이 힘든 부분이 뭐냐면, 주말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쉬는 날이 없습니다. 대체 근무 하라고 해도 안 되구요. 추가근무수당도 줄 수 없구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본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 문을 열수 없는 경우도.. 저희가 열고 싶어도 문을 다 잠급니다. 건물전체가 다.. 저희 마음대로 문을 열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구요..”(사례 1)

- 센터를 이용하지 않아도 생활의 어려움이 없는 경우도 해당됨.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충분히 그 사람들 일을 하고 있구요. 충분히 한국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센터를 굳이 이용 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 1)

“서울사람이다 보니까... 미국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개인 과외나 이런 것들 진행하시는 분들 있구요..”(사례 1)

“저희 지역의 특성상 동포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 센터를 이용할 이유가 없으시죠”(사례 2)

- 가족원이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을 원치 않고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해당됨.

“시골일수록 농촌일수록 다문화에 관련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폐쇄적이고, 좀 단혀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결혼이주 여성들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가족들 때문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략) 시골 같은 경우에는 말을 배우고 센터 같은데 나가서 무슨 교육을 받으며 머리에 먹물부터 든다고 생각 하는 거예요. (중략)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등록도 못 할 뿐더러 당연히 센터 이용이 어렵다는 생각이 들구요.”(사례 3)

“폐쇄적인 가족들도 있으세요. 이 분은 입국하신지 5년이 되셨는데도 방문서비스도 아니면 센터 내방교육도.. 받지 않으신 채로 어느 순간 동사무소에 있는 행복상담원을 통해서 의뢰가 됐는데, 입국시일이 상당히 오래 됐거죠. 그러면 센터를 몰랐겠냐.. 모르는 않았던 분들도 있으시고 정말 모르는 분들도 있으세요. 남편이 모든 정보를 차단하거나 시부모들이 모든 정보를 차단한 분들도 있고”(사례 2)

- 농촌의 경우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함.

“저희가 도농 지역이라서 아까 분포도를 말씀 드렸습니다 만은 센터는 중앙에 하나가 있고, 지역에, 그 사람들이 소수가 넓게 분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편이 편한 서울처럼.. 접근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거고 시골버스나 택시나 그런 것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결혼이주 여성들이 만약에 살고 계시다 그러면, 그분들을 접수 이런 건 거의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를 이용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뭐 있어야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센터에서 그렇게 오지 지역에 있는 곳까지... 어디 섬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까지 차량을 운행을 한다거나, 그분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다거나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사례 3)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이 시간적으로 맞지 않아 지역사회 다른 NGO단체들을 이용하거나 집에서 거리상 가까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경우가 있음.

“웬만한 분들은 참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 저희 센터보다 가까운 센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영등포에 사시지만 동작구 센터가 더 가까우실 수 있구요. 양천구 센터가 더 가까울 수 있고, 저희는 충분히 그 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구요”(사례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NGO들이 있구요. 많이 있기 때문에 관 자체에서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고 그리고 그 쪽에 주말에 지원도 하고 감사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사례 2)

- 직원들의 업무 과중으로 주말이나 야간근무가 용이하지 않음.

“직원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이 거의 나가떨어지고 있거든요. 거의 다 퇴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과연 저희가 대상자들 모집을 못해서 일이 없어서 나가떨어질까요? 아니요. 업무 과중이거든요.”(사례 1)

-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경우가 있어 이용을 할 수 없음.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의 특성은 근로를 하러 가십니다.(중략) 그래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센터를 이용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구요.”(사례 2)

“그 사람들의 욕구는 사실 경제적, 동남아 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결혼이주여성으로 본다면 매우 열악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센터 같은 경우도 취업전선에서 생활전선에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

은데, 근데 그게 본인들 생각은 돈을 벌어야 되지만, 제일 급한 일이 돈을 벌어야 되지만, 센터나 한국 통합 정책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한국어도 배워야 되고 한국 사람으로서 정착해야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은데 그게 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현실은 당장 급해서 돈 벌어야 되는 상황이고 센터나 한국정책은 그 사람들을 안정화 시키려고 하고,"(사례 3)

- 초기 이용을 하지 않았으나 한국생활에 있어 어려움이 생긴 경우 이용하게 됨(예: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 및 교육관련 문제, 부부간의 문제 등).

"(이용하지 않던)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유는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생활 적응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말 통하고 돈 벌고, 별 문제 없어요. 부부간에 뭐 싸우거나 이런 거.. 다 싸운다고 생각하죠. 근데 자녀가 학교에서 뺄뚱 어지기 시작하고 학교 안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 센터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사례 1)

"그 전에는 동포 분들은 돈이 있으면 적응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오지만, 아이가 어린이집 부분,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 이자나요. 그거에 대해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시고,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뭐 그럴 때 오십니다. 그리고 부부갈등이 심각해 지셔도 오시구요. 그리고 중간에 나갔다가도 들어오시고, 센터는 친절처럼 있으면 이 분들이 편하게 필요할 때 오시는 거죠."(사례 2)

(2) 이용 촉진을 위한 홍보의 한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예산구조 상 홍보비 책정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홍보는 구전효과에 의존함.

"저희도 알음알음입니다.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도 중국동포들인데, 이분들은 그 차이나타운 형태로 되어 있고, 거의 다 직장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 센터 이용자 중에 중국동포 이용자 분들은 낮습니다."(사례 1)

"센터는 정말 많은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세히

설명할 만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예산 부분도 그렇구요. 센터 안에 홍보비 예산 저희 연에 100도 안 잡혀 있어요.”(사례 2)

“센터에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리플렛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일년에 2-3번씩 각 다문화 가족들한테 우편 작업을 하고 합니다 만은, 그 초기 입국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걸 받아 볼 수도 없고...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고 센터 이용하시는 분들 따라서 같이 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구요. 또 출입. 국 관리 사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연결 되서 센터에 오는 분들은 극히 들물구요.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오기도 하지만은 가장 높은 비율은 아무래도 사람들 입을 통해서 오는... 또 그러서야 지 통역도 되구요. 초기 입국자들은..”(사례3)

- 입국자에 대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 및 연계를 위한 초기 홍보에 있어 센터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는 상황임.

“출입국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 2009년도 센터 홍보물들을 통번역사 선생님들이 센터에 포진이 되면서 센터에 출입국으로 아예 출장을 나가셨어요.. 센터 홍보를 그 때부터 주기적으로 했고, 센터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 들을 모국어로 해서 최대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 이게 여가부랑 법무부랑 약간 사이가 틀어지면서 그 풀을 법무부에서 다른데서 찾더라구요. 예전에는 센터에서 나갔기 때문에 센터 홍보물들이 먼저 나갔지만, 현재는) 사실 다른 NGO들의 홍보물들이 먼저 나가서 거기를 갔다가 거기서 센터를 알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필리핀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쪽 현지에서 한국으로 나갈 때 한국의 정보를 어느 정도 줍니다. 그래서 다문화 센터나 몇몇 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들어오시더라구요.”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융통성이 필요함.

“여성가족부에서 지침에 의한 사업들을 기본사업들 이런 것들을 묶어서 내려 보내기 때문에, 하달되는 그 사업들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어떤 그 지역에 특성에 맞는 사업들은 저희가 운영하기에는 융통성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다는 거구요. 이 대상자들에 욕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맞춤형의 프로그램들을 하기에는 맞지 않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좀 어렵다는 거죠.”(사례 3)

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방향, 사각지대, 지역특성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방향

- 센터의 사업목표는 정해져 있고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나, 국가 정책에 대해서 목표성이나 방향성을 지역 센터에서는 인지 못하고 있음.

“사실 센터의 사업 목표는 정해져 있구요. 그거에 맞춰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가 정책에 대해서 목표성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 센터에서는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구요. 국가가 지금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지..”(사례 1)

- 예산 투입대비 효과는 높다고 생각되나 초기부터 어떤 틀을 갖고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사업단위로 확장됨. 적정 인원에 대한 기준이 없음.

“이 분들이 욕구를 발현하면 저희는 욕구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사례 2)

- 예산구조 상의 문제로 비상근 센터장이 근무하거나 직원의 이직률이 매우 높고, 업무 부담이 큼. 최소한의 인력구성안 및 예산, 건물(물리적 환경)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함.

“예산은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센터장이 없습니다. 비상근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정권이 없어가지고, 보통 국장이나 팀장급에서 결정을 해 버리거든요. 그리고 센터장님 회의를 해도 별 안이 안 나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비상근일 경우에는... 센터장 급여가 딱 215만원 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장을 둘 수가 없구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의 각종 문제들을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사례 1)

“그래서 예산을 올려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구요.(중략) 단순히 예산을 올려달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최소한 센터에 어떤 인력구성원이 필요하고 운영지원에 예산 지출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가지고 다 사회복지사가 하고 있거든요.. (중략) 담당자들이.. 그게 아니라 복지관처럼 어느 정도 운영비가 필요하고, 이것을 좀 구성을 갖추시고

요. 최소한 인력구성이 됐으면 건물이나, 아니면 임대료라도 지원을 해주시거나.. 이런 기본 구성 틀은 만들어 주셔야..”(사례 1)

“운영지원팀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총괄 할 수 있는 총괄 팀장도 없고 (중략) 팀장급들이 퇴사를 하면 허덕입니다. 또 1년 허덕이다 어느 정도 올라가면 힘들니까 그만두면 또 허덕이고, 이런 구조.. 이직률은 서울의 최초의 이직률은 정확히 조사하지 않았는데 요. 최초의 남아 있는 사람들은 성복구하고 저 밖에 없습니다. 다 그만 두셨어요. 이진 문제가 큼니다.”(사례 1)

“아까 얘기 하셨던 건물, 이분들이 이용하는 건물이나 아니면 기관 사업이죠. 정확히 그러 것들 자체가 베팅이 안 좋아요. 셋팅 자체가 안 좋아요. 후져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반 지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죠. 그게 본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나 계층이라고 인지 할 수 있을 만큼.”(사례 2)

- 다문화가족의 자녀나 중도입국청소년을 다문화로 분류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통합을 저해할 수 있음에 대한 인식이 요구됨.

“(중도입국)아이들을 모아 놓는 것 보다는 학교에 녹아들어서 학교에서 놀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니까 적응을 못한 친구들은 어느 정도 센터에서 개별 상담이나 그룹 상담 그룹 활동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거에 목을 맨다는 거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학교에서 처리를 하고, 안 되는 애들만 저희 쪽에서 커버하는 형태 그게 제일 적당할 것 같습니다.”(사례 1)

(2) 사각지대

- 이용 가능 시간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문제: 다문화가족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주말에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직원들의 주말 및 야간 근무, 건물개방의 한계)

“사실 주말 요청이 많습니다.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말도 가능한데요. 저희가 각 센터들이 힘든 부분이 뭐냐면, 주말을 하다보면 직원들이 쉬는 날이 없습니다. 대체 근무 하라고 해도 안 되구요. 추가근무수당도 줄 수 없구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체가 안

됩니다.”(사례 1)

“본인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에 문을 열수 없는 경우도.. 저희가 열고 싶어도 문을 다 잠급니다. 건물전체가 다.. 저희 마음대로 문을 열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 하구요..”(사례 1)

“그렇다면 주말이죠. 날짜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이 뺄 뚫려 있는 거죠.. 이분들이 우리 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시간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고 봐요.”(사례 2)

“토요일 일요일.. 그리고 이분들이 좀 필요로 하는 한국어교육. 근데 한국어 교육이 예 산이 많이 소요 되요. 그래서 토요일하고... 뭐 직원이 나오는 거면 저희 직원이 나오면 나올 수 있다고 보지만, 예산, 한국어를 토요일 하고 일요일에 개설할 예산과 공간.. 그 래서 본이 아니게 사각지대를 만들죠.”(사례 2)

“제가 봤을 때는 주말이라는 시간에 같이 들어가요.. 일을 다니기 때문에 남자들은 못 오는 거예요.”(사례 1)

- 사각지대가 아닌 다문화가족을 사각지대로 봄: 욕구가 없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 터의 사업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이용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사각지대화 하고 있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 적인 한계(인력, 자원 등)

“지자체가 건물 마련해주지 않은 지역이 저희 밖에 없어서 지금 계속 푸쉬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구요. 어려움은 실무자들이 쉽게 소진이 되요. 쉬는 날이 없어요. 주말이 공식적으로 달아놓지는 않았지만, (중략).. 주말 야간 그리고 상담.. (중략) 주말에 상담하고 방문가고 합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상담을 하더라도 기본 남편을 만날 때 2명씩은 가줘야 되는데, 그거 같 인력이 없어서.. 결국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혼자 갑니다. (중략) 종사자 채우는 종사자가 만족해야 우리가 만나 는 내담자들이 만족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게 전혀 배제된 상태로 중앙에서 사업이 살 인적으로 떨어져요. 뭐 종사자들 채우 막 몇몇 배팅 해주고 거기에 자기 사업을 달고 이

안에 오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사례 2)

“급여를 높여달라고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기본 일 할 수 있는 공간이 에어컨이라
도 나오고, 전기세 걱정 안하고, 우리 일 할 티오도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돈 따라 다
녀야 되고, 여의치가 많거든요.(사례 2)

■ 복합가정이나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제한적임.

“저희 케이스 중에 제가 만나고 있는 분 중에 두 명이 중도입국 자녀가 있는데요. 한 명
은 4살이구요. 한 명은 17세.. 엄마가 전혼해서 결혼해서 전혼자녀를 데리고 온 건데
이 아이 국적 취득 하는데 시간이 2년이나 걸리는 거예요. 중도입국 자녀들 정책적으로
어리면 어릴수록 심사기간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국적취득 시간을.. 이 아이가 그 사
이 어린이집도 못 가고, 근데 다문화가족 어머니들이 돈이 많으면 생돈 들여서 어린이
집 보내겠지만, 이 아이가 그대로 집안에서 방임되는 거예요”(사례 2).

■ 결혼이주남성에 대한 접근이 거의 없는 실정임.

“센터의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가장 많아
요. 어쩔 수 없이.. 실적을 잡는 실 인원이 결혼이주여성이기 때문에, 그거는.. 실적을
어떻게 감안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는 없어요.”(사례 3)

“사각지대 중에 하나가 결혼이주남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같은 경
우에는 결혼이주 여성들, 또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
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결혼이주 남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
나..”(사례 3)

■ 2012년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대상인 된 새터민, 외국인근로자, 중도입국자
녀에 대한 접근은 실질적이지 못함 상황으로 새로운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2012년인가 2011년인가 은근슬쩍 여가부에서 다문화가족센터의 대상자를 새터민
이라든가 외국인근로자라든가 중도입국자녀라든가 이 대상자를 분명 은근슬쩍 넣어
놨어요. 그랬을 때, (7월 달에 동의도 없이)그러면 이 분들은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사각

지대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할 거냐구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거냐에 대한 것들은 정말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실적으로 잡으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잡을까요..”(사례 3)

“저희 센터들이 이슈가 되는 게 이슬람에서 오는 결혼이주여성 들에 어려움을 들었어요. 이분들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오신 분들인데, 저희가 외국인도 중도입국자녀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 두 분다 한국인 혈통을 갖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남편이 귀화를 하신 아내 분을 모시고 이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이 분들이 집에서 아내를 종교적인 틀로 있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아내분이 아이와 함께 한국사회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바깥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들도 이제는 사각지대가 되겠구나..”(사례 2)

(3) 지역특성

- 결혼이주여성을 만나는 과정에서 확인된 욕구에 대응하여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초기 정착을 위한 언어지원 뿐 아니라 5,6단계의 언어교육과정 개설 등

“예전에 총 4단계 중급단계 까지 밖에 하지 않았어요. 고급정도 되면 본인들이 알아서 공부해야 되는게 아닌가? 이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몇 명이서 모여서 욕구를 발현 하는거죠. 그 정도 되면 연차가 한 4-5년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5단계와 6단계가 만들어 집니다.”(사례 2)

- 일정 기간 한국생활에 적응하신 분들의 경우 자조모임으로 지원

“거주기간이 오래되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면, 이제 그분들에 맞는 자조모임이 생기고, 또, 그분들이 원하는 욕구를 발현을 합니다.”(사례 2)

“자기나라 음식을 먹고 싶은데 자기들은 어디서 만들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언니들 선 주민언니들이 좀 먼저 이주했던 언니들과 연결을 해서 음식 같이 만들어 먹도록 그룹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러니까 저희는 거대한 사업 보다는 조밀 조밀 하게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좀 더 많죠.”(사례 2)

- 지역별로 시나 도의 특수사업을 진행
- 농촌의 경우 결혼이주여성의 접근성 문제로 직원의 찾아가는 서비스에 있어 시간적인 소요

“도시와 시골간의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농촌이니까 농촌.. 저희보다 저희는 도농 복합지역이에요. 그런데 완전히 농촌 같은 경우는 정말 심각해요. 200명이라고 할지라도, 전체 회원이 200명이라 할지라도, 200명이 200군데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사례 3)

3) 이용만족도

- 초기에는 요구에 근거하지 않고 지원식의 사업을 수행하였으나 최근에는 결혼이주여성이 신청하여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이용하고 있음.

“예전에도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그때 참여를 억지로 했다면, 이제는 본인이 초이스 해서 하구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올라가고 있구요”(사례 1).

- 본인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이용으로 만족도가 높음 편임.

“일단 만족도는 저는 높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중략) 요즘은 슬슬 자기가 필요한 것에 신청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거가 충족이 되면 만족도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원치 않아도 다니는데, 요즘에는 선택을 합니다 프로그램을.”(사례 1)

- 생애주기별 맞춤형 코칭 서비스

“자녀들은.. 다문화가족은요 저희는 초기 결혼 이민자들은 이제 그냥 기본 시스템에서 통합 되도 되요. 그냥 가만히 앉아계시면,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시는 것처럼 본인들 것만 하면 되요. 근데 이게 이제 새로운 생애 주기를 맞아 오시는 분들이 센터가 센터랑 생애주기를 맞았을 때, 센터랑 가까이 있을수록 대처능력이 금방금방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아이가 유치원에 갈 때도 하다못해 유치원 비용.. 그 특별활동 비용을 몰라서 어린이 집에서 싸우고 오시고, 나한테만 돈을.. 이거 공짜라고 했는데, 나한테만 돈을 더

받게 하나.. 그게 특별활동 비용을 못 알아 들어서 그런 거지나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원장님은 저희한테 전화하셔서 이 엄마 왜 그러시냐.. 원래 이러냐 이 나라 사람들 그러냐.. 그러면 또 증재 해 드릴 수 있고, 아니면 부부간의 갈등도 육아차이 시부모차이.. 생애주기가 급변할 때 센터가 옆에 있어서 옆에서 계속 코칭 할 사람들이 있다면 이분 들은 적응하시는데 좋기 때문에 그게 바로 효과가 아닌가..”

-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공간부족의 문제: 대부분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독립적인 시설에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시설의 환경과 여건이 열악한 상황임

“불만족도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장소가 부족합니다. 각 다문화가족지원센터들이 물론, 단독건물을 갖고 계신 경우도 있지만, 거의 다 장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뺑뺑 돕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여기서 했다가, 내일은 저기서 했다가.. 이런 장소부족이 가장 문제가 있고, 에어컨도 안 나옵니다.”(사례 1)

4) 전달체계의 문제, 협력방안, 형평성 논란

- 국적취득이 강화되어야 함.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은 저는 제가 다문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국적취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강화를 해야 되냐면, 그래야 반감이 없어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적취득이 쉽다는 인식이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적 취득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강화를 해야, 이 사람이 정말 한국 사람이 됐다는 인식을 하고, 거기 지원이 들어가야 문제가 좀 적당히 줄어들 것 같구요.”(사례 1)

- 가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통합을 지향하는 지원이 되어야 함.

“다문화 퍼준다 퍼준다 하는데요. 사실은 저는 퍼주는 건 별로 없습니다. 생색내기가 있죠. 그 생색내기가 오히려 반감을 삽니다..(중략)..그런 생색내기용 정부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한국생활 적응 및 한국 사람들과 융화하고 잘 가족 생활을 유지하는데 지원이 많이 가야 되지, 생색 내기용을 줄여야 주변에서도 다문화라고 해서 특별히 퍼주는 건 아니구나. 재능이 적응 못하니까 도와주는 구나 이런 개념으

로 갈 수 있도록 좀 하고.”(사례 1)

- 현물이 제공되지 않더라도 필요시 이용하는 방향으로(정부의 경우 현물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음) 전개되며, 홍보용 물품지원은 내국인과의 차별을 내포할 소지 있음.

“중앙부처도 자기네들 홍보용으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중략) 다문화에 대해서 생색내려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중략)..그러니까 튼튼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 사업에 인원을 많이 동원해야 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것은 물품이라는 거죠. 그런 행사들이...(현물정책 같은 거..)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2-3회기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욕구에 맞춰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물건을 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수업을 듣거든요. 근데 일회성 단회기성 홍보성 행사에 사람을 동원하기 위해서는 물품을 줘야 하는데, 그게 (내국인과의 차별로)비취질 수 있다는 거죠.”(사례 1)

- 보육지원과 관련된 형평성 논란의 경우 대부분이 보육료지원대상일 수 있고 소수가 포함됨. 당초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현금을 수혜받기 위해 가정에서 방치하는 문제도 이 제도와 관련 있다고 볼 수 있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를 내포함.

“영유아 법 아까 말씀하셨지만, 유아도 사실 그거거든요. 다문화 100%해서 혜택 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소득이 낮아요. 이 사람들은. 소득이 낮은데 그 10만원 더 받으려고 아이들을 안보내기 때문에 사회적인 문제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료를 만들어서 그래서 어린이집 보내라 그래야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덜 들어가니까.. 그래서 처음에 무료로 했던 건데, 사회적 반감은 만만치 않죠..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해도 그 사람들은 무료입니다.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요. 물론 혜택 보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무료로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거는 별로 많이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거죠 어르신들 지하철 무료긴 하지만, 돈 버는 사람도 무료긴 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 혜택 보다는 어르신들이 무료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런 개념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사례 1)

- 선택권 없이 다문화가정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육시설에 보내는 것이 전체

된 정책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

- 다문화이니까 너그럽게가 아니라 내국인과 동일한 지원이 되어야 함.

“저는 이런 개념이죠. 장애인들에게 똑같이 수당을 주는 것은 맞는데, 예를 들면 어떤 지체장애인에겐 거기에 맞는 서비스가 별도로 가야 되는 거구요. 시각장애인에겐 시각 장애인에 맞는 서비스가 별도로 가야 되는 개념이죠. 그거를 다문화니까 더 너그럽게가 아니라 다문화의 특성을 보완할 수 있는 거는 더 가는 게 맞는 거구요. 금전적이나 이런 거는 한국의 저소득이랑 똑같이 가는 게 맞구요.”(사례 1)

- 거주기간 별로 지원이 차등되어야 함. 초기 입국 시 적응을 지원했다면, 국적취득을 하고 한국사회에 적응을 한 경우는 내국민과 동일하게 처우되어야 할 것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이주 여성들이 첨에 들어왔을 때 초기 입국자지 않습니까.. 국적을 취득하고 이러면 한국 사람이 된 거자나요. 그랬을 때, 다문화가족 지원을 하는 방향이 똑같아서는 안 되는 거자나요. 한국 사람이 된 이후에 지원의 범위가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 거주기간 별로 1년이 됐든...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운영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또는 거주기간별로 국적 취득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사례 3)

- 다문화가족이라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과 관련하여서도 소득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임.

“우리가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결혼이주여성이나 다문화가족 여성들에게 똑같이 하고 있는데, 보편적 복지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보육료 지원이니 이런 한 두 가지 때문에 전체적인 이미지가 사실은 다문화가족은 무조건 지원이다 라는게 사실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 다면 다문화 가족도요 예전처럼 그렇게 그런 취급을 받는 걸 반가워하지 않고 그 사람들도 싫어해요. 경제적 소득 기준을 그 사람들 한 테도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는 지원을.. 더 지원을 해야 될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고, 아까 경제활동 인구들이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자율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원을 하거나 서비스를 계속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 또한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사례 3).

- 중앙부처가 일원화되어야 할 것. 여가부이건 어떤 부처이건 간에 단일 될 필요가 있음.

“정부부처에서는 일원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구요. 지역사회 내에서는 지역사회 욕구에 맞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다양성을 줘야 된다는 거죠.(중략) 정부부처는 일단 다문화 쪽 여가부가 됐든 법무부가 됐든 보건복지부가 됐든 일단은 하나로 뭉치는 게 중요하구요...(중략).. 아시지겠지만, 저희도 업무도 다 겹치거든요. 근데 그거는 서로 조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갖춰져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지역사회가 네트워크 하는 것처럼.. 위에서도 그거는 하셔야지”(사례 3)

저도 말씀하신 것들에 동의 많이 하구요. 전달체계에 있어서 중앙부처는 반드시 하나로 통합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근데 그게 정말 불가능 하지만 그래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봐요. 여가부든 법무부든...(중략).. 뭐 하지만 누구든 상관 없구요.. 사실 실무자는 이제는 누구든 상관없다 예요.(사례 2)

- 여러 부처에서 다문화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역차별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임.

“내국인과의 형평성 역차별과도 상관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부처에서 다문화사업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당연히 다른 부처.. 다른 장르로 갈 만 한 돈이 줄어드는 거죠. 그니까 그걸 일원화 하는 게 오히려 예산 많이 썼다.. 그런 것 들이.. 근데 체감은 약해요.. 예산 부분도 역차별 부분도 이런 부처 간 통합이나 최소한 정리만이라도 해줘도..”(사례 2)

- 이용 비율이나 실적 위주의 평가가 네트워크나 다문화사업의 질적인 지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음

“장애요인은 실적입니다. 할당 된 실적. 그리고 그 다른 주무부처 그 쪽도 할당량이 있으니까 저희는 그 사업이 필요가 없는데, 이 욕구가 분명히 없는데, 이게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네트워크를 위해서 이들의 욕구를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거는 이 사람의 힘이 아니거든요. 위에 힘이 있는거 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장애요인인거죠. 서로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요인이고, 결혼이민자 에게도 장애요인이구요. 건가센터는 저희지역은 정확히 구분 되서 그쪽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대신 사각지대 관리라는 사업을 특성화로 하고 있어요.”(사례 3)

- 다문화가정지원센터의 사업효과를 지향하기 위해 현재의 2년의 위탁기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정이 요구됨.

“저는 민간의 역할이 조금 더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위탁기간을 줌.. 위탁기간이 보통 2년이거나 뭐 이렇게 되는데요. 공공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 민간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위탁을 줘서 그런데 그 위탁기간이 2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인 계획이라던가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통 환경들의 변화가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민간에서 제대로 된 정책을 다문화가족에게 프로그램을 수행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민간한테 맡기려고 생각하신다면, 위탁기간을 좀 더 조정해 주시던지, 의무의 어떤 기관을 주시던지 하는게 맞아요.”(사례 3)

“제 위탁이 아니라 공개위탁으로 센터에 한 번도 물어보지 않고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가부에서 이거에 대한 의견이나 공청회 아무것도 없고, 갑자기 공개위탁으로 다 바뀌 버렸어요. 이해가 안 되요..”(사례 1)

5) 다문화정책 개발을 위한 제언

- 다문화가족의 해체와 관련된 지원책이 구비되어야 하고, 특히 재혼으로 인한 전혼 자녀의 중도입국 시 심사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자녀가 가정에서 방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 중도입국청소년이나 학교부적응의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분리된 접근 보다는 학교 내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방문생활지도 대상자의 경우 13세까지 한정이 되어 있어 그 이후에 도움이 요구되는 청소년은 사각지대가 될 수 있음.
-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접근이 필요함.
- 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 거주기간에 따라서 일반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임.
- 멘토링 또는 자조모임의 활성화가 필요함.

- 주말을 이용한 한국어 교육지원이 필요함.
- 결혼이주여성 중심에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확장: 남편에 대한 교육, 시댁과의 관계에 대한 개입 등
- 다문화가족 사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 고조에 따른 비전문화가 우려됨. 사설단체가 서로 하겠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전문성을 지향하기 위한 기준이 요구됨.
-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단순구호는 지양되어야 함.
-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애주기별 지원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계가 있다면 교육청 등에서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입국 전 프로그램, 결혼 전 프로그램의 강화가 요구됨.

제2절 다문화가족지원 담당 공무원 인터뷰

1. 일반적 특성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을 위해 2차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1:1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표 5-3>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을 위한 공무원 인터뷰: 일반적 사항

구분	성	연령	기관소재지	비고
사례1	남	39	교육부	-
사례2	여	42	서울시	
사례3	여	50	대전시	

2. 공무원 대상 인터뷰 내용

개별 인터뷰는 반구조화 된 질문지를 사용하였고, 인터뷰 내용을 범주 별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표 5-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무원 인터뷰 내용

	내용
1	다문화정책 관련 문항
2	다문화가족정책 전달체계 관련 문항
3	내국인과의 형평성, 지원기준 방안 관련 문항

가. 전달체계 문제

- **다문화 지원 부처통합 필요:** 다문화가족 지원은 각 부처별 사업 중에서 공통부분은 합치거나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다문화가족 서비스 지원을 위한 총괄부서 필요:** 다문화가족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괄부서(예를 들어, 총리실 산하 TF 등)에서 사업을 관리

할 필요가 있음. 총괄부서는 어디가 되든 상관없고,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통합은 어렵겠지만 총괄부처를 통해 사업이 연계되고 전달체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면 현재 보다 예산, 인력, 업무분담에서 조금 긍정적인 변화가 보일 것으로 생각됨. 하지만, 시행착오도 있을 것이고, 빠른 시간에 이루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서비스 중복 지원이 아님:** 정부부처에서는 예산이 흩어져서 한 집단을 대상으로 예산이 들어가니 사업이 복잡하고 중복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서비스를 받는 입장에서는 편리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학교에서 영어공부 한다고 영어학원 안 다니는 게 아닌 것처럼, 다문화 자녀들도 교육부 언어교육, 여성가족부 언어교육 등 여러 번 듣는 것이 유용할 수도 있다는 것임. 때문에, 사업을 통합하는 것이 좋을지 그대로 같지 효율성 측면에서는 어느 것이 나올지는 좀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임.
- **생애주기별, 정착 단계별 서비스 필요:** 여가부에서는 여전히 초기정착을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향후에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정착 단계별, 생애주기별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함.
- **각 부처간 사업의 특색이 있고, 접근성으로 보면 현재가 효율적임:** 부처 간 서로간의 업무 범위가 있고, 중복성이 있다고 하지만 부처만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많은 중복은 아니라고 생각함. 접근성을 따지면 여러 곳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음.
- **기존의 운영되던 프로그램은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바뀌어야함:** 이를 위해서는 그들이 라이프사이클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확보가 굉장히 중요함. 현재 이런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기초자료를 제공 할 수 있도록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함.

나. 사각지대 문제

- **다문화가족의 사각지대는 자녀임:** 교육부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케어가 되지 않고 있음. 자녀들은 변화무쌍하고 취학 뿐 아니라 취업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중도입국 자녀 발굴의 어려움:** 프로그램을 마련해도 모집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부와 협조해서 풀어나가야 할 숙제임.

- **정해진 예산과 사업의 우선순위 문제:** 정해진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중점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 필요하지만 진행하지 못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정책주체나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음. 각 부처의 중복된 사업을 정리하고 사각지대의 사업을 파악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과의 소통 필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현장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함. 공무원들은 세부적인 사업 진행상황이나 클라이언트와의 접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사업을 진행하는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등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인력 및 시간이 부족함.
- **경제활동으로 인한 센터이용 어려움:** 현실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경우가 있어 이용을 할 수 없음.
- **초기 적응이 아니라도 생애 주기에서 필요시 센터 이용:** 초기 이용을 하지 않았으나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 및 교육관련 문제가 발생을 할 경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이용하게 됨.
- **외부와 차단된 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문제:** 센터나 시설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안정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음. 문제는 초기 입국한 후 언어 습득이 안 된 상황에서 가족 내에서 외부와 차단된 사람들임.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을 것 같음.
- **예산의 한계:** 꼭 해야 할 사업들을 발굴하여도 인력을 쓸 수 없고 예산도 부족하여 사장되는 사업이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까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인력보강 및 처우개선(법인이 바뀔 때의 고용안정 등)이 필요함.
- **지자체 특수사업을 위한 예산 사용의 융통성이 필요함:** 중앙부처의 예산을 기본사업 외에 지역만의 특성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면 좋을 것 같음 (예를 들어, 기본사업 80%, 특수사업 20%). 특수 사업은 하나의 시범사업이 되는 것이고, 성과에 따라 사업을 정리하거나 다른 지역에 배포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임. 이제는 일률적인 사업에서 벗어나야 함.

다. 형평성의 문제

- **다문화가족 지원은 내국인과 동일 수준으로 진행:** 다문화가족 지원은 결국에는 내국인과 통합하여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야함. 단, 아직 다문화정책이 시작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기본적인(조기정착을 돕는 서비스체계 등) 것을 다진 후 내국인의 인식개선도 진행하고,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정책을 정비 한 후에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내국인과 동등한 수준에서의 지원 필요:**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국인과 공통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은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에 특별히 필요한 부분만 지원해야함.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은 역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여성가족부 사업이라는 것이 초기정착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정착 기반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고, 이것은 보편적 복지와 상관없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해야함. 정책이 이루어진 다음엔 보편적 복지로 나아가는 것이 맞음.
- **다문화가족 정착이후는 내국인과 동일 수준 지원이 필요:** 다문화가족도 정착 이후에는 자구 노력으로 살아가야 함. 그런 것들이 자존감 향상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보편적 복지로 가서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나은 방향임. 차별성 있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자존감을 저하시킬 수 있음.

라. 지원수준

- **다문화가족도 결국에는 내국인이 되기 위해 정착한 사람들이기에 자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제3절 다문화가족지원 지원기준 개선방향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을 위해 3차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향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자문회의 내용을 범주 별로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전문가 자문회의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5-5> 다문화가족지원 전문가 자문회의 내용

	내용
1	선행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 관련된 논란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 및 개선하기 위한 방법
2	우리나라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에 대한 대응 방향
2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실무자들의 논의에 있어 부가적인 제언이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3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의 형성과 자녀교육 및 사회진출 등의 생애주기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기준 개선방향을 위한 전반적인 조언과 방향에 대한 의견

가. 다문화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요건

-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필요:** 현재 부처 간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각 부처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임.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 보다는 기존의 조정기구를 강화하거나 상시기구화 하여,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력 및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해야 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플랫폼 역할로의 강화:** 현재 서비스가 파편화 되고 있는 것은 윈스톱 역할을 하는 전담센터가 없기 때문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강화하여 다문화가족 서비스를 윈스톱으로 연계하고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지역 맞춤형 사업 진행 필요:** 현재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

족 지원 사업은 획일적이고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이는 여가부에서 예산을 기본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함. 때문에 예산을 특성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비율의 융통성(예: 기본사업 80%, 특성화사업 20%)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여지를 줄 필요가 있음.

- **다문화가족의 적극적 고용 지원을 위한 센터의 역량 강화:** 현재 결혼이주여성 및 남성의 고용처(식당 등)는 과거의 테두리를 못 벗어나고 고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의 취업관련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임. 결혼이주여성 및 남성을 전문적인 고용지원 시스템(연계 등)이 필요함.
- **초기정착지원을 넘어 정착 주기별 지원 시스템 마련 필요:** 우리나라 결혼이주여성 및 남성을 위한 초기 입국자 정착 시스템은 어느 정도 안정화단계로 보이지만, 생애주기 및 정착 기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응은 어려운 실정임. 이를 위해 생애주기 또는 정착 주기별 욕구를 조사하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 **중도입국 자녀의 학교적응을 위한 학교 내 상시인력 필요:** 교사들의 다문화교육 수준이 낮고 인식개선이 필요한 것이 현실임. 이를 위해 중도입국 자녀 및 다문화자녀의 비율이 높은 학교에는 사례관리를 지원할 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등 상시 인력의 보급이 필요함.
- **근로자를 위한 주말 및 공휴일 언어 교육 지원 시스템 필요:** 국내 적응을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언어교육이지만, 그 보다 더 우선시 되는 것이 생계 문제이므로, 생계를 위해 언어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를 위해 주말 및 공휴일에 언어교육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지역 평생교육원 등에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상담사들의 역량 강화:**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상담사의 역량 점검이 필요함. 가족해체, 갈등 등의 상담을 전문적으로 진행 할 인력이 필요한데, 통역을 통해 요약 전달 받은 내용으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 욕구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또한, 사례관리를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력이 많지 않고 중앙의 교육 또한 상담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교육의 수준이 낮아 효과성이 없음.

나. 역차별과 형평성의 논란

- **역차별이 아님:** 다문화가족이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을 생각 해 보면, (결국은 국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결되기 때문에) 역차별이라고 볼 수 없음.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립 취지:** 다문화지원센터를 만들고 정책이 생긴 이유가 똑같은 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인데, 역차별을 논하는 것은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부정이라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 가족 정책으로의 통합:** 기본 틀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틀과 함께 가는 것이 옳음. 이민여성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자체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정책으로 흡수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지원, 조손가족지원 등처럼 다문화가족 지원도 일부 고유한 욕구가 명확히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차별된 지원은 필요함.

다. 다문화가족지원의 지원방향

- **적응주기 및 욕구 중심의 지원체계 마련:** 적응 단계별 보편적 욕구를 파악하고, 그 다음 교육 욕구, 사회참여 욕구, 문화적응의 욕구, 자녀양육의 욕구 등으로 구분하여 생애주기가 언제이든 적응 주기에서 발견되는 욕구를 채워 줄 수 있도록 정책의 허점을 점검하고 보완 할 필요가 있음.
- **자녀 지원의 방향:** 재혼가정의 경우 전 처의 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 체계 안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지원해줄 방법이 없음. 하지만 다문화가족 내의 자녀 문제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으로 흡수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함.

제4절 시사점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전문가 FGI와 공무원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두 집단의 인터뷰를 거쳐 도출된 지원기준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최종적으로 전문가 집단의 자문회의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공통적으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요건이다. 다문화가족 지원정책과 관련된 논란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①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함 ②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플랫폼의 역할로 강화 ③다문화가족의 적극적인 고용 지원을 위한 센터의 역량 강화 ④ 초기 정착 지원을 넘어 정착 주기별 지원 시스템 마련 필요 ⑤중도입국 자녀의 학교 적응을 위한 학교 내 상시 인력 필요 ⑥다문화가족 내 근로자를 위한 주말 및 공휴일 교육(언어 교육 등) 지원 시스템 필요 ⑦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상담사의 역량 강화 필요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가족 역차별과 형평성 논란에 대한 시각이다. 본 과제를 위해 인터뷰한 대상자들은 현재 다문화 가족 정책이 내국인과의 “역차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이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제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역차별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이 내국인과 같은 저소득층 임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족에게 차별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설립된 것이므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역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현 다문화 가족 정책의 부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가족 정책으로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입을 모았다. 즉,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지원, 조손가족지원 등 처럼 가족 형태의 고유한 욕구에 대한 차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지원방향이다. 다문화가족의 향후 지원 방향은 적응주기 및 욕구중심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적응 단계적 보편적 욕구를 파악하고 생애주기에 필요한 정책을 점검하고 허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대다수였다. 또한 자녀 지원의 방향에 있어 재혼가정의 경우 전 처의 자녀는 현재 지원 체계 안에서는 지원해 줄 방법이 없으므로, 다문화 가족 내의 이혼과 재혼 등의 가변적 상황을 고려한 자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제6장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정책욕구

제1절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분포

제2절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정책욕구

제3절 시사점

6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정책욕구 <



제1절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분포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분포는 거주기간별로 인구사회적 특성, 경제 및 국적·언어 특성, 가족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거주기간별 인구사회적 특성

조사 완료된 결혼 이민자귀화자의 거주기간별 분포는 5~10년 미만이 36.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0년 이상도 36.1%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2~5년 미만은 21.6%로 1/5이었고, 1~2년 미만은 5.9%로 미미하였다. 전체 결혼이민자귀화자 중에서 5년 이상이 72.5%로 2/3 이상이었고, 5년 미만은 27.5%로 1/3 미만으로 대체로 자녀출산 및 양육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기간이 1~2년인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69.3%로 읍·면부의 30.7%보다 2.3배 높았고, 여성이 93.7%, 남성이 6.3%로 대다수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72.2%, 30대 16.5%, 40대 이상은 11.4%로 대다수가 20대 이하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가 83.9%로 4/5 이상이 해당되었고 대학 이상은 16.1%로 미미하였다. 출신국적분포는 베트남 출신이 48.6%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중국 조선족이 19.0%로 1/5이었으며, 이어서 필리핀이 9.1%, 중국 한족이 7.1%이었고, 나머지는 5% 미만으로 미미하였다.

거주기간이 2~5년 미만은 동부지역이 72.3%, 읍·면부 27.7%로 동부가 2.6배 높았고, 여성이 86.7%, 남성 13.3%로 대다수가 여성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52.8%로 절반을 차지하였고, 30대~40대 이상이 47.2%로 거의 과반수에 근접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가 79.0%로 4/5이었고, 대학 이상은 21.0%로 1/5에 해당되었다. 출

신국적은 베트남출신이 33.8%로 1/3이었고, 중국 조선족이 23.8%로 1/5를 상회하였으며, 중국 한족도 16.2%로 적지 않았다. 베트남과 필리핀은 6.6~6.7%로 미미하였다.

<표 6-1> 거주기간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인구사회적 분포

(단위: %, 명)

구분	1~2년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5.9	21.6	36.4	36.1
지역				
동부	69.3	72.3	78.1	84.1
읍·면부	30.7	27.7	21.9	15.9
성				
남자	6.3	13.3	19.1	27.6
여자	93.7	86.7	80.9	72.4
연령				
24세 이하	46.3	25.5	6.1	2.2
25~39세	25.9	27.3	21.8	1.7
30~34세	10.6	17.4	20.8	10.6
35~39세	5.9	9.4	13.4	20.3
40~49세	8.9	12.3	22.6	37.8
50세 이상	2.5	8.1	15.3	27.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1.0	36.6	34.0	25.4
고등학교	42.9	42.4	45.6	45.2
대학 이상	16.1	21.0	20.5	29.4
출신국적				
중국(조선족)	19.0	23.8	24.1	20.9
중국(한족 등)	7.1	16.2	38.9	43.3
베트남	48.6	33.8	19.0	1.8
필리핀	9.1	6.7	3.9	4.9
몽골·태국·캄보디아	7.3	6.6	4.3	2.0
일본	1.5	4.0	2.2	11.8
북마·호주·서유럽	1.6	3.7	3.3	6.7
기타	5.8	5.2	4.3	8.5
계(수)	100.0(16,616)	100.0(61,061)	100.0(103,224)	100.0(102,323)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거주기간이 5~10년 미만은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78.1%로 읍·면부의 21.9%보다 3.6배 높았고, 여성이 80.9%, 남성이 19.1%로 4/5가 여성으로 나타났다. 연령

별로는 20대 이하가 34.0%, 30대~40대 이상이 72.1%로 2/3을 훨씬 상회하였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가 79.6%로 4/5에 해당되었고 대학 이상은 20.5%로 1/5 분포를 보였다. 출신국적분포는 중국 한족 출신이 38.9%로 1/3을 초과하였고, 중국 조선족은 24.1%로 1/4이었으며, 이어서 베트남이 19.0%로 1/5이었고, 나머지는 5% 미만으로 미미하였다.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결혼이민자귀화자는 동부지역이 84.1%, 읍·면부 15.8%로 동부가 5.3배 높았고, 여성이 72.4%로 2/3을 훨씬 상회하였고, 남성은 27.6%로 1/4 이상의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가 3.9%로 미미하였고, 30대~40대가 68.7%로 2/3을 상회하였고, 50대 이상이 27.5%로 1/4 분포하여 대다수가 중장년층 이상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가 70.6%로 2/3 이상의 분포를 보였고, 대학 이상은 29.4%로 거의 1/3에 근접하여 교육수준이 10년 미만에 비해 높았다. 출신국적은 중국 한족이 43.3%로 거의 1/2에 근접하였고, 중국 조선족은 20.9%로 1/5 분포를 보였으며, 이어서 일본이 11.8%이었고, 나머지는 미미하였다.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고, 여성이 많았으며, 연령분포는 10년 미만인 경우 연령은 20~30대가 많은데 비해, 10년 이상은 30~40대가 많았고, 교육수준은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대학 이상의 비율이 높았으며, 출신국적은 5년 미만은 베트남, 5년 이상은 중국 한족과 중국 조선족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2. 거주기간별 경제 및 국적·언어 특성

거주기간별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 및 취업생활, 국적취득여부, 한국어수준 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기간이 1~2년 미만인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월평균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40.4%이었고, 200~300만원 미만 35.7%, 300만원 이상은 23.9% 분포를 보여 300만원 미만이 76.1%로 거의 4/5를 차지하여 우리나라 2013년 가구 월평균 소득 404만원에 비해 훨씬 낮은 분포를 보였다. 주관적 생활수준은 '중'이 57.4%로 1/2를 상회하였으며, '상'과 '하'는 각 20.8%와 21.8%로 2/5 분포를 보여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비해 주관적 생활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취업여부는 취업자가 24.3%로 1/5에 불

과하였고, 비취업이 75.7%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국적취득여부는 비취득이 99.0%로 대부분이 해당되었고, 한국어수준은 ‘하’가 73.7%로 2/3을 상회하였고, ‘상’과 ‘중’ 정도는 26.4%로 대다수의 한국어수준이 미흡하였다.

거주기간이 2~5년 미만은 월평균가구소득이 100만원 미만은 40.8%이었고, 200~300만원 미만 36.6%, 300만원 이상은 22.6% 분포를 보여 300만원 미만이 77.4%로 거의 4/5 분포를 보였다. 주관적 생활수준은 ‘중’이 50.4%로 절반이었고, ‘상’과 ‘하’는 각 29.0%와 20.6%로 과반수를 차지하여 월 평균 가구소득이 다소 높아지면서 주관적 생활수준도 높게 인식하였다. 취업여부는 취업자가 45.5%, 비취업자가 54.5%로 비취업이 9.0%p 높았다. 국적취득여부는 비취득이 88.6%로 대부분이 해당되었고, 한국어수준은 ‘하’가 47.1%로 거의 절반이었고, ‘상’과 ‘중’ 정도는 52.9%로 과반수 이상의 한국어 수준은 중간 이상으로 파악되었다.

거주기간이 5~10년 미만은 월평균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42.3%로 2/5이었고, 200~300만원 미만 32.8%, 300만원 이상은 24.9% 분포를 보여 300만원 미만이 75.1%로 거의 4/5분포를 보여서 우리나라 2013년 가구 월평균 소득에 비해 훨씬 낮은 분포를 보였다. 주관적 생활수준은 ‘상’ 36.0%, ‘중’ 46.7%로 ‘상’과 ‘중’이 4/5를 초과하였고, ‘하’는 17.3%로 월 평균 가구소득에 비해 주관적 생활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여부는 취업자가 62.1%, 비취업자는 37.9%로 취업자가 24.2%p 높았다. 국적취득여부는 취득자가 57.6%, 비취득자가 42.4%로 취득자가 15.2%p 높았으며, 한국어수준은 ‘상’이 46.0%, ‘중’이 27.2%로 ‘중’ 이상이 73.2%로 다수의 한국어 수준이 높았으며, ‘하’는 26.8%로 1/4에 불과하였다.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은 월평균가구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41.1%, 200~300만원 미만이 27.2%, 그리고 300만원 이상이 31.6% 분포를 보여서 300만원 미만이 300만원 이상보다 2배 많았다. 주관적 생활수준은 ‘중’이 44.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상’이 36.7%, ‘하’가 18.9%로 ‘상’과 ‘중’이 81.1%로 4/5 분포를 보여서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지면서 주관적 생활수준도 다소 높았다. 취업여부는 취업자가 66.0, 비취업이 34.0%로 취업이 2배 많았고, 한국어수준은 ‘상’이 61.5%, ‘중’이 20.3%로 ‘중’ 이상 수준이 81.8%로 대다수의 한국어 수준이 높았고, ‘하’는 18.1%로 1/5 미만에 불과하였다.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았

고, 주관적 생활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여부는 2년 미만과 2년 이상 간에 2~3배까지의 차이를 보였으며, 국적취득은 2년 미만은 전무한 편이었고, 5년 미만과 5년 이상 간에 5~6배까지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어 수준은 '상'과 '중'을 기준으로 1~2년은 1/3 분포, 2~5년 미만은 과반수, 5년 이상은 73~82%로 거주기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표 6-2> 거주기간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제 및 국적·언어수준 분포

(단위: %, 명)

구분	1~2년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월평균가구소득				
50만원 미만	2.4	2.3	2.9	5.6
50~100만원 미만	38.0	38.5	39.4	35.5
100~200만원 미만	-	-	-	-
200~300만원 미만	35.7	36.6	32.8	27.2
300만원 이상	23.9	22.6	24.9	31.6
주관적 생활수준				
상	20.8	29.0	36.0	36.7
중	57.4	50.4	46.7	44.4
하	21.8	20.6	17.3	18.9
취업여부				
취업	24.3	45.5	62.1	66.0
비취업	75.7	54.5	37.9	34.0
국적취득 여부				
취득	1.0	11.4	57.6	65.4
비취득	99.0	88.6	42.4	34.6
한국어수준				
상	8.3	22.7	46.0	61.5
중	18.1	30.2	27.2	20.3
하	73.7	47.1	26.8	18.1
계(수)	100.0(16,616)	100.0(61,061)	100.0(103,224)	100.0(102,323)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3. 거주기간별 가족특성

거주기간별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가족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거주기간이 1~2년 미만인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혼인유형은 초혼이 88.0%, 재혼이 12.0%로 초혼이

7.3배 많았고, 모두가 유배우 상태이었으며, 유자녀는 34.6%로 1/3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중도입국자녀가 있는 비율은 2.5%로 미미하였다. 자녀연령분포는 9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가 60.8%로 있는 경우 보다 2배 많았는데, 이는 결혼기간이 짧아서 자녀가 없는 데서 오는 결과를 반영한다.

거주기간이 2~5년 미만은 혼인유형은 초혼이 81.1%, 재혼이 18.9%로 초혼이 4.3배 많았고, 유배우는 96.3%로 대다수이고, 이혼·별거·사별과 미혼은 3.6%로 미미하였다. 유자녀는 62.7%로 2/3 정도이었고, 그 중 중도입국자녀가 있는 비율은 4.7%에 불과하였다. 자녀연령분포는 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57.6%로 자녀가 없는 경우 보다 15.2%p 높았는데 이는 어느 정도 자녀출산 시기에 접어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거주기간이 5~10년 미만은 혼인유형은 초혼이 72.8%, 재혼이 27.2%로 초혼이 2.7배 많았고, 유배우는 89.8%로 다수가 해당되었으며, 이혼·별거·사별과 미혼은 8.2%에 불과하였다. 유자녀는 58.6%로 과반수를 상회하였으며, 그 중 중도입국자녀가 있는 비율은 8.0%로 미미하였다. 자녀연령분포는 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51.1%, 자녀가 없는 경우 48.9%로 비슷하였다.

<표 6-3> 거주기간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가족특성 분포

(단위: %, 명)

구분	1~2년미만	2~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혼인유형				
초혼	88.0	81.1	72.8	72.7
재혼	12.0	18.9	27.2	27.3
혼인상태				
유배우	100.0	96.3	89.8	85.7
이혼·별거	-	0.7	4.4	7.6
사별	-	0.5	1.6	3.2
미혼	-	2.4	4.2	3.5
자녀유무				
유자녀	34.6	62.7	58.6	55.9
무자녀	65.4	37.3	41.4	44.1
중도입국자녀유무				
중도입국자녀 있음	2.5	4.7	8.0	8.1
중도입국자녀 없음	97.5	95.3	92.0	91.9
자녀연령				
9세 미만 자녀있음	30.2	57.6	51.1	31.7
9세 미만 자녀없음	69.8	42.4	48.9	68.3
계(수)	100.0(16,616)	100.0(61,061)	100.0(103,224)	100.0(102,323)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은 혼인유형은 초혼이 72.7%, 재혼이 27.3%로 초혼이 2.7배 많았고, 유배우는 85.7%로 대다수이고, 이혼·별거·사별과 미혼은 14.3%로 적지 않았다. 유자녀는 55.9%로 1/2를 초과하였으며, 그 중 중도입국자녀가 있는 비율은 8.1%로 미미하였다. 자녀연령분포는 9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68.3%로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2배 많았는데 이는 결혼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자녀연령이 9세 이상 분포에서 오는 결과로 이해된다.

전반적으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결혼유형은 초혼이 재혼보다 2.7~7.3배까지 많으나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재혼비율이 점차 높아졌고, 혼인상태도 대다수가 유배우 상태이나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이혼·별거·사별 비율이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자녀유무는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은 유자녀 분포가 1/3에 불과하다가 2년 이상부터는 과반수를 초과하는 비율을 보였으며, 중도입국자녀도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소폭으로 늘어났다. 자녀연령 분포는 2년 미만과 10년 이상은 9세 미만 자녀 없는 경우가 많았고, 2~10년 미만은 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제2절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정책욕구

다문화가족의 정책욕구는 주거 및 취업, 자녀양육 및 교육, 가족사회적응 및 통합, 사회서비스 접근 및 이용욕구 등에 대해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주거 및 취업욕구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전·월세 비율은 56.8%로 과반수를 상회하여서 주거생활이 불안정함을 시사한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자가 읍·면부지역보다 전·월세 비율이 2배 높아서 동부지역 거주자의 주거생활이 훨씬 불안정함을 보여주며,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22.8%p 높아서 남성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경우 주거생활이 불안정하였다. 연령별로는 전·월세비율이 38.1~70.9%로 고연령층일수록 높아서 거주기간이 오래된 경우 주거생활이 불안정함을 의미한다. 교육수준별로는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출신국적별로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의 경우 63.7~69.2%로 과반수를 상회하였으며, 거주기간별로는 10년 이상을 제외하고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오히려 전·월세 비

율이 높아서 연령별 분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와 사별에 비해 이혼·별거인 경우 89.0%로 주거생활이 훨씬 불안정하였고, 미혼도 65.9%로 높았다. 취업별로는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전·월세비율이 11.4%p 높았고,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47.3~71.0%로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전·월세 비율이 높았다.

주거환경은 지상에 위치한 경우는 91.3%로 대다수에 해당되었고, 지하·반지하·옥탑방은 8.7%로 미미하였다. 지역, 성 및 연령별, 교육수준별, 출신국적별, 거주기간 및 혼인상태별, 취업 및 월평균가구소득별로도 전체와 유사하여 대다수가 지상에 위치하였으며, 특히 지하·반지하·옥탑방에 위치한 비율은 동부지역거주자가 읍·면부지역 거주자보다 12배 높아서 동부지역거주자의 주거환경이 열악하였고, 남성이 여성보다 5.2%p 높아서 남성 결혼이민자·귀화자가 여성보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이었다.

<표 6-4>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전·월세비율

(단위: %, 명)

구분	전·월세 비율		주거환경		
	비율	(분석대상수)	지상	지하·반지하·옥탑	계(수)
전체	56.8	(270,716)	91.3	8.7	100.0(283,224)
지역					
동부	63.6	(214,461)	89.1	10.9	100.0(222,305)
읍·면부	31.1	(56,255)	99.1	0.9	100.0(60,919)
성					
남자	75.0	(54,632)	87.1	12.9	100.0(57,140)
여자	52.2	(216,085)	92.3	7.7	100.0(226,084)
연령					
24세 이하	38.1	(29,755)	96.7	3.3	100.0(31,781)
25~29세	47.3	(42,570)	95.8	4.2	100.0(45,216)
30~34세	54.0	(42,536)	94.7	5.3	100.0(44,713)
35~39세	54.6	(39,783)	92.1	7.9	100.0(41,299)
40~49세	64.2	(69,176)	89.6	10.4	100.0(70,995)
50세 이상	70.9	(46,897)	82.2	17.8	100.0(49,21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6.0	(85,945)	89.8	10.2	100.0(90,210)
고등학교	59.5	(121,158)	90.5	9.5	100.0(126,332)
대학 이상	52.8	(63,613)	94.8	5.2	100.0(66,681)
출신국적					
중국(조선족)	63.7	(61,812)	88.2	11.8	100.0(63,971)
중국(한족 등)	69.2	(92,499)	87.1	12.9	100.0(95,586)
베트남	37.5	(46,994)	96.4	3.6	100.0(50,133)
필리핀	44.4	(13,730)	95.4	4.6	100.0(14,680)
몽골·태국·캄보디아	43.5	(11,049)	95.9	4.1	100.0(11,758)
일본	44.2	(16,249)	95.7	4.3	100.0(17,050)
북마·호주·서유럽	45.4	(11,893)	98.4	1.6	100.0(12,796)
기타	56.8	(16,489)	95.2	4.8	100.0(17,248)
거주기간					
1~2년 미만	45.1	(15,523)	95.4	4.6	100.0(16,615)
2~5년 미만	52.1	(57,836)	94.4	5.6	100.0(61,061)
5~10년 미만	60.2	(98,720)	90.3	9.7	100.0(103,225)
10년 이상	58.1	(98,636)	89.8	10.2	100.0(102,322)
혼인상태					
유배우	54.5	(245,119)	92.2	7.8	100.0(255,830)
이혼·별거	89.0	(12,112)	80.0	20.0	100.0(12,749)
사별	54.5	(4,790)	78.5	21.5	100.0(5,293)
미혼	65.9	(8,695)	89.9	10.1	100.0(9,353)
취업여부					
취업	61.6	(156,850)	89.8	10.2	100.0(163,484)
비취업	50.2	(113,866)	93.4	6.6	100.0(119,740)
월평균가구소득					
50만원 미만	71.0	(9,536)	82.3	17.7	100.0(10,452)
50~100만원 미만	63.1	(101,272)	88.0	12.0	100.0(106,818)
100~200만원 미만	-	-	-	-	-
200~300만원 미만	55.9	(86,696)	92.9	7.1	100.0(90,067)
300만원 이상	47.3	(73,212)	95.2	4.8	100.0(75,887)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연령별로는 동 비율이 3.3~17.8%로 고연령층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여서 중고령층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함을 보여준다. 교육수준별로는 5.2~10.2%로 저학력층에서 지하반지하옥탑방 비율이 높아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였으며, 출신국적별로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이 11.8~12.9%로 타 국가 출신보다 높아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이었다. 거주기간별로는 4.6~10.2%로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지하반지하옥탑방 비율이 높아서 주거환경이 열악하였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이혼·별거와 사별이 20.0~21.5%로 유배우와 미혼보다 동 비율이 2.8배까지 높아서 해체된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하였다. 취업별로는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동 비율이 3.6%p 높아서 주거환경이 다소 열악하였고,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4.8~17.7%로 저소득일수록 동 비율이 높아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향을 보였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미취업 비율은 42.3%로 과반수에 근접하였으나 취업의향은 82.2%로 미취업자 중 대다수가 취업을 희망하여 취업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미취업비율은 읍면부가 동부보다 5.2%p 높았으며, 취업희망도 읍면부가 동부보다 2.6%p 높았다. 성별로는 미취업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2.2배 높았고, 취업희망도 여성이 남성보다 20.3%p 높았다. 연령별로는 미취업비율은 24.7~66.5%로 50세 이상을 제외하고 대체로 저연령층일수록 높았으며, 취업희망은 연령별로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25~29세와 30~34세 연령층에서 89.4~90.1%로 타 연령층에 비해 높은 취업욕구를 보였으며, 이외에 24세 이하와 30대와 40대 연령층도 전체보다 높은 취업욕구를 보였다. 교육수준별로 미취업비율은 39.3~46.4%로 저학력층에서 높았으며, 취업희망은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이 전체보다 높았으나 일정하지 않았다. 출신국적별로는 미취업비율은 31.5~57.7%로 베트남, 필리핀, 몽골·태국·캄보디아, 일본 및 기타 국가 출신이 전체보다 높았으며, 취업희망은 58.8~88.9%로 일본을 제외하고 베트남, 필리핀, 몽골·태국·캄보디아, 일본 및 기타 국가 출신이 전체보다 높아서 대체로 미취업비율이 높은 국가출신의 경우 취업욕구가 높았다.

거주기간별로는 미취업비율이 34.0~75.7%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높았으며, 취업희망은 74.3~87.4%로 5~10년 미만을 제외하고 대체로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높아서 미취업비율이 높은 단기 거주자에서 높은 취업욕구를 보였다. 혼인상태별로는 미취업비율은 유배우와 사별이 43.2%~53.3%로 전체보다 높았으며, 취업희망도 유배우와 사별이 83.2~83.4%로 높아서 미취업이 높은 경우 취업욕구가 높았다.

<표 6-5>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미취업 및 취업의향

(단위: %, 명)

구분	미취업 비율		취업의향	
	비율	(분석대상수)	비율	(분석대상수)
전체	42.3	(283,224)	82.2	(117,429)
지역				
동부	41.2	(222,305)	81.5	(89,536)
읍·면부	46.4	(60,919)	84.4	(27,893)
성				
남자	21.4	(57,139)	63.8	(11,267)
여자	47.6	(226,084)	84.1	(106,162)
연령				
24세 이하	66.5	(31,781)	86.0	(21,102)
25~29세	55.9	(45,216)	89.4	(25,029)
30~34세	48.5	(44,713)	90.1	(21,372)
35~39세	36.8	(41,299)	86.0	(14,680)
40~49세	24.7	(70,994)	86.5	(16,758)
50세 이상	38.4	(49,218)	51.9	(18,48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65.4	(90,210)	77.2	(41,669)
고등학교	40.9	(126,333)	85.9	(50,835)
대학 이상	39.3	(66,680)	82.9	(24,926)
출신국적				
중국(조선족)	41.1	(63,971)	82.1	(25,911)
중국(한족 등)	31.5	(95,586)	80.4	(29,533)
베트남	57.7	(50,133)	87.4	(28,827)
필리핀	48.8	(14,680)	88.9	(7,062)
몽골·태국·캄보디아	55.0	(11,758)	88.3	(6,403)
일본	52.6	(17,051)	70.7	(8,620)
북미·호주·서유럽	33.7	(12,796)	58.8	(3,864)
기타	43.1	(17,248)	83.2	(7,210)
거주기간				
1~2년 미만	75.7	(16,616)	87.4	(12,535)
2~5년 미만	54.5	(61,061)	84.8	(32,996)
5~10년 미만	37.9	(103,225)	85.2	(38,249)
10년 이상	34.0	(102,323)	74.3	(33,649)
혼인상태				
유배우	43.2	(255,830)	83.2	(108,375)
이혼·별거	21.0	(12,749)	83.4	(2,625)
사별	53.3	(5,292)	47.0	(2,813)
미혼	39.3	(9,353)	78.0	(3,617)
자녀유무				
유자녀	47.2	(161,814)	88.2	(75,280)
무자녀	35.7	(121,409)	71.4	(42,149)
월평균가구소득				
50만원 미만	85.0	(10,452)	83.7	(8,847)
50~100만원 미만	47.5	(106,818)	83.4	(50,477)
100~200만원 미만	-	-	-	-
200~300만원 미만	40.8	(90,067)	86.2	(35,970)
300만원 이상	30.7	(75,887)	80.2	(22,135)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자녀유무별로는 미취업비율은 유자녀가 무자녀보다 11.5%p 높았고 취업희망도 유자녀가 무자녀보다 16.8%p 높아서 미취업이 높은 유자녀의 경우 취업욕구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미취업비율은 30.7~85.0%로 저소득층에서 높았고, 취업희망은 80.2~86.2%로 일정하지 않으나 200~3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은 1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에서 높은 취업희망을 보여 대체로 미취업의 저소득층에서 높은 취업욕구를 보였다.

2. 자녀양육 및 교육 욕구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자녀방치율은 0.3%로 상당히 미미하였으며, 특성별로는 지역 및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차이가 없었으며, 나머지는 미미하나 다소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방치율이 0.2%p 높았고, 연령별로는 0.2~1.0%로 20대 이하의 전무하였으며, 50세 이상을 제외하고, 대체로 고연령층일수록 자녀방치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자녀의 연령과도 관련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수준별로는 0.1~0.5%로 고학력층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연령과도 관련이 높아서 고학력층의 경우 고연령층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출신국적별로는 0.1~0.7%로 대체로 중국 조선족과 한족, 필리핀, 일본 출신이 전체보다 높았는데 이는 연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들 출신이 고연령층 분포가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거주기간별로는 5년 미만에서는 자녀방치가 없었고, 5~10년 미만이 0.2%, 10년 이상이 1.1%로 거주기간이 오래될수록 자녀방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고연령층에서 자녀방치가 높은 편이었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는 0.3%, 이혼·별거 및 사별은 3.1~8.2%로 자녀방치는 유배우에 비해 해체가족의 경우 2.8~7.9%p까지 높았다. 취업별로는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자녀방치가 다소 높았고,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차이가 없었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이 있는 비율은 68.7%로 2/3 이상이 해당되었고, 어려움 점으로는 양육비·교육비 지출이 31.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한국어 가르치는 것이 16.0%로 높았으며, 이외에도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보육시설 부재를 지적하였다.

<표 6-6>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자녀방치율 및 자녀양육상 어려운점

(단위: %, 명)

구분	자녀방치율		자녀양육상 어려움					(분석대상수)
	비율	(분석대상수)	어려움 없음	한국어를 가르치기 어려움	자녀를 돌보아줄 사람보육시설 부재	양육비용교육비 지출	기타	
전체	0.3	(125,408)	31.3	16.0	7.4	31.5	13.8	(161,820)
지역								
동부	0.4	(90,057)	31.7	14.4	7.7	33.1	13.1	(119,846)
읍면부	0.3	(35,351)	30.5	20.6	6.6	26.7	15.6	(41,974)
성								
남자	0.2	(15,197)	39.5	4.1	7.3	34.6	14.5	(22,481)
여자	0.4	(110,211)	30.0	17.9	7.4	31.0	13.4	(139,339)
연령								
24세 이하	-	(18,888)	28.1	29.2	7.9	20.5	14.3	(19,142)
25~29세	-	(31,899)	28.6	27.3	7.5	24.3	12.3	(32,356)
30~34세	0.2	(32,372)	30.0	15.5	10.2	31.7	12.6	(34,047)
35~39세	0.7	(23,252)	29.1	11.1	6.9	37.7	15.2	(30,384)
40~49세	1.0	(18,033)	35.0	6.4	6.1	38.0	14.5	(39,211)
50세 이상	0.6	(964)	49.5	4.7	1.2	28.9	15.7	(6,680)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0.1	(37,887)	29.0	23.1	6.1	28.8	13.0	(46,911)
고등학교	0.4	(55,406)	28.9	14.4	8.5	34.5	13.7	(72,711)
대학 이상	0.5	(32,115)	38.2	10.8	7.1	29.2	14.7	(42,192)
출신국적								
중국(조선족)	0.7	(22,382)	31.8	15.4	9.0	31.0	12.8	(30,764)
중국(한족 등)	0.5	(27,086)	34.8	4.9	8.1	40.5	11.7	(43,022)
베트남	0.1	(38,123)	25.0	31.0	6.8	23.3	13.9	(39,000)
필리핀	0.4	(9,303)	26.8	20.5	5.3	30.8	16.6	(11,627)
몽골-태국-캄보디아	0.3	(7,849)	26.6	25.8	6.8	26.3	14.5	(8,743)
일본	0.7	(6,625)	30.4	8.9	3.2	38.3	19.2	(11,124)
북미-호주-서유럽	-	(5,462)	53.8	2.2	9.7	20.3	14.0	(6,541)
기타	0.3	(8,576)	35.4	10.9	8.0	30.8	14.9	(10,999)
거주기간								
1년 미만	-	(-)	-	-	-	-	-	(-)
1~2년 미만	-	(5,024)	41.4	17.2	7.7	22.0	11.7	(5,749)
2~5년 미만	-	(35,171)	29.9	27.7	8.1	20.7	13.6	(38,314)
5~10년 미만	0.2	(52,757)	30.0	18.5	8.7	29.3	13.5	(60,506)
10년 이상	1.1	(32,456)	32.7	5.4	5.6	41.9	14.4	(57,245)
혼인상태								
유배우	0.3	(123,718)	31.5	16.3	7.5	30.8	13.9	(157,062)
이혼/별거	3.1	(1,223)	29.0	6.8	4.5	52.6	7.1	(1,035)
사별	8.2	(466)	18.2	11.5	-	49.5	20.8	(3,716)
취업여부								
취업	0.7	(58,383)	32.5	11.9	7.7	34.0	13.9	(85,364)
비취업	0.1	(67,025)	30.1	20.6	7.1	28.6	13.6	(76,449)
월평균가구소득								
50만원 미만	0.3	(2,297)	24.9	13.6	3.6	38.5	19.4	(2,889)
50~100만원 미만	0.4	(45,715)	23.5	18.3	6.8	37.4	14.0	(57,332)
100~200만원 미만	-	(-)	-	-	-	-	-	(-)
200~300만원 미만	0.3	(45,119)	30.7	17.8	8.7	30.1	12.7	(56,163)
300만원 이상	0.3	(32,277)	42.4	11.1	6.9	25.3	14.3	(45,432)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지역별로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68.3~69.5%로 비슷하였으며, 동부지역 거주자는 양육비·교육비 지출에, 읍면지역 거주자는 한국어 가르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다. 성별로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여성이 남성보다 9.5%p 높았고, 남성은 양육비·교육비 지출에, 여성은 한국어 가르치는 것에 어려움이 더 많았다. 연령별로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50.5~71.9%로 저연령층에서 높아서 자녀양육시기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어려운 점은 타 연령층에 비해 저연령층에서는 한국어가르치는 것이, 중장년층에서는 양육비·교육비 지출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61.8~71.1%로 저학력층에서 높은 편이었고, 저학력층에서는 한국어 가르치는 것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나머지는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출신국적별로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46.2~75.0%로 타 국가에 비해 베트남, 몽골·태국·캄보디아, 일본 출신에서 높았다. 한국어 가르치는 것은 베트남, 몽골·태국·캄보디아, 일본 출신에서, 양육비·교육비지출은 중국 조선족과 한족, 필리핀, 일본 출신의 경우 어려움이 더 많았다.

거주기간별로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58.6~70.1%로 2년 미만보다 2년 이상에서 높아서 자녀양육시기별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한국어 가르치는 어려움은 10년 미만에서 많았으며, 양육비·교육비 지출은 1~2년 미만을 제외하고 대체로 거주기간이 오래 될수록 많은 경향을 보였다. 혼인상태별로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68.5~81.8%로 유배우에 비해 이혼·별거 및 사별의 경우 높았고, 유배우는 한국어 가르치는 것에서, 이혼·별거 및 사별은 양육비·교육비지출에서 어려움이 더 많았다. 취업별로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취업자는 양육비·교육비 지출에, 비취업자는 한국어 가르치는 것에 어려움이 더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57.6~76.5%로 대체로 저소득층에서 높았으며, 소득이 낮은 경우 양육비·교육비지출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나머지는 일정하지 않았다.

결혼이민자귀화자가 희망하는 자녀의 학력수준은 4년제 대학교가 66.0%로 2/3에 해당되었고, 대학원 박사도 19.7%로 1/5분포를 보여 본인에 비해 자녀에게 희망하는 학력수준이 높았다. 지역별로는 4년제 대학교 이상을 희망하는 비율이 91.5~92.3%로 차이가 없었으며, 성별로는 남녀 모두 91.6%로 동일하였고, 연령별로는 82.7~95.7%로 저연령층에서 고학력에 대한 욕구가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90~95.8%로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의 고학력에 대한 욕구가 높았으며, 출신국적별로는 89.0~97.5%로 베트남, 필리핀, 몽골·태국·캄보디아, 북마·호주·서유럽 출신의 경우

타 국 출신에 비해 고학력 욕구가 높은 편이었다.

<표 6-7>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희망하는 자녀의 학력수준

(단위: %, 명)

구분	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4년제 미만)	대학교 (4년제 이상)	대학원(석사)	대학원(박사)	계(수)
전체	1.6	6.8	66.0	5.9	19.7	1000(185,089)
지역						
동부	1.8	6.8	64.7	6.5	20.3	100.0(139,282)
읍·면부	1.1	6.6	70.2	4.1	18.0	100.0(45,817)
성						
남자	2.9	5.6	55.8	7.6	28.2	100.0(26,512)
여자	1.4	7.0	67.7	5.6	18.3	100.0(158,586)
연령						
24세 이하	0.5	3.8	71.5	4.9	19.3	100.0(19,405)
25~29세	0.8	5.0	69.1	5.8	19.3	100.0(33,198)
30~34세	0.2	5.1	65.5	6.8	22.4	100.0(35,195)
35~39세	0.6	6.1	63.8	7.1	22.3	100.0(32,824)
40~49세	3.5	9.0	64.5	5.2	17.8	100.0(52,084)
50세 이상	4.2	13.0	63.1	4.5	15.1	100.0(12,392)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2	7.9	71.5	3.5	15.0	100.0(55,395)
고등학교	1.7	7.8	67.1	4.9	18.5	100.0(84,431)
대학 이상	0.7	3.5	57.5	10.6	27.7	100.0(45,361)
출신국적						
중국(조선족)	2.6	7.3	63.5	6.2	20.4	100.0(39,691)
중국(한족 등)	2.3	8.7	62.9	4.8	21.3	100.0(53,623)
베트남	0.7	4.7	74.0	4.4	16.2	100.0(40,342)
필리핀	0.6	7.0	72.6	7.8	12.0	100.0(11,957)
몽골·태국·캄보디아	1.2	5.4	70.2	4.9	18.2	100.0(9,431)
일본	0.7	9.1	68.4	7.3	14.4	100.0(11,479)
북미·호주·서유럽	0.8	1.7	44.1	15.2	38.2	100.0(6,904)
기타	1.1	4.7	61.9	6.7	25.7	100.0(11,670)
거주기간						
1년 미만	-	-	-	-	-	-
1~2년 미만	0.9	6.2	66.1	6.9	19.9	100.0(7,068)
2~5년 미만	1.4	5.5	68.7	6.5	18.0	100.0(43,017)
5~10년 미만	1.8	6.7	67.5	4.8	19.2	100.0(69,522)
10년 이상	1.6	7.7	62.8	6.5	21.4	100.0(65,493)
혼인상태						
유배우	1.5	6.6	66.1	5.9	19.8	100.0(178,929)
이혼·별거	4.3	12.3	61.1	3.1	19.1	100.0(4,788)
사별	2.9	4.2	74.0	9.9	9.1	100.0(1,379)
취업여부						
취업	2.3	7.4	65.2	5.8	19.3	100.0(102,855)
비취업	0.7	6.0	67.0	6.0	20.3	100.0(82,243)
월평균가구소득						
50만원 미만	2.2	8.1	73.9	3.8	12.0	100.0(3,678)
50~100만원 미만	1.4	7.6	68.1	5.1	17.8	100.0(66,080)
100~200만원 미만	-	-	-	-	-	-
200~300만원 미만	1.5	6.5	67.3	5.1	19.6	100.0(63,461)
300만원 이상	2.0	6.0	61.3	7.9	22.8	100.0(51,878)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거주기간별로 4년제 대학교 이상을 희망하는 비율은 90.7~93.2%로 대체로 단기 거주자의 경우 자녀의 고학력 욕구가 높았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취업별로는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고학력 욕구가 다소 높았고,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89.7~92.0%로 비교적 고소득층에서 고학력 욕구가 높은 편이었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모국유학 희망률은 45.2%로 거의 과반수에 근접하였고, 그 이유로는 부모의 모국 언어·문화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가 59.9%로 3/5분포를 보였고, 한국에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도 16.0%로 적지 않아서 교육비부담이 높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모국에서 취업·성공을 위해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동부와 읍면부 모두 모국유학 희망률이 전체와 동일하였고, 모국유학 이유는 동부지역 거주자는 교육비 부담 때문이,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모국어·문화를 배우기 위해서가 더 많았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모국유학 희망률이 약간 높았고, 남성은 기타 이유 때문에, 여성은 교육비 부담 때문이 2/3으로 상당히 높은 분포를 보였다. 연령별 모국유학 희망률은 28.2~53.0%로 25~39세 연령층이 높은 편이었고, 저연령층은 모국어·문화를 배우게 하기 위해, 중장년층은 교육비 부담 때문, 고연령층은 모국에서 취업·성공과 기타 때문이 더 많았다. 교육수준별 모국유학 희망률은 36.7~59.8%로 고학력일수록 높았고, 저학력층은 교육비와 모국어·문화 학습 때문이, 고학력층은 기타 이유 때문이 많았다. 출신국적별 모국유학 희망률은 35.5~82.7%로 필리핀, 일본 및 북미·호주·서유럽 등에서 높은 편이었고, 유학 이유로는 중국 한족과 필리핀, 몽골·태국·캄보디아는 교육비 부담 때문이, 중국 조선족과 베트남, 몽골·태국·캄보디아 및 일본 출신은 모국어·문화 때문이 많았다.

거주기간별 모국유학 희망률은 40.0~49.2%로 장기거주자의 경우 높았고, 유학 이유는 장기 거주자는 교육비 부담과 기타 이유 때문에, 단기 거주자는 모국어·문화 때문이 많았다. 혼인상태별 모국유학희망률은 유배우자가 이혼·별거와 사별자보다 높았고, 유배우와 사별자는 모국어·문화 때문에, 이혼·별거자는 교육비 부담이 많았다. 취업별 모국유학 희망률은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취업자는 교육비 부담이, 비취업자는 모국어·문화 때문이 더 많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 모국유학희망률은 38.4~51.1%로 고소득층에서 더 높았고, 유학 이유는 저소득층은 교육비 때문에, 고소득층은 모국어·문화 때문이 다소 많았다.

<표 6-8>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자녀의 모국유학 희망률 및 이유

(단위: %, 명)

구분	모국유학 희망률		모국유학 이유				계(수)
	비율	(분석대상수)	한국에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	모국언어문 화를 배우게 하기 위해	모국에서 취업성공을 위해	기타	
전체	45.2	(185,098)	16.0	59.9	6.8	17.3	100.0(83,687)
지역							
동부	45.2	(139,282)	16.5	57.0	7.2	19.3	100.0(62,993)
읍·면부	45.2	(45,816)	14.4	68.5	5.8	11.3	100.0(20,694)
성							
남자	46.3	(26,512)	13.9	43.4	7.3	35.4	100.0(12,266)
여자	45.0	(158,587)	16.4	62.7	6.7	14.2	100.0(71,422)
연령							
24세 이하	39.0	(19,406)	10.6	74.8	5.2	9.5	100.0(7,559)
25~29세	45.1	(33,198)	16.7	67.4	5.8	10.2	100.0(14,999)
30~34세	53.0	(35,196)	17.0	63.3	5.5	14.2	100.0(18,467)
35~39세	50.5	(32,824)	15.3	59.0	5.6	20.0	100.0(16,582)
40~49세	43.1	(52,084)	17.4	48.6	9.8	24.1	100.0(22,441)
50세 이상	28.2	(12,392)	14.0	53.2	8.3	24.4	100.0(3,498)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6.7	(55,396)	16.0	63.7	6.2	14.2	100.0(20,328)
고등학교	42.9	(84,341)	17.6	62.5	7.0	12.9	100.0(36,214)
대학 이상	59.8	(45,362)	13.9	53.5	7.1	25.6	100.0(27,146)
출신국적							
중국(조선족)	46.5	(39,691)	15.2	65.3	8.2	11.3	100.0(18,460)
중국(한족 등)	40.6	(53,623)	17.7	57.4	9.1	15.7	100.0(21,749)
베트남	35.5	(40,342)	11.4	73.0	6.1	9.5	100.0(14,305)
필리핀	60.9	(11,957)	33.4	50.3	3.1	13.2	100.0(7,280)
몽골·태국·캄보디아	43.9	(9,432)	20.1	66.1	3.4	10.3	100.0(4,140)
일본	59.6	(11,479)	4.3	61.2	6.7	27.8	100.0(6,837)
북미·호주·서유럽	82.7	(6,905)	8.2	25.0	5.4	61.4	100.0(5,714)
기타	44.6	(11,671)	21.0	59.3	4.1	15.6	100.0(5,206)
거주기간							
1년 미만	-	-	-	-	-	-	-
1~2년 미만	40.0	(7,067)	13.0	66.5	6.5	14.0	100.0(2,830)
2~5년 미만	42.9	(43,017)	13.0	65.8	6.0	15.2	100.0(18,447)
5~10년 미만	43.4	(69,522)	17.9	59.4	6.8	15.8	100.0(30,179)
10년 이상	49.2	(65,492)	16.2	56.3	7.4	20.2	100.0(32,232)
혼인상태							
유배우	45.6	(178,929)	15.9	60.0	6.8	17.3	100.0(81,515)
이혼·별거	34.0	(4,789)	21.5	47.6	9.6	21.3	100.0(546)
사별	39.5	(1,380)	12.8	67.9	8.1	11.2	100.0(1,627)
취업여부							
취업	44.9	(102,856)	17.1	56.3	7.5	19.0	100.0(46,227)
비취업	45.5	(82,243)	14.6	64.2	6.0	15.2	100.0(37,461)
월평균가구소득							
50만원 미만	38.4	(3,678)	18.9	60.3	2.3	18.5	100.0(1,415)
50~100만원 미만	42.3	(66,080)	19.2	62.2	6.2	12.5	100.0(27,941)
100~200만원 미만	-	-	-	-	-	-	-
200~300만원 미만	43.8	(63,461)	16.2	60.8	6.8	16.2	100.0(27,807)
300만원 이상	51.1	(51,878)	12.3	56.4	7.8	23.5	100.0(26,526)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3. 가족·사회적응 및 통합육구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가족적응 및 육구는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및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 만족도를 통해서, 사회적응 및 통합육구는 국적취득 및 계획, 사회적 차별 및 모임참여 희망 등을 통해서 파악코자 한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가족관계 불만족도는 배우자 형제자매가 8.5%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배우자 부모 7.5%, 배우자 3.4%, 자녀 2.2% 순으로 나타나서 미미하나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배우자와 자녀에 비해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와 읍면부 거주자 모두 전체와 유사하였고, 배우자와 자녀관계는 지역 간에 차이가 거의 없으며, 배우자 부모와 형제자매 관계 불만족도는 읍면부지역 거주자가 다소 높았다. 성별로도 전체와 비슷하였으며, 남성은 자녀와의 불만족도가, 여성은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불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중장년층에서 가족관계 불만족도가 높은 편이었고, 출신국적별로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 필리핀, 일본 및 기타 국가 출신이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불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거주기간별로는 장기 거주자가 단기 거주자보다 배우자와 배우자 부모 및 형제자매와의 불만족도가 높았고, 이외에 1~2년 미만은 자녀와의 불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는 배우자와의 불만족도가 높았고, 유배우자와 이혼·별거자는 배우자 부모와의, 이혼·별거 및 사별자는 자녀와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불만족도가 높았다. 취업별로는 취업자는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배우자 형제자매와의 불만족도가 높았고, 비취업자는 배우자 부모와의 불만족도가 다소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경우 가족관계 불만족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6-9>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가족관계 불만족률

(단위: %, 명)

구분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분석대상수)
전체	3.4	2.2	7.8	8.5	(255,830)
지역					
동부	3.3	2.1	7.7	8.2	(197,104)
읍·면부	3.5	2.2	8.3	9.4	(58,726)
성					
남자	1.9	3.3	4.6	4.5	(49,840)
여자	3.7	2.0	8.5	9.4	(205,990)
연령					
24세 이하	2.2	1.2	6.4	6.4	(27,246)
25~29세	3.4	1.2	6.8	8.1	(42,284)
30~34세	2.6	1.5	8.5	8.1	(42,649)
35~39세	3.6	1.3	7.2	9.2	(38,523)
40~49세	4.0	3.3	9.0	9.6	(64,621)
50세 이상	3.7	5.5	8.1	8.3	(40,506)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3	2.8	9.3	9.7	(80,779)
고등학교	3.5	1.8	7.3	8.1	(112,809)
대학 이상	3.2	2.0	7.0	7.7	(62,241)
출신국적					
중국(조선족)	3.7	2.1	7.7	8.3	(56,504)
중국(한족 등)	3.0	2.6	7.9	8.9	(80,866)
베트남	3.1	1.8	7.6	8.5	(49,464)
필리핀	4.5	2.1	9.2	9.1	(14,117)
몽골·태국·캄보디아	2.7	2.0	7.8	7.9	(11,585)
일본	5.2	1.9	10.3	9.2	(15,892)
북미·호주·서유럽	2.2	2.1	4.1	4.9	(11,564)
기타	3.2	2.0	8.0	9.0	(15,841)
거주기간					
1년 미만	-	-	-	-	-
1~2년 미만	1.6	3.8	4.3	5.0	(16,615)
2~5년 미만	2.3	1.8	7.0	7.4	(58,820)
5~10년 미만	3.6	2.1	8.1	9.1	(92,706)
10년 이상	4.2	2.2	8.8	9.2	(87,688)
혼인상태					
유배우	3.4	2.1	7.1	7.7	(178,930)
이혼·별거	-	2.3	8.4	59.3	(4,788)
사별	-	6.3	2.1	32.2	(1,380)
취업여부					
취업	3.7	2.7	7.6	8.6	(145,268)
비취업	3.0	1.5	8.0	8.3	(110,561)
월평균가구소득					
50만원 미만	7.6	2.7	16.5	12.4	(7,001)
50~100만원 미만	4.2	2.7	10.0	10.9	(90,356)
100~200만원 미만	-	-	-	-	-
200~300만원 미만	2.9	1.6	7.2	7.7	(86,135)
300만원 이상	2.5	2.2	5.5	6.1	(72,338)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국적미취득률은 52.9%로 과반수를 다소 상회하였고, 향후 국적취득계획은 한국국적 취득이 59.5%로 3/5분포를 보였고, 영주권 취득은 14.6%로 미미하였으며, 계획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경우도 25.9%로 1/4에 해당되었다.

지역별 국적미취득률은 읍면부지역 거주자가 동부지역 거주자보다 9.6%p 높았고, 향후 취득계획은 전체와 유사하였으며, 특히 동부지역 거주자는 영주권 취득을,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한국국적 취득 욕구가 다소 많았고, 계획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태도는 동부지역 거주자가 많았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국적미취득률이 비슷하였고, 남성은 영주권 취득을, 여성은 한국국적 취득계획이 남성보다 2배 많았으며, 계획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비율은 남성이 2배 많았다. 연령별 국적미취득률은 41.6~75.5%로 저연령층에서 높았고, 저연령층은 한국국적 취득을, 고연령층은 영주권 취득 욕구가 높았으며, 계획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태도는 고연령층에서 높았다. 교육수준별 국적미취득률은 일정하지 않았으며, 저학력층은 한국국적을, 고학력층은 영주권 취득 계획이 높았고, 계획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비율도 고학력층에서 높았다. 출신국적별 국적미취득률은 30.1~88.2%로 베트남, 몽골·태국·캄보디아, 일본 및 북미·호주·서유럽 등에서 높았고, 한국국적 취득계획은 중국 한족, 베트남, 필리핀과 몽골·태국·캄보디아에서 높았고, 영주권 취득은 중국 조선족과 한족, 일본과 북미·호주·서유럽 등에서 높았다.

거주기간별로는 34.6~99.0%로 단기 거주자가 높았고, 향후 계획은 단기 거주자는 한국국적 취득을, 장기 거주자는 영주권 취득과 계획이 없거나 모르겠다는 태도가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이혼·별거 및 사별보다 유배우자가 국적미취득이 높았는데 이는 거주 및 결혼기간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이해된다. 향후 계획으로 유배우자는 한국국적과 영주권 취득 욕구가 모두 높은 편이었고, 이외에 이혼·별거자는 영주권 취득 욕구가 높았다. 자녀유무별 국적미취득은 거의 차이가 없었고, 유자녀는 한국국적을, 무자녀는 영주권 취득 욕구가 높았다. 취업별 국적미취득은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12.5%p 높았고, 취업자는 영주권 취득을, 비취업자는 한국국적 취득 욕구가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 국적미취득률은 32.4~58.5%로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서 높았고, 저소득층은 한국국적을, 고소득층은 영주권 취득욕구가 높았다.

〈표 6-10〉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국적미취득률 및 향후 국적취득계획

(단위: %, 명)

구분	국적미취득률		향후 국적취득계획				계(수)
	비율	(분석대상수)	한국국적	영주권	계획 없음	모르겠음	
전체	52.9	(283,224)	59.5	14.6	8.3	17.6	100.0(149,791)
지역							
동부	50.8	(222,305)	56.2	15.7	9.4	18.7	100.0(113,011)
읍·면·부	60.4	(60,919)	69.7	11.1	5.1	14.1	100.0(36,780)
성							
남자	54.0	(57,140)	32.2	21.7	20.7	25.3	100.0(30,882)
여자	52.6	(226,084)	66.6	12.7	5.1	15.6	100.0(108,908)
연령							
24세 이하	75.5	(31,781)	81.0	5.0	1.5	12.5	100.0(23,980)
25~29세	63.9	(45,216)	70.3	10.6	4.4	14.7	100.0(28,886)
30~34세	54.9	(44,714)	57.6	17.1	9.3	16.0	100.0(24,550)
35~39세	44.9	(41,299)	46.4	16.5	14.7	22.4	100.0(18,559)
40~49세	47.0	(70,995)	50.7	18.4	10.2	20.7	100.0(33,351)
50세 이상	41.6	(49,219)	47.8	20.2	12.0	19.9	100.0(20,464)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51.2	(90,210)	74.8	8.7	2.9	13.5	100.0(46,220)
고등학교	47.0	(126,332)	66.4	12.9	4.8	16.0	100.0(59,355)
대학 이상	66.3	(66,681)	34.4	22.8	18.8	24.0	100.0(44,217)
출신국적							
중국(조선족)	47.5	(63,971)	58.4	19.5	5.6	16.5	100.0(30,377)
중국(한족 등)	30.1	(95,586)	64.5	16.5	3.9	15.1	100.0(28,755)
베트남	70.9	(50,133)	83.6	3.8	1.1	11.4	100.0(35,563)
필리핀	53.4	(14,681)	75.8	6.5	2.4	15.3	100.0(7,840)
몽골·태국·캄보디아	77.6	(11,758)	71.6	11.0	4.4	13.00	100.0(9,130)
일본	87.2	917,051)	18.8	29.2	20.9	31.1	100.0(14,860)
북미·호주·서유럽	88.2	(12,796)	13.2	18.7	37.6	30.6	100.0(11,288)
기타	69.5	(17,248)	53.4	15.3	11.0	20.4	100.0(11,980)
거주기간							
1~2년 미만	99.0	(16,616)	71.0	8.5	2.4	18.0	100.0(16,457)
2~5년 미만	88.6	(61,062)	68.8	12.1	5.7	13.3	100.0(54,128)
5~10년 미만	42.4	(103,225)	58.6	17.0	8.0	16.4	100.0(43,800)
10년 이상	34.6	(102,323)	41.2	18.1	15.4	25.3	100.0(35,405)
혼인상태							
유배우	58.0	(255,830)	59.6	14.6	8.3	17.5	100.0(148,304)
이혼·별거	7.9	(12,749)	49.9	18.3	1.6	30.2	100.0(1,010)
사별	9.0	(5,292)	46.3	6.1	25.4	22.2	100.0(477)
미혼	-	(9,353)	-	-	-	-	-
자녀유무							
유자녀	52.7	(161,815)	60.9	13.9	8.1	17.1	100.0(85,243)
무자녀	53.2	(121,409)	57.8	15.4	8.6	18.2	100.0(64,547)
취업여부							
취업	47.6	(163,484)	55.6	16.5	9.7	18.2	100.0(77,863)
비취업	60.1	(119,740)	63.8	12.4	6.8	17.0	100.0(71,928)
월평균가구소득							
50만원 미만	32.4	(10,452)	62.0	5.3	15.5	17.2	100.0(3,389)
50~100만원 미만	47.9	(106,819)	65.0	13.1	4.2	17.7	100.0(51,148)
100~200만원 미만	-	-	-	-	-	-	-
200~300만원 미만	56.4	(90,067)	64.5	14.8	5.6	15.1	100.0(50,830)
300만원 이상	58.5	(75,886)	47.4	16.7	15.6	20.4	100.0(44,425)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적 차별경험률은 41.3%로 2/5 분포를 보였고, 차별 받은 장소로는 직장·일터가 53.0%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다음은 상점·음식점·은행, 거리·동네, 공공기관, 학교·보육시설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자가 읍면부보다 사회적 차별경험이 7.7%p 높았고, 장소는 전체와 유사하였으며, 특히 동부지역 거주자는 공공기관과 직장·일터에서 차별이 다소 많았고,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거리·동네, 상점·음식점·은행, 학교·보육시설에서 차별경험이 많았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사회적 차별경험이 비슷하였으며, 남성은 공공기관과 직장·일터에서, 여성은 거리·동네, 상점·음식점·은행, 학교·보육시설에서 차별경험이 높았다. 연령별 사회적 차별경험은 32.4~46.1%로 50세 이상을 제외하고, 대체로 고연령층에서 높았으며, 저연령층은 거리·동네와 상점·음식점·은행 그리고 학교·보육시설에서, 중년층은 공공기관, 장년층 이상은 직장·일터에서 차별경험이 높은 편이었다. 교육수준별 차별경험은 3.8.7~42.9%로 고학력층에서 높았고, 고학력층은 공공기관과 학교·보육시설에서, 저학력층은 직장·일터에서 차별경험이 많았다. 출신국적별 차별경험은 29.8~45.6%로 중국 조선족과 한족, 필리핀, 기타 국가 출신이 높았으며, 중국 조선족과 한족 출신은 직장·일터에서 차별경험이 많았으며, 중국 조선족과 한족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출신은 거리·동네와 상점·음식점·은행 등에서, 일본, 북미·호주·서유럽 및 기타 국가 출신은 공공기관과 학교·보육시설에서 차별경험이 높았다.

거주기간별 차별경험은 27.0~45.1%로 10년 이상을 제외하고 장기 거주자가 높은 편이었고, 대체로 단기 거주자는 거리·동네와 상점·음식점·은행 등에서 차별경험이 많은 편이었고, 장기 거주자는 공공기관, 직장·일터 및 학교·보육시설에서 많았다. 혼인상태별 차별경험은 31.3~47.4%로 이혼·별거자는 거리·동네와 상점·음식점·은행, 그리고 직장·일터 등에서 차별경험이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사회적 차별경험은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에서 직장·일터의 차별경험이 높았다.

<표 6-11>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장소별 사회적 차별경험률

(단위: %, 명)

구분	사회적 차별경험률		차별 받은 장소					
	비율	(분석대상수)	거리·동네	상점음식점·은행 등	공공기관	직장·일터	학교보육시설	(분석대상수)
전체	41.3	(283,225)	20.3	22.2	14.1	53.0	12.7	(113,954)
지역								
동부	43.0	(222,306)	19.1	21.9	14.4	54.8	13.0	(92,947)
읍·면부	35.3	(60,919)	26.0	23.5	12.5	44.1	11.7	(21,007)
성								
남자	42.2	(57,140)	16.0	17.1	15.9	57.9	9.8	(23,427)
여자	41.1	(226,084)	21.5	23.5	13.6	51.5	13.2	(90,527)
연령								
24세 이하	32.4	(31,781)	27.2	26.2	11.1	43.1	10.5	(10,077)
25~29세	40.6	(45,216)	25.5	27.2	14.0	44.4	13.1	(18,025)
30~34세	43.3	(44,714)	21.8	22.7	17.3	48.5	14.5	(18,837)
35~39세	43.7	(41,299)	21.2	21.9	15.9	49.2	11.1	(17,503)
40~49세	46.1	(70,995)	16.6	21.0	13.3	56.3	14.0	(31,842)
50세 이상	36.9	(49,219)	15.5	16.9	11.9	65.2	7.9	(17,671)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8.7	(90,211)	20.9	23.0	10.2	57.9	10.7	(33,946)
고등학교	42.3	(126,333)	18.5	20.0	13.8	56.1	12.5	(52,062)
대학 이상	42.9	(66,681)	23.2	25.4	19.0	41.4	14.8	(27,948)
출신국적								
중국(조선족)	42.9	(63,971)	18.8	21.6	14.0	58.0	12.4	(26,491)
중국(한족 등)	45.5	(95,586)	13.6	17.1	11.4	62.1	11.5	(42,358)
베트남	35.3	(50,133)	27.0	26.9	11.5	44.7	11.2	(17,309)
필리핀	44.7	(14,680)	30.3	27.0	12.1	37.3	15.9	(6,409)
몽골·태국·캄보디아	40.9	(11,758)	28.8	29.0	14.6	41.4	15.0	(4,700)
일본	29.8	(17,051)	23.1	29.5	25.4	26.5	13.4	(5,006)
북미·호주·서유럽	32.0	(12,797)	31.8	28.9	25.8	27.6	12.7	(4,030)
기타	45.6	(17,248)	26.2	25.8	22.2	42.0	15.8	(7,655)
거주기간								
1년 미만	-	-	-	-	-	-	-	-
1~2년 미만	27.0	(16,615)	22.2	25.9	12.9	34.2	5.9	(4,349)
2~5년 미만	37.7	(61,061)	24.7	26.8	11.5	48.7	13.4	(22,459)
5~10년 미만	45.1	(103,224)	20.3	21.7	13.6	57.5	13.7	(45,111)
10년 이상	41.9	(102,323)	17.8	20.0	15.8	51.1	11.6	(42,032)
혼인상태								
유배우	41.5	(255,830)	20.4	13.6	14.4	51.9	12.7	(2,896)
이혼·별거	47.4	(12,749)	24.1	22.7	11.6	65.3	12.8	(103,415)
사별	35.7	(293)	17.7	16.0	6.6	47.0	6.3	(1,802)
미혼	31.3	(353)	12.3	18.9	12.0	66.7	16.7	(5,840)
월평균가구소득								
50만원 미만	28.3	(10,452)	19.5	22.3	15.6	60.2	14.1	(2,908)
50~100만원 미만	42.0	(106,818)	21.7	22.1	13.3	56.3	14.1	(43,687)
100~200만원 미만	-	-	-	-	-	-	-	-
200~300만원 미만	43.0	(90,067)	19.7	21.0	12.6	53.5	12.1	(37,475)
300만원 이상	40.1	(75,887)	19.3	23.8	16.9	47.0	11.5	(29,883)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모임유형별 참여희망률은 모국인 친구모임이 46.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봉사취미활동, 자녀학교 학부모 모임, 지역주민 모임, 단체 활동 순으로 참여욕구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모두 전체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모든 모임에서 읍면부 지역 거주자의 참여욕구가 동부보다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의 참여희망률은 4.5~35.2%로 전체보다 낮은 반면, 여성은 5.4~53.5%로 전체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에서는 모국인 친구모임의 참여희망이 높은 편이었고, 중년층은 자녀학교 학부모 모임과 단체활동, 중장년층은 봉사취미활동의 참여욕구가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저학력층에서는 모국인 친구모임의 참여희망이 높은 데 비해 고학력층은 자녀학교 학부모 모임, 지역주민모임, 봉사취미 및 단체 활동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욕구를 보였다. 출신국적별로는 베트남, 필리핀, 몽골태국캄보디아 출신은 모국인 친구 모임의 참여희망이 높았고, 이외에 이들 국가와 일본 출신은 자녀학교 학부모 모임과 지역 주민 모임에서 참여희망이 높았고, 필리핀과 일본, 북마호주서유럽 출신은 봉사취미 활동에서 참여욕구가 높았다.

거주기간별로는 단기 거주자는 모국인 친구모임에서 참여욕구가 높았고, 장기 거주자는 자녀학교 학부모 모임, 지역주민 모임 및 봉사취미활동, 단체 활동 등 다양한 모임에서 참여욕구가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는 자녀학교 학부모 모임, 모국인 친구 모임 및 봉사취미활동 등에서 참여욕구가 높았고, 이혼별거 및 사별자는 지역주민 모임에서 높은 참여욕구를 보였다. 취업별로는 비취업자가 취업자보다 단체 활동을 제외한 모든 모임에서 참여욕구가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대체로 고소득층에서 모임에 대한 참여욕구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6-12>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모임유형별 참여희망률

(단위: %, 명)

구분	자녀학교 학부모 모임	모국인 친구모임	지역 주민 모임	봉사·취미활동	단체활동	(분석대상수)
전체	15.5	46.1	12.3	31.5	4.4	(283,224)
지역						
동부	14.4	44.1	11.2	31.4	4.1	(222,305)
읍·면부	19.3	53.5	16.4	31.8	5.4	(60,919)
성						
남자	6.7	35.2	8.9	27.3	4.5	(57,140)
여자	17.7	48.9	13.2	32.6	4.3	(226,084)
연령						
24세 이하	14.8	56.8	11.3	27.8	4.0	(31,781)
25~29세	19.2	56.0	12.3	33.5	4.9	(45,217)
30~34세	22.9	48.6	12.1	34.5	5.1	(44,713)
35~39세	21.3	44.0	13.8	36.1	5.5	(41,299)
40~49세	14.5	43.2	12.3	33.6	3.9	(70,995)
50세 이상	2.3	34.0	11.9	22.7	3.1	(49,21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11.8	47.3	11.7	23.7	3.0	(90,210)
고등학교	16.0	45.9	12.2	30.9	4.1	(126,332)
대학 이상	19.4	44.8	13.3	43.3	6.7	(66,681)
출신국적						
중국(조선족)	13.4	42.7	11.9	28.9	4.4	(63,971)
중국(한족 등)	12.5	38.3	11.2	30.1	3.9	(95,587)
베트남	18.4	61.3	13.0	27.0	3.5	(50,133)
필리핀	25.6	63.4	15.2	32.5	6.1	(14,681)
몽골·태국·캄보디아	19.6	60.5	14.6	29.5	4.6	(11,759)
일본	20.4	44.8	16.1	49.0	6.4	(17,051)
북미·호주·서유럽	13.3	31.7	10.8	46.2	6.2	(12,797)
기타	16.5	45.7	11.3	34.9	4.5	(17,248)
거주기간						
1년 미만	-	-	-	-	-	-
1~2년 미만	7.6	61.6	10.8	26.7	3.9	(16,615)
2~5년 미만	13.8	56.0	12.2	29.5	4.0	(61,061)
5~10년 미만	16.3	44.7	11.6	30.1	3.9	(103,225)
10년 이상	16.9	39.1	13.4	35.0	5.1	(102,323)
혼인상태						
유배우	16.7	48.0	2.5	32.0	4.4	(255,830)
이혼·별거	5.8	33.9	12.9	27.5	4.5	(12,749)
사별	4.0	26.8	12.3	19.6	0.8	(5,292)
미혼	2.1	23.1	8.3	29.8	2.2	(9,353)
취업여부						
취업	13.9	44.8	11.6	30.7	4.5	(163,484)
비취업	17.6	47.9	13.3	32.7	4.2	(119,740)
월평균가구소득						
50만원 미만	6.4	25.5	13.2	22.2	4.3	(10,452)
50~100만원 미만	13.5	46.7	12.1	28.3	3.6	(106,818)
100~200만원 미만	-	-	-	-	-	-
200~300만원 미만	17.2	48.8	12.3	31.2	4.5	(90,067)
300만원 이상	17.4	45.0	12.5	37.7	5.3	(75,886)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4. 사회서비스 이용욕구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서비스 이용욕구는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교육, 한국어·한국사회 적응교육, 통번역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지원, 부모교육,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교육, 언어발달지원·이중언어 교육,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 사회활동 지원, 각종 상담, 일자리 교육 및 일자리 연계 등 10종의 사회서비스의 필요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서비스 필요도는 일자리교육 및 연계가 59.2%로 과반수를 상회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이 51.7%로 높았으며, 이어서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교육, 한국어·한국사회 적응교육과 각종 상담 필요도가 40.6~45.5%로 높은 편이었고, 언어발달지원·이중언어 교육과 임신·출산지원, 부모교육 및 사회활동지원이 35~36.3%로 1/3 분포를 보였고,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교육과 통번역서비스 지원은 26.0%로 1/4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결혼이민자귀화자는 일자리와 자녀 관련 서비스 욕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한국어 교육과 한국사회 적응교육, 각종 상담 등의 욕구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자의 사회서비스 필요도는 전체보다 낮는데 비해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전체보다 높았으며, 특히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교육, 한국어·한국사회 적응교육, 배우자 및 가족교육, 언어발달지원·이중언어 교육,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 등에서 전체보다 욕구가 높았다. 성별로는 남성은 전체보다 사회서비스 필요도가 낮았고, 여성은 전체보다 서비스 욕구가 높았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에서는 사회서비스의 필요도가 높았고, 고연령층에서는 낮았는데 이는 가족생활주기 및 적응단계별 욕구의 차이를 반영한다. 교육수준별로는 차이가 크지 않으나 저학력층에서는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한국어·한국사회 적응교육, 통번역서비스, 배우자 및 가족교육 등에서, 고학력층에서는 임신·출산지원, 부모교육, 이중발달지원·이중언어 교육,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 사회활동지원 등에서 서비스 욕구가 높았다. 출신국적별로는 베트남, 필리핀과 몽골·태국·캄보디아 출신은 타 국가에 비해 모든 서비스의 필요도가 높는데 비해, 중국·조선족과 한족 그리고 북미·호주·서유럽출신은 서비스의 필요도가 낮았다.

거주기간별로는 단기 거주자는 모든 서비스의 필요도가 높은 데 비해, 장기 거주자는 서비스 필요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고,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는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한국어·한국사회 적응교육, 임신·출산지원 및 부모교육, 배우자 및 가족교육,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 사회활동지원, 각종상담 등에서 필요도가 높았다.

<표 6-13>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서비스 필요도

(단위: %, 명)

구분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교육	한국어-한국사회 적응교육	통·번역서비스 지원	임신·출산지원, 부모교육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교육
전체	45.5	43.5	26.0	35.0	26.2
지역					
동부	40.8	39.3	23.7	32.3	23.2
읍·면부	62.5	58.8	34.4	44.9	37.3
성					
남자	24.5	25.9	16.8	21.1	15.0
여자	50.8	47.9	28.3	38.5	29.0
연령					
24세 이하	71.0	71.2	41.3	58.6	42.2
25~29세	65.9	62.8	38.7	54.5	37.7
30~34세	55.7	49.3	29.8	45.3	29.4
35~39세	46.1	41.4	24.3	34.9	25.6
40~49세	33.6	32.4	18.8	21.0	19.3
50세 이상	17.6	20.2	12.7	12.9	12.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48.8	46.7	27.7	34.5	27.9
고등학교	44.8	41.6	24.3	34.4	24.6
대학 이상	42.3	42.6	26.7	37.0	27.1
출신국적					
중국(조선족)	38.7	36.4	20.5	27.7	20.9
중국(한족 등)	27.3	23.5	13.1	23.4	15.6
베트남	80.0	77.3	46.0	59.4	45.1
필리핀	76.3	72.4	47.0	51.5	43.3
몽골·태국·캄보디아	74.4	71.4	44.4	52.2	42.7
일본	37.3	41.0	23.7	33.9	28.4
북미·호주·서유럽	24.9	31.5	26.0	27.5	19.1
기타	48.7	50.2	31.5	36.5	27.1
거주기간					
1~2년 미만	77.1	80.6	52.1	65.2	45.4
2~5년 미만	61.2	61.0	36.8	49.5	34.9
5~10년 미만	45.7	41.9	24.2	33.9	25.8
10년 이상	30.7	28.6	17.1	22.6	18.3
혼인상태					
유배우	48.0	45.6	10.1	37.3	27.7
이혼·별거	26.6	26.8	27.3	15.0	16.0
사별	27.3	25.8	15.6	12.4	9.1
미혼	11.9	18.5	14.7	12.0	9.4
자녀유무					
유자녀	57.4	51.2	29.7	41.6	31.3
무자녀	29.6	33.2	21.0	26.3	19.5
취업여부					
취업	38.8	37.6	22.2	28.9	23.2
비취업	54.6	51.6	31.1	43.3	30.4
월평균가구소득					
50만원 미만	32.7	29.5	32.7	19.8	15.8
50~100만원 미만	47.4	44.9	47.4	34.1	26.8
100~200만원 미만	-	-	-	-	-
200~300만원 미만	49.9	47.6	49.9	38.7	29.0
300만원 이상	39.3	38.5	39.3	34.1	23.5
(분석대상수)	(283,224)	(283,224)	(283,224)	(283,224)	(283,225)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표 계속>

(단위: %, 명)

구분	언어발달 지원이중언어교육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	사회활동 지원	각종 상담	일자리교육, 일자리 연계
전체	36.3	51.7	35.0	40.6	59.2
지역					
동부	33.2	48.0	33.5	39.4	59.1
읍면부	47.7	65.4	40.4	44.8	59.8
성					
남자	23.2	33.0	26.4	35.6	51.6
여자	39.6	56.5	37.2	41.8	61.2
연령					
24세 이하	55.0	67.0	42.9	51.6	60.8
25~29세	53.6	71.4	43.8	47.3	65.3
30~34세	43.8	67.3	38.1	43.1	60.0
35~39세	37.6	58.7	36.8	38.5	57.9
40~49세	26.0	41.9	31.3	36.4	59.7
50세 이상	15.3	18.0	22.7	32.8	52.5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6.8	49.8	34.6	41.0	59.8
고등학교	33.9	53.1	34.5	40.4	61.0
대학 이상	40.3	51.8	36.5	40.4	55.1
출신국적					
중국(조선족)	30.6	42.8	32.3	36.2	59.2
중국(한족 등)	19.6	39.4	28.5	35.1	59.0
베트남	62.2	78.6	45.7	52.8	65.7
필리핀	58.6	75.6	49.5	50.9	71.0
몽골-태국-캄보디아	58.4	72.3	45.9	50.5	65.5
일본	38.4	53.9	34.2	36.4	49.1
북마-호주-서유럽	30.2	30.6	24.6	34.2	32.1
기타	43.2	54.3	38.7	44.8	57.5
거주기간					
1~2년 미만	61.9	60.7	47.5	57.0	64.2
2~5년 미만	49.5	60.1	40.8	49.0	64.2
5~10년 미만	35.5	53.8	35.3	40.1	61.9
10년 이상	25.1	43.2	29.2	33.4	52.8
혼인상태					
유배우	15.4	54.9	36.1	41.6	59.8
이혼-별거	38.4	29.0	27.2	32.9	59.3
사별	15.8	24.8	20.8	34.7	45.6
미혼	18.3	12.0	24.4	26.0	50.8
자녀유무					
유자녀	44.6	71.9	38.8	42.4	61.0
무자녀	25.3	24.9	29.9	38.1	56.9
취업여부					
취업	31.4	46.6	32.5	38.6	59.9
비취업	43.0	58.8	38.4	43.2	58.4
월평균가구소득					
50만원 미만	32.7	28.5	30.4	35.2	48.9
50~100만원 미만	47.4	51.8	36.2	41.4	63.4
100~200만원 미만	-	-	-	-	-
200~300만원 미만	49.9	57.3	36.2	41.4	61.7
300만원 이상	39.3	48.4	32.5	39.1	52.0
(분석대상수)	(283,223)	(283,224)	(283,224)	(283,224)	(283,224)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이에 비해 이혼별거자는 통번역서비스 지원과 언어발달지원이중언어 교육에서 필요도가 높았으며, 일자리교육 및 연계는 유배와 이혼별거자에서 높았다. 자녀유무별로는 유자녀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서비스 필요도가 무자녀보다 높았고, 취업별로는 취업자는 일자리교육과 연계에서 다소 높았고, 미취업자는 모든 서비스에서 서비스 욕구가 높은 편이었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50~100만원 미만과 200~300만원 미만 소득층에서 모든 서비스의 필요도가 높았으며, 5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은 서비스 필요도가 저조하였다.

제3절 시사점

다문화가족의 특성 및 정책욕구를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기간별로 연령 및 교육수준, 출신국적 분포에 차이를 보여 다문화정책 기준으로 생활주기에서 오는 차이 외에 인적자원 특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거주기간별 다문화가족의 인구사회적 특성은 장기거주자의 경우 30~40대가 많았고, 교육수준은 대학이상의 비율이 높았으며, 출신국적은 중국 한족과 조선족이 높은 데 비해, 단기거주자는 20~30대가 많았고, 고등학교 이하의 비율이 높았으며, 출신국적은 베트남이 높은 분포를 보였다.

둘째, 거주기간별로 경제수준, 국적 및 언어 특성 등에 차이를 보여서 관련 지원에 거주기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거주기간별 다문화가족의 경제생활 및 국적언어 특성은 장기 거주자의 경우 월 평균 가구소득이 높았고, 주관적 생활수준도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여부는 거주기간이 2년 미만과 2년 이상 간에 2~3배까지의 차이를 보였으며, 국적취득은 2년 미만은 전무한 편이었고, 5년 미만과 5년 이상 간에 5~6배까지의 차이를 보였다. 한국어 수준은 '상'과 '중'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2년인 경우 1/3 분포, 2~5년 미만은 과반수, 5년 이상은 73~82%로 거주기간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셋째, 거주기간별로 자녀관련 요인은 차이를 보여 다문화가족 지원 기준으로 자녀유무 및 연령 등 가족특성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거주기간별 다문화가족의 혼인 및 가족특성은 전반적으로 결혼유형은 초혼이 재혼보다 2.7~7.3배까지 많으나 장기 거주자의 경우 재혼비율이 점차 높아졌고, 이혼·별거·사별 비율이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은 유자녀 분포가 1/3에 불과

하다가, 2년 이상부터는 과반수를 초과하였으며, 중도입국자녀도 장기 거주자에 소폭으로 늘어났다. 거주기간이 2~10년 미만은 9세 미만 자녀가 많은 편이었고, 나머지는 적은 경향을 보였다.

넷째,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주거생활은 불안정하고 미취업 비율에 비해 취업욕구가 높아서 실효성 높은 주거와 취업서비스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전·월세 비율은 56.8%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일부는 주거환경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취업 비율은 42.3%로 과반수에 근접하였으나 취업의향은 82.2%로 미취업자 중 대다수가 취업을 희망하여 취업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일부 해체가족의 자녀방치가 높았고,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부담과 한국어 활용으로 나타나서 이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자녀의 희망하는 학력수준은 4년제 대학 이상이 4/5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데 비해 교육비 부담으로 모국유학 희망도 높아서 저출산시대에 인구자질을 위해서 학습권 보장이 요구된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자녀방치율은 0.3%로 상당히 미미하였으나, 이혼·별거 및 사별 등 해체가족의 경우 3.1~8.2%로 높았다. 또한 자녀양육상의 어려움은 양육비·교육비 지출 31.5%, 한국어 가르치는 것이 16.0%로 높았다. 또한, 희망하는 자녀의 학력수준은 4년제 대학교 이상이 85.7%로 고학력에 대한 욕구가 높았고, 모국유학 희망률은 45.2%로 거의 과반수에 근접하였는데, 과반수 이상이 부모의 모국 언어·문화를 배우기 위해서이나 한국에서 교육비가 많이 들어서도 16.0%로 적지 않아서 교육비부담이 높음을 엿볼 수 있다.

여섯째, 가족관계는 혼인상태 및 거주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고, 국적취득이나 사회참여에서도 부정적인 성향이 나타나서 사회적응 및 통합을 위해 특성별 사례관리 접근이 요구된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가족관계 불만족도는 미미하나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배우자와 자녀에 비해 나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장기거주 및 해체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불만족도가 높았다. 한편,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국적미취득률은 52.9%로 과반수를 다소 상회하였고, 향후 국적취득계획은 한국국적 취득이 59.5%로 과반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영주권 취득이나 무계획이나 모른다는 응답도 많았다. 모임유형별 참여희망률은 모국인 친구모임이 46.1%로 높았고, 나머지 봉사취미활동, 자녀학교 학부모 모임, 지역주민 모임, 단체 활동 등은 4.4~31.5%로 소극적인 참여욕구를 보였다.



제7장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수혜현황 및 사각지대 분석

제1절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서비스 수혜현황

제2절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사각지대

제3절 시사점

7

다문화가족의 서비스별 < 수혜현황 및 사각지대 분석 <

제1절 다문화가족의 특성별 서비스 수혜현황

1. 공공부조제도

공공부조제도의 수혜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의료보호를 중심으로 인구사회적 및 가족특성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인구사회적 특성별 서비스 수혜현황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공공부조제도의 수혜현황은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가 각각 5.0%로 상당히 미미하였다.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이 동부지역 거주자는 5.3%로 읍면부지역 거주자의 4.1%보다 1.2%p 높았다. 의료보호 수혜률은 동부와 읍면부 거주자가 5.2%와 4.2%로 동부지역 거주자가 1.0%p 높아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성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높았으나 거의 차이가 없었고, 의료보호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2.6~13.0%로 대체로 고연령층에서 높았으며, 의료보호는 2.5~12.6%로 고연령층에서 높아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출신국적별로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 필리핀 및 기타 국가 출신이 타 국가 출신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 수혜률이 높았고,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저소득층에서 공공부조 수혜률이 높았으며, 특히 50만원 미만인 50~100만원 미만보다 6배 높았다.

<표 7-1>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인구사회적 특성별 공공부조 수혜현황

(단위: %, 명)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	(분석대상수)
전체	5.0	5.0	(283,224)
지역			
동부	5.3	5.2	(222,305)
읍·면부	4.1	4.2	(60,919)
성			
남자	4.8	4.8	(57,140)
여자	5.1	5.0	(226,084)
연령			
24세 이하	2.6	2.5	(31,781)
25~29세	3.1	2.7	(45,216)
30~34세	2.7	2.8	(44,713)
35~39세	2.7	2.8	(41,299)
40~49세	4.5	4.7	(70,995)
50세 이상	13.0	12.6	(49,219)
출신국적			
중국(조선족)	6.5	6.5	(63,971)
중국(한족 등)	5.6	5.4	(95,586)
베트남	3.6	3.1	(50,133)
필리핀	5.7	6.4	(14,680)
몽골·태국·캄보디아	3.7	3.3	(11,758)
일본	3.9	4.3	(17,050)
북미·호주·서유럽	0.3	0.7	(12,796)
기타	4.9	5.3	(17,248)
월평균가구소득			
50만원 미만	46.1	42.9	(10,452)
50~100만원 미만	7.7	7.6	(106,818)
100~200만원 미만	-	-	-
200~300만원 미만	1.0	1.1	(90,067)
300만원 이상	0.2	0.4	(75,887)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나. 가족특성별 서비스 수혜현황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특성별로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자녀유무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 모두 무자녀가 유자녀보다 2.6%p 수혜율이 높았다. 중도입국자녀유무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는 중도입국자녀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다소 높았으나 거의 차이가 없었고, 의료보호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자녀연령별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의료보호 모두 9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각각 2.7%p와 2.5%p 높았다.

<표 7-2> 가족특성별 공공부조 수혜현황

(단위: %, 명)

구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보호	(분석대상수)
전체	5.0	5.0	(266,548)
자녀유무			
유자녀	4.0	3.9	(156,486)
무자녀	6.6	6.5	(110,062)
중도입국자녀유무			
중도입국자녀 있음	5.6	4.8	(18,928)
중도입국자녀 없음	5.0	4.9	(247,621)
자녀연령			
9세 미만 자녀 있음	3.6	3.6	(121,334)
9세 미만 자녀 없음	6.3	6.1	(145,214)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2. 교육서비스

가. 인구사회적 특성별 교육서비스 수혜현황

결혼이민자귀화자의 교육서비스는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한국어 또는 한국사회 적응교육,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교육, 일자리교육 연계 등이 포함된다.

교육서비스 수혜현황은 한국어 또는 한국사회 적응교육은 27.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교육이 20.2%로 높은 편이었으며, 일자리교육 연계와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교육은 7.1%와 3.0%로 미미하였다.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5.4~42.2%로 동부지역 거주자의 2.3~22.8%보다 수혜율이 높은 편이었고, 공통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한 교육과 한국어 또는 한국사회적응교육이 높은 데 비해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교육 그리고 일자리 교육은 수혜율이 상당히 저조하였다. 성별로는 여성결혼이민자귀화자의 수혜율은 3.6~32.0%로 남성보다 13배까지 높았고 교육서비스별로는 전체와 유사하였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일수록 서비스 수혜율이 높은 편이었고 교육서비스별로는 전체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가 이혼·별거사별자보다 대체로 높은 편이었고, 교육서비스별로도 전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표 7-3> 인구사회적 특성별 교육서비스 수혜현황

(단위: %, 명)

구분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한국어 또는 한국사회 적응 교육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교육	일자리교육연계	(분석대상수)
전체	20.2	27.0	3.0	7.1	(283,224)
지역					
동부	14.6	22.8	2.3	7.3	(222,305)
읍·면부	40.7	42.2	5.4	6.2	(60,919)
성					
남자	1.9	7.3	0.6	5.8	(57,140)
여자	24.8	32.0	3.6	7.4	(226,084)
연령					
24세 이하	43.6	54.6	6.6	5.6	(31,781)
25~29세	36.8	45.7	4.9	6.3	(45,216)
30~34세	25.2	30.7	3.4	6.8	(44,713)
25~39세	16.1	22.6	2.3	7.1	(41,299)
40~49세	10.8	16.7	1.7	8.7	(70,995)
50세 이상	2.3	7.1	0.8	6.6	(49,219)
혼인상태					
유배우	22.0	29.1	3.2	7.1	(255,830)
이혼·별거	3.8	5.6	1.5	7.3	(12,749)
사별	6.3	11.6	0.5	4.7	(5,293)
미혼	1.4	7.9	0.3	7.6	(9,35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4	29.9	3.7	6.6	(90,210)
고등학교	19.2	25.5	2.6	7.2	(126,332)
대학 이상	16.3	25.8	2.7	7.4	(66,681)
출신국적					
중국(조선족)	13.0	21.3	2.1	7.3	(63,971)
중국(한족 등)	4.7	7.5	0.6	7.7	(95,586)
베트남	50.9	59.4	6.8	5.6	(50,133)
필리핀	48.1	55.2	5.8	10.7	(14,680)
몽골·태국·캄보디아	44.5	52.6	6.8	8.3	(11,758)
일본	19.1	32.1	4.3	8.2	(17,050)
북미·호주·서유럽	3.0	8.0	0.9	1.2	(12,796)
기타	16.9	29.3	3.2	6.2	(17,248)
주관적 생활수준					
상	21.3	30.5	3.6	6.4	(95,990)
중	22.6	29.3	3.5	6.8	(133,865)
하	16.2	21.9	1.9	7.8	(53,368)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교육수준별로는 대체로 저학력층에서 높은 편이었고 서비스별로는 전체와 비슷한 분포를 보였으며, 출신국적별로는 베트남, 필리핀, 몽골·태국·캄보디아 출신은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과 한국어·한국사회 적응 교육은 전체보다 높았고, 미미하나 배우

자 및 배우자 가족교육도 전체보다 높은 편이었다. 이외에 일본출신은 한국어·한국사회 적응교육 수혜가 높았고, 일자리교육연계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 필리핀, 몽골·태국·캄보디아, 일본 출신이 높은 편이었다. 주관적 생활수준별로는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 교육수혜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교육서비스별로는 전체와 유사하였다.

나.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통합수준별 교육서비스 수혜현황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통합수준별로 보면, 국적취득별로는 국적취득자가 2.1~17.7%, 국적미취득자가 3.8~35.3%로 국적미취득자가 국적취득자보다 교육수혜율이 높았고, 교육서비스별로는 전체와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한국어수준별로는 한국어 수준이 낮은 경우 교육수혜가 높은 편이었고, 교육서비스별로는 전체와 비슷하여서 한국어 수준이 낮은 경우 교육욕구가 높음을 반영하며, 한국어 수준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7-4> 한국사회 적응 및 통합수준별 교육서비스 수혜현황

(단위: %)

구분	가정방문을 통한 각종 교육	한국어 또는 한국사회 적응 교육	배우자 및 배우자 가족교육	일자리교육연계	(분석대상수)
전체	20.2	27.0	3.0	7.1	(283,224)
국적취득 여부					
취득	14.7	17.7	2.1	7.5	(133,433)
미취득	25.0	35.3	3.8	6.7	(149,791)
한국어수준					
상	7.9	10.9	1.1	1.7	(125,685)
중	29.0	38.4	4.5	5.8	(70,284)
하	30.8	41.0	4.5	5.3	(87,225)
취업경험 유무					
취업경험 있음	15.3	21.5	2.3	7.7	(163,484)
취업경험 없음	26.9	34.5	3.9	6.3	(119,739)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취업경험유무별로는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3.9~34.5%로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2.3~21.5%보다 높았고, 교육서비스별로는 전체와 유사하였는데 이는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 단기 거주자로 초기 적응에 필요한 교육욕구가 높을 가능성을 반영한다.

3. 지원서비스

가. 인구사회적 특성별 지원서비스 수혜현황

결혼이민자귀화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지원서비스는 통역서비스 지원, 임신·출산 지원, 언어발달지원,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 사회활동 지원, 각종 상담 등이 중심이다.

지원서비스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임신·출산지원이 10.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이 8.9%로 많았고, 각종상담, 언어발달지원, 통·번역서비스 지원, 사회활동 지원 순이었다.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지원서비스 수혜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 거주자가 4.2~12.8%로 동부지역 거주자의 2.2~8.3%보다 각종 지원을 수혜하는 비율이 높았고, 성별로는 여성이 3.1~12.5%로 남성의 0.7~4.3%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별로는 대체로 저연령층의 수혜가 높은 편이나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은 자녀양육기인 20대 후반과 30대 연령층에서 높은 특성을 보였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는 이혼·별거·사별자보다 통·번역서비스, 임신·출산, 언어발달, 그리고 자녀생활 및 학습, 사회활동 지원이 높았고, 사별자는 각종 상담이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지원유형별로 차이를 보여 저학력층은 임신·출산지원, 고학력층은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에서 높았고 나머지는 차이가 없었다. 출신국적별로는 타 국적에 비해 베트남, 필리핀, 몽골·태국·캄보디아 등에서 임신·출산지원과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이 높았고, 주관적 생활수준별로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7-5> 인구사회적 특성별 지원서비스 수혜현황

(단위: %, 명)

구분	통·번역서비스 지원	임산·출산 지원	언어발달 지원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	사회활동 지원	각종 상담	(분석대상수)
전체	2.9	10.3	3.8	8.9	2.6	4.6	(283,224)
지역							
동부	2.4	8.3	3.2	7.8	2.2	4.2	(222,305)
읍·면부	4.4	17.6	6.0	12.8	4.2	6.2	(60,919)
성							
남자	1.2	1.8	0.7	4.3	0.8	3.4	(57,140)
여자	3.3	12.5	4.6	10.0	3.1	4.9	(226,084)
연령							
24세 이하	6.1	21.8	6.7	6.0	3.4	5.1	(31,781)
25~29세	5.1	19.4	7.0	10.1	4.3	5.2	(45,216)
30~34세	3.6	16.2	4.6	12.8	2.8	4.6	(44,713)
35~39세	2.2	9.0	3.4	13.1	3.0	3.9	(41,299)
40~49세	1.5	3.6	2.5	9.2	1.8	4.4	(70,995)
50세 이상	0.6	0.2	0.6	1.9	1.2	4.7	(49,219)
혼인상태							
유배우	3.1	11.4	4.1	9.5	2.8	4.7	(255,830)
이혼·별거	0.8	1.1	0.6	5.9	0.9	3.4	(12,749)
사별	0.6	1.3	0.8	3.4	0.2	7.1	(5,293)
미혼	0.5		1.2	0.1	0.9	4.1	(9,35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1	11.6	4.1	7.9	2.5	4.8	(90,210)
고등학교	2.7	9.9	3.4	8.7	2.4	4.7	(126,332)
대학 이상	3.0	9.4	4.1	10.4	3.1	4.3	(66,681)
출신국적							
중국(조선족)	1.8	7.2	2.9	6.1	2.3	3.6	(63,971)
중국(한족 등)	0.4	4.9	0.9	6.3	1.2	4.2	(95,586)
베트남	7.5	23.6	8.3	11.9	4.2	5.9	(50,133)
필리핀	5.5	19.1	8.8	15.8	5.2	7.6	(14,680)
몽골·태국·캄보디아	6.0	18.5	8.9	12.8	5.0	6.1	(11,758)
일본	2.1	7.6	3.9	20.1	3.7	4.0	(17,050)
북미·호주·서유럽	2.7	3.0	1.4	3.6	1.2	2.4	(12,796)
기타	3.0	8.7	4.3	8.5	3.1	6.1	(17,248)
주관적 생활수준							
상	3.5	11.9	4.0	7.7	3.3	5.5	(95,990)
중	3.1	10.5	4.3	9.1	2.7	4.6	(133,865)
하	2.2	9.2	3.0	9.20	2.1	4.2	(53,368)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나.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통합수준별 지원서비스 수혜현황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통합수준별로 보면, 국적취득별로는 국적미취득자가 국적취득자보다 각종 지원서비스 수혜가 높았고, 한국어 수준별로는 한국어 수준이 ‘상’보다 ‘중’과 ‘하’인 경우 각종 지원서비스 수혜가 높은 편이었으며, 취업경험 유무별로는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가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서비스 수혜를 받는 경향이 높았다.

<표 7-6> 한국사회 적응 및 통합수준별 지원서비스 수혜현황

(단위: %, 명)

구분	통번역서비스 지원	임신·출산 지원	언어발달 지원	자녀생활 및 학습지원	사회활동 지원	각종 상담	(분석대상수)
전체	2.9	10.3	3.8	8.9	2.6	4.6	(283,224)
국적취득 여부							
취득	1.7	7.9	2.9	10.3	2.2	4.6	(133,433)
미취득	3.9	12.5	4.6	7.6	3.0	4.7	(149,791)
한국어수준							
상	0.9	5.8	1.7	7.1	1.9	3.8	(125,685)
중	4.1	14.5	5.8	11.9	3.4	5.6	(70,284)
하	4.7	13.6	5.3	9.0	3.0	5.0	(87,225)
취업경험 유무							
취업경험 있음	2.3	6.5	3.1	8.7	2.3	4.4	(163,484)
취업경험 없음	3.6	15.6	4.8	9.1	3.0	4.9	(119,739)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재구성

4. 다문화 인프라 인지도 및 이용 수준

가. 인구사회적 특성별 다문화 인지도 및 인프라 이용수준

다문화 인프라에 대한 인지도는 20.6~88.9%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주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높은 데 비해, 건강가정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정부지원 여성센터의 인지도는 저조하였다.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 거주자가 21.1~85.1%로 동부의 20.3~89.1%보다 대체로 인지도가 높았으나, 고용센터와 외국인 상담소는 동부지역 거주자가 다소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이 21.8~89.4%로 남성의 15.3~86.9%보다 인지도가 높았으며, 고용센터와 외국인 상담소는 남성이 약간 높았다. 연령별로는 인

지도가 차이를 보여 대체로 저연령층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고, 고연령층은 주민센터와 정부지원 여성센터 인지도가 높았으며, 30대~40대 중장년층은 사회복지관과 외국인 상담소 등 민간단체가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그리고 정부지원 여성센터와 외국인 상담소 등 민간단체의 인지도가 높았고, 이혼·별거사별자는 주민센터와 사회복지관이 높았으며, 이혼·별거자는 고용센터 인지도도 높았다.

교육수준별로는 고학력층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정부지원 여성센터, 그리고 고용센터, 사회복지관 및 외국인 상담소가 높았고, 나머지는 일정하지 않았다. 출신국적별로는 베트남, 필리핀, 몽골·태국·캄보디아 및 일본 출신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인지도가 높았고, 중국 조선족과 한족은 주민센터, 정부지원 여성센터, 그리고 고용센터와 사회복지관, 외국인 상담소에서 인지도가 높은 편이었다. 이외에 필리핀, 일본과 기타 국가 출신은 정부지원 여성센터, 외국인 상담소 및 사회복지관에서, 몽골·태국·캄보디아와 북미·호주·서유럽 출신도 정부지원 여성센터와 외국인 상담소에서 인지도가 높았다. 주관적 생활수준별로는 대체로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 고용센터를 제외하고 다문화 인프라 인지도가 높았으며, 생활수준이 낮은 경우는 고용센터 인지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7-7> 인구사회적 특성별 다문화 인프라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주민센터	정부지원 여성센터	고용센터	사회복지관	외국인 상담소 등 민간단체	(분석대상 수)
전체	71.4	25.7	25.9	88.9	20.6	45.3	47.8	28.7	(283,224)
지역									
동부	67.7	24.2	24.7	89.1	20.3	48.2	47.8	29.1	(222,305)
읍·면부	85.1	31.7	29.9	88.2	21.1	34.8	48.0	27.3	(60,919)
성									
남자	52.3	18.7	15.5	86.9	15.3	54.6	43.8	29.2	(57,140)
여자	76.3	27.6	28.4	89.4	21.8	43.0	48.8	28.5	(226,084)
연령									
24세 이하	81.0	26.2	29.0	81.5	17.0	25.4	39.6	23.2	(31,781)
25~29세	79.9	29.5	28.8	86.6	19.9	35.1	44.1	26.7	(45,216)
30~34세	77.0	29.3	31.2	89.9	24.6	46.5	50.1	32.4	(44,713)
35~39세	76.7	29.5	31.2	90.8	24.9	54.1	53.2	33.9	(41,299)
40~49세	67.1	24.5	24.4	90.8	21.3	54.4	50.6	30.9	(70,995)
50세 이상	54.2	17.6	13.7	90.8	14.8	45.9	46.0	23.2	(49,219)
혼인상태									
유배우	73.2	26.6	26.8	88.6	20.8	44.5	47.6	29.0	(255,830)
이혼·별거	57.1	18.1	16.8	93.2	16.9	55.9	48.4	27.2	(12,749)
사별	49.8	15.0	15.2	94.0	15.4	32.6	49.7	19.8	(5,293)
미혼	53.4	21.0	108.0	89.2	20.5	59.8	51.1	27.6	(9,35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68.6	21.2	19.8	88.2	14.5	36.1	43.6	21.1	(90,210)
고등학교	72.9	27.0	26.9	90.3	21.9	49.4	48.5	30.5	(126,332)
대학 이상	72.4	29.5	31.9	87.2	26.1	50.0	52.3	35.6	(66,681)
출신국적									
중국(조선족)	69.3	25.5	25.1	90.7	21.7	46.6	49.0	28.6	(63,971)
중국(한족 등)	64.9	21.9	21.0	93.4	19.5	59.4	50.1	28.8	(95,586)
베트남	84.8	27.2	30.1	83.5	16.5	23.5	39.6	22.2	(50,133)
필리핀	89.2	40.0	36.9	86.9	28.1	36.8	51.1	32.9	(14,680)
몽골·태국·캄보디아	85.9	31.5	31.9	86.9	20.7	32.7	43.4	29.0	(11,758)
일본	70.8	26.6	29.0	87.2	22.3	44.8	58.4	33.1	(17,050)
북마호주·서유럽	48.3	23.5	23.3	78.5	21.8	40.3	43.8	32.5	(12,796)
기타	69.2	28.7	28.0	85.9	24.0	45.3	47.8	35.7	(17,248)
주관적 생활수준									
상	73.5	25.9	27.1	91.4	21.1	43.8	50.1	29.1	(95,990)
중	72.8	27.1	27.5	87.7	21.6	44.8	46.9	30.4	(133,865)
하	68.4	23.8	22.8	87.5	18.8	46.7	47.8	26.0	(53,368)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재구성

다문화 인프라에 대한 이용수준은 8~69%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주민센터가 6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34%,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33%, 고용센터 16%, 사회복지관 15% 순으로 높았으며, 나머지는 10% 미만으로 저조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인지도에 비해 절반정도 이용하였고, 고용센터도 1/3 정도가 이용하였다.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자는 주민센터 이용이 높은 편이었고, 읍면부지역 거주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리고 사회복지관 등의 이용이 높았다. 성별로는 남녀 모두 주민센터 이용이 높았고, 이외에 남성은 고용센터를, 여성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 이용이 높았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6배 높아서 남성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연령별로는 저연령층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 이용이 높았고, 고연령층인 경우 주민센터 이용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혼인상태별로는 모두 주민센터 이용이 높았고, 이외에 유배우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혼·별거자는 고용센터를, 사별자는 사회복지관을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해체가족의 경우 주민센터 이용이 높았는데, 이는 복지수혜 대상으로 인한 행정에서 오는 영향으로 이해된다.

교육수준별로는 전체와 유사하였고, 출신국적별로는 모두 주민센터 이용이 가장 높았으며, 이외에 중국·조선족과 한족은 고용센터를, 베트남, 필리핀, 몽골·태국·캄보디아 출신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 이용이 높은 편이었다. 주관적 생활수준별로는 '상'층인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 이용이 높았고, '하'층인 경우 주민센터와 고용센터 이용이 높은 편이었다.

<표 7-8> 인구사회적 특성별 다문화 인프라 이용수준

(단위: %, 명)

구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주민센터	정부지원 여성센터	고용센터	사회복지관	외국인 상담소 등 민간단체	(분석대상 수)
전체	33.9	8.3	32.7	68.6	3.8	16.0	14.7	4.7	(283,224)
지역									
동부	27.9	7.4	3.5	70.0	3.8	17.6	13.7	4.7	(222,305)
읍·면부	55.9	11.8	4.2	63.3	3.6	10.1	18.2	4.7	(60,919)
성									
남자	7.1	3.0	1.0	67.7	1.2	20.6	8.3	3.7	(57,140)
여자	40.7	9.7	4.3	68.8	4.4	14.8	16.3	4.9	(226,084)
연령									
24세 이하	59.3	9.6	5.1	51.7	4.0	6.4	15.7	4.0	(31,781)
25~29세	52.1	11.9	5.2	61.9	4.1	11.8	17.3	6.0	(45,216)
30~34세	41.1	9.7	3.9	68.3	5.5	16.4	16.2	5.6	(44,713)
35~39세	33.5	8.7	3.9	72.2	3.4	18.6	14.0	4.3	(41,299)
40~49세	23.8	7.2	3.1	73.8	3.9	20.3	13.6	4.5	(70,995)
50세 이상	9.3	4.3	1.7	75.4	1.8	17.1	12.4	3.7	(49,219)
혼인상태									
유배우	36.4	8.8	3.8	67.6	3.9	15.6	14.9	4.8	(255,830)
이혼·별거	12.3	5.7	4.0	82.5	3.5	22.3	14.5	4.4	(12,749)
사별	16.5	6.4	3.2	81.0	2.8	10.8	20.8	3.6	(5,293)
미혼	5.6	1.2	0.8	70.2	1.5	19.7	5.5	2.7	(9,35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6.2	7.0	3.4	66.7	2.8	12.6	14.9	3.7	(90,210)
고등학교	33.1	8.6	3.5	71.2	4.1	17.8	14.2	4.9	(126,332)
대학 이상	32.4	9.6	4.3	66.1	4.5	17.1	15.2	5.6	(66,681)
출신국적									
중국(조선족)	28.6	7.5	2.8	72.2	3.9	16.6	13.5	4.1	(63,971)
중국(한족 등)	15.6	4.7	2.5	78.6	3.0	22.9	10.8	3.4	(95,586)
베트남	66.0	11.5	6.3	55.3	4.4	7.5	19.5	5.6	(50,133)
필리핀	69.1	21.5	8.6	63.1	8.4	13.1	24.9	9.6	(14,680)
몽골·태국·캄보디아	64.0	13.7	6.2	62.1	5.0	13.0	20.4	7.7	(11,758)
일본	36.6	10.6	2.9	65.0	2.8	11.8	20.3	4.4	(17,050)
북마호주서유럽	4.5	2.0	0.6	52.1	1.0	5.7	6.0	2.7	(12,796)
기타	31.0	9.7	2.5	63.1	3.6	16.0	15.1	6.7	(17,248)
주관적 생활수준									
상	35.3	7.4	3.4	65.1	3.2	13.9	15.9	4.7	(95,990)
중	36.5	9.2	4.1	67.2	4.1	15.5	14.5	5.0	(133,865)
하	29.6	7.6	3.2	72.4	3.6	17.8	14.3	4.2	(53,368)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재구성

나. 한국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수준별 다문화 인지도 및 인프라 이용수준

한국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수준별 다문화인프라 인지도는 대체로 국적취득자가 미취득자보다 높은 편이었으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미취득자인 경우 인지도가 다소 높아서 욕구에서 오는 차이로 생각된다. 한국어수준도 높은 경우 다문화인프라 인지도가 높았으며 한국어 수준이 중간인 경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센터 및 이주여성긴급센터 등의 인지도가 높았다. 취업경험유무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고용센터 인지도는 취업경험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표 7-9> 사회적응 및 통합수준별 다문화인프라 인지도

(단위: %, 명)

구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주민센터	정부지원여성센터	고용센터	사회복지관	외국인상담소 등 민간단체	(분석대상수)
전체	71.4	25.7	25.9	88.9	20.6	45.3	47.8	28.7	(283,224)
국적취득 여부									
취득	69.2	26.2	25.7	93.1	22.2	54.1	53.7	30.0	(133,433)
미취득	73.4	25.3	26.0	85.2	19.0	37.4	42.6	27.6	(149,791)
한국어수준									
상	66.9	24.5	25.0	92.9	22.5	57.0	54.1	31.1	(125,685)
중	77.3	30.1	29.7	89.4	21.0	42.4	47.0	30.2	(70,284)
하	73.2	24.2	24.0	82.8	17.3	30.7	39.5	24.0	(87,225)
취업경험 유무									
취업경험 있음	68.7	24.9	24.4	90.3	20.8	51.2	48.2	29.7	(163,484)
취업경험 없음	75.1	26.9	27.7	87.1	20.1	37.2	47.4	27.4	(119,739)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재구성

한국 사회적응 및 사회통합수준별 다문화인프라 이용수준은 인지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국적취득별로도 모두 주민센터 이용이 높았으며, 이외에 국적취득자는 고용센터 이용이 높았고, 미취득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이 높았다. 한국어수준별로도 주민센터 이용이 높았으며, 특히 한국어 수준과 비례하여 한국어수준이 '상'인 경우 주민센터 이용이 가장 높았고, 고용센터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한국어수준이 '중'과 '하'인 경우 '상'보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사회복지관 이용이 높았는데 이는

한국어 수준이 낮은 초기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서비스 제공 때문으로 이해된다. 취업경험유무별로도 모두 주민센터 이용이 높았고, 특히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더 높았으며, 이외에 고용센터 이용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표 7-10> 사회적응 및 통합수준별 다문화인프라 이용수준

(단위: %, 명)

구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주민센터	정부지원여성센터	고용센터	사회복지관	외국인상담소 등 민간단체	(분석대상수)
전체	33.9	8.3	32.7	68.6	3.8	16.0	14.7	4.7	(283,224)
국적취득 여부									
취득	26.8	8.0	3.4	78.9	3.8	20.3	15.5	4.1	(133,433)
미취득	40.3	8.6	3.9	59.4	3.7	12.1	13.9	5.2	(149,791)
한국어수준									
상	19.7	5.7	2.8	77.7	3.6	20.5	13.4	4.1	(125,685)
중	45.3	12.0	5.0	67.7	4.5	15.4	16.6	5.6	(70,284)
하	45.3	9.2	3.9	56.1	3.4	9.9	15.0	4.9	(87,225)
취업경험 유무									
취업경험 있음	27.8	7.3	3.3	71.2	3.4	19.0	13.1	4.7	(163,484)
취업경험 없음	42.4	9.7	4.2	65.0	4.3	11.9	16.8	4.6	(119,739)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재구성

5. 사회적 네트워크

가. 인구사회적 특성별 사회적 네트워크 현황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는 것부터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비율은 63~82%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녀교육 관련하여 네트워크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자리 관련, 어려운 일 관련 순으로 높았고, 여가취미생활 관련 네트워크가 가장 낮았다.

인구사회적 특성별로 보면, 지역별로는 읍·면부지역 거주자의 경우, 젊은 연령층의 경우, 유배우자인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출신국적이 일본, 북미·호주서유럽인 경우 주관적 생활수준이 '상'인 경우 대체로 사회적 네트워크가 높은 편이었다. 이는 동부지역 거주자, 고연령층, 이혼·별거·사별자,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중국 조선족과

한족 출신, 주관적 생활수준이 낮은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가 미흡함을 의미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7-11> 인구사회적 특성별 사회적 네트워크 현황

(단위: %, 명)

구분	자신·집안 어려운 일 의논하는 사람	일자리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자녀교육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하는 사람	(분석대상수)
전체	78.3	80.3	82.2	62.7	(283,224)
지역					
동부	78.0	80.3	82.7	62.2	(222,305)
읍·면부	79.1	80.4	80.2	64.3	(60,919)
성					
남자	75.7	82.1	85.5	65.4	(57,140)
여자	78.9	79.9	81.4	62.0	(226,084)
연령					
24세 이하	80.9	81.7	85.1	65.2	(31,781)
25~29세	80.2	81.9	83.3	66.6	(45,216)
30~34세	80.7	81.1	82.9	68.2	(44,713)
35~39세	78.4	81.2	82.2	65.1	(41,299)
40~49세	78.7	77.8	75.9	61.2	(70,995)
50세 이상	71.8	80.5	87.8	52.5	(49,219)
혼인상태					
유배우	78.8	80.9	81.4	63.3	(255,830)
이혼·별거	68.6	67.4	82.3	48.2	(12,749)
사별	69.4	81.4	89.3	45.1	(5,293)
미혼	81.6	83.1		76.1	(9,353)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75.1	81.5	80.4	55.4	(90,210)
고등학교	78.1	81.6	80.9	61.4	(126,332)
대학 이상	82.8	85.3	87.1	75.0	(66,681)
출신국적					
중국(조선족)	78.0	82.1	79.6	59.8	(63,971)
중국(한족 등)	73.7	77.8	81.6	55.7	(95,586)
베트남	78.5	83.9	79.8	62.0	(50,133)
필리핀	83.7	87.1	83.5	70.2	(14,680)
몽골태국캄보디아	80.3	82.5	79.4	62.6	(11,758)
일본	89.5	91.3	93.9	80.7	(17,050)
북마·호주·서유럽	86.9	92.7	91.9	90.2	(12,796)
기타	80.3	84.6	83.8	69.3	(17,248)
주관적 생활수준					
상	81.4	85.4	84.2	69.8	(95,990)
중	79.7	83.1	82.4	65.7	(133,865)
하	74.5	79.8	80.9	54.5	(53,368)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재구성

나. 한국사회 적응 및 사회통합수준별 사회적 네트워크 현황

한국사회 적응 및 통합수준별로는 국적취득자는 자녀교육과 관련하여서만 사회적 네트워크가 높았고, 어려운 일, 일자리, 그리고 여가취미생활과 관련하여서는 국적 미취득자인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가 높았다. 또한 한국어수준이 중간인 경우 사회적 네트워크가 높은 편이었고, 한국어 수준이 ‘하’인 경우는 어려운 일 관련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낮은 편이었다. 그리고 취업경험자는 어려운 일 관련해서만 사회적 네트워크가 높았고, 나머지는 무경험자인 경우 오히려 사회적 네트워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2> 한국사회 적응 및 통합수준별 지원서비스 수혜현황

(단위: %, 명)

구분	자산집안 어려운 일 의논하는 사람	일자리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자녀교육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하는 사람	(분석대상수)
전체	78.3	80.3	82.2	62.7	(283,224)
국적취득 여부					
취득	75.4	80.0	83.0	59.7	(133,433)
미취득	80.8	84.6	81.5	65.4	(149,791)
한국어수준					
상	78.2	81.6	83.3	62.6	(125,685)
중	78.2	83.9	81.5	64.5	(70,284)
하	78.4	82.5	81.2	61.4	(87,225)
취업경험 유무					
취업경험 있음	78.6	80.5	81.6	62.2	(163,484)
취업경험 없음	77.8	85.1	83.0	63.3	(119,739)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재구성

제2절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사각지대

1. 공공부조제도 사각지대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로 공공부조 사각지대를 빈곤경험율과 비수급 비율을 통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빈곤율은 30.0%로 10명 중 3명은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급 비율은 83%로 일부는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짐작된다. 지역별로는 동부가 읍면부보다 빈곤경험률이 다소 높았으나 이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비율이 높아서 동부지역 거주자의 사각지대 가능성이 예상된다.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인 중장년층에서, 출신국적별로는 중국 조선족과 한족, 필리핀, 몽골, 태국, 캄보디아, 일본 출신의 경우 빈곤경험이 높은 편인데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비율이 높아서 사각지대 가능성이 예상된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50만원 미만보다 50~100만원 미만의 경우, 이혼·별거자인 경우, 국내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빈곤경험에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비율이 높은 편으로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3>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공공부조 사각지대

(단위: %, 명)

구분	빈곤율	비수급비율	구분	빈곤율	비수급비율
전체	30.0	83.0	전체	30.0	83.0
지역			월평균가구소득		
동부	33.3	92.5	50만원 미만	52.1	70.6
읍면부	29.4	89.6	50~100만원 미만	50.6	84.0
			100~200만원 미만	35.7	94.4
			200~300만원 미만	20.6	97.5
			300만원 이상	12.1	97.6
연령			혼인상태		
24세 이하	19.0	92.4	유배우	31.7	92.3
25~29세	28.7	92.9	이혼·별거	43.2	86.6
30~34세	36.6	92.4	사별	39.4	68.2
35~39세	39.8	90.8			
40~49세	37.4	92.3			
50세 이상	33.7	87.2			
교육수준			국내거주기간		
중학교 이하	30.7	90.4	1년 미만	17.0	94.8
고등학교	33.8	92.1	1~2년 미만	23.9	94.2
대학 이상	31.8	92.9	2~5년 미만	29.5	92.6
			5~10년 미만	39.2	850.1
			10년 이상	43.9	90.1
출신국적			취업경험 유무		
중국(조선족)	38.9	92.6	취업경험 있음	34.8	93.4
중국(한족 등)	32.2	93.5	취업경험 없음	30.4	90.6
베트남	19.2	90.4			
필리핀	38.2	79.2			
몽골·태국·캄보디아	32.5	91.0			
일본	36.9	91.1			
북미·호주·서유럽	12.2	98.1			
기타	35.8	93.3			
(분석대상수)	(283,224)	(283,224)	(분석대상수)	(283,224)	(283,224)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2. 교육 및 각종 지원 등 서비스 사각지대

정부 및 민간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 및 지원을 받은 경험이 전혀 없는 서비스 사각지대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서비스 무경험률은 53.8%로 다문화가족의 과반수 이상이 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예산대비 정책효과가 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동부지역 거주자는 59.7%, 읍면부에 비해 거의 2배 높아서 도시가 농촌

보다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짐을 보여준다. 연령별로는 26~82%로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서비스 무경험률이 높았는데 이는 장기 거주자인 경우 서비스 욕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데서 오는 결과로도 해석되며, 다른 한편 단기 거주자 대상의 서비스 지원에 집중되어 장기 거주자의 대응서비스가 부재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중국 조선족과 한족, 일본, 북미·호주·서유럽 출신자인 경우 서비스 무경험률이 높았다. 이는 서비스 지원이 언어 및 자녀 등 일부 서비스에 제한되어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지 못함을 말해준다.

주관적 생활수준이 '하'인 경우 서비스 무경험이 가장 높았고, 혼인상태가 이혼·별거·사별의 해체가족인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국적취득자인 경우,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한국어 수준이 '상'인 경우 서비스 무경험률이 높아서 다양한 욕구에 비해 초기 적응에 집중된 서비스로 인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7-14>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서비스 사각지대

(단위: %, 명)

구분	서비스 무경험율	구분	서비스 무경험율
전체	53.8	전체	53.8
지역		주관적 생활수준	
동부	59.7	상	51.5
읍·면부	32.1	중	51.3
		하	58.5
성		혼인상태	
남자	79.4	유배우	50.8
여자	47.3	이혼·별거	81.6
연령		사별	76.9
24세 이하	25.9	미혼	82.3
25~29세	31.6	국적취득 여부	
30~34세	44.1	취득	63.1
35~39세	56.0	비취득	45.4
40~49세	65.6		
50세 이상	81.9		
교육수준		국내거주기간	
중학교 이하	50.4	1~2년 미만	32.7
고등학교	55.3	2~5년 미만	34.7
대학 이상	55.3	5~10년 미만	53.3
		10년 이상	69.0
출신국적		취업경험 유무	
중국(조선족)	61.8	취업경험 있음	60.9
중국(한족 등)	73.9	취업경험 없음	44.0
베트남	16.3	한국어수준	
필리핀	19.8	상	71.8
몽골·태국·캄보디아	23.1	중	40.5
일본	49.4	하	38.5
북미·호주·서유럽	81.8		
기타	54.4		
(분석대상수)	(283,224)	(분석대상수)	(283,224)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3. 다문화 인프라 사각지대

다문화 관련 인프라를 이용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각지대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다문화 기관 미이용률은 11~74%로 기관별로 편차를 보였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정부지원여성센터, 외국인 상담소 등 민간단체의 경우 미이용률은 2/3을 상회하였다. 여기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는 특수한 서비스와 욕구에 대응하는 기관이므로 이용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진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특성별로는 동부지역 거주자인 경우, 남성인 경우, 고연령층인 경우, 중국 조선족과 한족 출신인 경우, 주관적 생활수준이 '하'인 경우, 혼인상태가 이혼·별거·사별자인 경우, 그리고 국적 미취득자인 경우, 한국어수준이 '하'인 경우에 다문화 관련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표 7-15>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다문화 인프라 접근 사각지대

(단위: %, 명)

구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주민센터	정부지원여성센터	고용센터	사회복지관	외국인상담소 등 민간단체	(분석대상수)
전체	28.6	74.3	74.1	11.1	79.4	54.7	52.2	71.3	(283,224)
지역									
동부	32.3	75.8	75.3	10.9	79.7	51.8	52.2	70.9	(222,305)
읍면부	14.9	68.3	70.1	11.8	78.9	65.2	52.0	72.7	(60,919)
성									
남자	47.7	81.3	84.5	13.1	84.7	45.4	56.2	70.8	(57,140)
여자	23.7	72.4	71.6	10.6	78.2	57.0	51.2	71.5	(226,084)
연령									
24세 이하	19.0	73.8	71.0	18.5	83.0	74.6	60.4	76.8	(31,781)
25~29세	20.1	70.5	71.2	13.4	80.1	64.9	55.9	73.3	(45,216)
30~34세	23.0	70.7	68.8	10.1	75.4	53.5	49.9	67.6	(44,713)
35~39세	23.3	70.5	68.8	9.2	75.1	45.9	46.8	66.1	(41,299)
40~49세	32.9	75.5	75.6	9.2	78.7	45.6	49.4	69.1	(70,995)
50세 이상	45.8	82.4	86.3	9.2	85.2	54.1	54.0	76.8	(49,21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31.4	78.8	80.2	11.8	85.5	63.9	56.4	78.9	(90,210)
고등학교	27.1	73.0	73.1	9.7	78.1	50.6	51.5	69.5	(126,332)
대학 이상	27.6	70.5	68.1	12.8	73.9	50.0	47.7	64.4	(66,681)
출신국적									
중국(조선족)	30.7	74.5	74.9	9.3	78.3	53.4	50.2	71.4	(63,971)
중국(한족 등)	35.1	78.1	79.0	6.6	80.5	40.6	49.9	71.2	(95,586)
베트남	15.2	72.8	69.9	16.5	83.5	76.5	60.4	77.8	(50,133)
필리핀	10.8	60.0	63.1	13.1	71.9	63.2	48.9	67.1	(14,680)
몽골·태국·캄보디아	14.1	68.5	68.1	13.1	79.3	67.3	56.6	71.0	(11,758)
일본	29.2	73.4	71.0	12.8	77.7	55.2	41.6	66.9	(17,050)
북마호주서유럽	51.7	76.5	76.7	21.5	78.2	59.7	56.2	67.5	(12,796)
기타	30.8	71.3	72.0	14.1	76.0	54.7	52.2	64.3	(17,248)
주관적 생활수준									
상	26.5	74.1	72.9	12.5	78.9	56.1	49.9	70.9	(95,990)
중	27.2	72.9	72.5	12.3	78.4	55.2	53.1	69.6	(133,865)
하	31.6	76.2	77.2	8.6	81.2	53.3	52.2	74.0	(53,368)
혼인상태									
유배우	26.8	73.4	73.2	11.4	79.2	55.5	52.4	71.0	(255,830)
이혼·별거	42.9	81.9	83.2	6.8	83.1	44.1	51.6	72.8	(12,749)
사별	50.2	85.0	84.8	6.0	84.6	67.4	50.3	80.2	(5,293)
미혼	46.6	79.0	89.2	10.8	79.5	40.2	48.9	72.4	(9,353)
국적취득 여부									
취득	30.8	73.8	74.3	6.9	77.8	45.9	46.3	70.0	(133,433)
비취득	26.6	74.7	74.0	14.8	81.0	62.6	57.4	72.4	(149,791)
한국어수준									
상	33.1	75.5	75.0	7.1	77.5	43.0	45.9	68.9	(125,685)
중	22.7	69.9	70.3	10.6	79.0	57.6	53.0	69.8	(70,284)
하	26.8	75.8	76.0	17.2	82.7	69.3	60.5	76.0	(87,225)
취업경험 유무									
취업경험 있음	31.3	75.1	75.6	9.7	79.2	48.8	51.8	70.3	(163,484)
취업경험 없음	24.9	73.1	72.3	12.9	79.9	62.8	52.6	72.6	(119,739)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4. 사회적 네트워크 사각지대

다문화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는 것부터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할 수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사각지대의 특성을 보면 다음과 같다.

결혼이민자귀화자 중에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있지 않는 사각지대는 18~37%이고, 그 중에서 여가나 취미생활 사각지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산·집안 어려운 일 의논 관련, 일자리 관련 네트워크 사각지대가 높았고, 자녀교육 관련해서는 사각지대가 가장 낮았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특성별로는 동부지역 거주자인 경우, 고연령층인 경우, 저학력 소지자인 경우, 출신국가가 중국 조선족과 한족인 경우, 주관적 생활수준이 '하'인 경우 네트워크 사각지대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혼인상태가 이혼·별거·사별자인 경우, 국적취득자인 경우, 취업경험자인 경우 사각지대가 높은 편이었으며, 한국어수준 별로는 일정한 특성을 보이지 않았다.

<표 7-16> 결혼이민자귀화자 특성별 사회적 네트워크 사각지대

(단위: %, 명)

구분	자산·집안 어려운 일 의논하는 사람	일자리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자녀교육 관련하여 의논하는 사람	여가나 취미생활을 같이하는 사람	(분석대상수)
전체	21.7	19.7	17.8	37.3	(283,224)
지역					
동부	22.0	19.7	17.3	37.8	(222,305)
읍면부	20.9	19.6	19.8	35.7	(60,919)
성					
남자	24.3	17.9	14.5	34.6	(57,140)
여자	21.1	20.1	18.6	38.0	(226,084)
연령					
24세 이하	19.1	18.3	14.9	34.8	(31,781)
25~39세	19.8	18.1	16.7	33.4	(45,216)
30~34세	19.3	18.9	17.1	31.8	(44,713)
35~39세	21.6	18.8	17.8	34.9	(41,299)
40~49세	21.3	22.2	24.1	38.8	(70,995)
50세 이상	28.2	19.5	12.2	47.5	(49,219)
교육수준					
중학교 이하	24.9	18.5	19.6	44.6	(90,210)
고등학교	21.9	18.4	19.1	38.6	(126,332)
대학 이상	17.2	14.7	12.9	25.0	(66,681)
출신국적					
중국(조선족)	22.0	17.9	20.4	40.2	(63,971)
중국(한족 등)	26.3	22.2	18.4	44.3	(95,586)
베트남	21.5	16.1	20.2	38.0	(50,133)
필리핀	16.3	12.9	16.5	29.8	(14,680)
몽골·태국·캄보디아	19.7	17.5	20.6	37.4	(11,758)
일본	10.5	8.7	6.1	19.3	(17,050)
북미·호주·서유럽	13.1	7.3	8.1	9.8	(12,796)
기타	19.7	15.4	16.2	30.7	(17,248)
주관적 생활수준					
상	18.6	14.6	15.8	30.2	(95,990)
중	20.3	16.9	17.6	34.3	(133,865)
하	25.5	20.2	19.1	45.5	(53,368)
혼인상태					
유배우	21.2	19.1	18.6	36.7	(255,830)
이혼·별거	31.4	32.6	17.7	51.8	(12,749)
사별	30.6	18.6	10.7	54.9	(5,293)
미혼	18.4	16.9		23.9	(9,353)
국적취득 여부					
취득	24.6	20.0	17.0	40.3	(133,433)
비취득	19.2	15.4	18.5	34.6	(149,791)
한국어수준					
상	21.8	18.4	16.7	37.4	(125,685)
중	21.8	16.1	18.5	35.5	(70,284)
하	21.6	17.5	18.8	38.6	(87,225)
취업경험 유무					
취업경험 있음	21.4	19.5	18.4	37.8	(163,484)
취업경험 없음	22.2	14.9	17.0	36.7	(119,739)

자료: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제3절 시사점

다문화가족의 서비스 수혜현황 및 사각지대를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이민자귀화자의 10명 중 3명은 빈곤을 경험하였으나, 비수급은 4/5로 일부는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해체가족과 장기거주자에서 발견되어 안전망 장치가 필요하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빈곤율은 30.0%로 나타났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비수급 비율은 83%로 일부는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추정된다. 특성별로는 동부지역 거주자, 30대와 40대 중장년층에서, 이혼·별거자와 10년 이상의 장기거주자에서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처할 가능성이 나타났다.

둘째,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서비스 이용수준은 46.2%로 과반수 이상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고, 특히 도시지역거주자, 고연령층 및 장기거주자, 해체가족, 한국어 수준이 높은 경우에서 발견되어 지역, 거주기간 및 혼인상태 등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다문화지원이 필요하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서비스 무경험률은 53.8%로 다문화가족의 과반수 이상이 서비스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예산대비 정책효과가 떨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서비스 비용은 동부지역 거주자가 읍면부보다 2배 높았고, 고연령층 및 장기 거주자의 경우 높았는데, 이는 현재 설계된 서비스가 주로 단기 거주자 지원에 집중되어 장기 거주자의 대응서비스가 부재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이혼·별거·사별자, 한국어 수준이 높은 경우도 동일한 이유로 해석된다.

셋째, 다문화인프라 인지도에 비해 이용수준은 저조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인지도에 비해 이용도가 낮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인지도가 낮았으며, 특히 동부지역 거주자, 남성, 고연령층, 이혼·별거·사별자에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인지도와 이용 제고를 위한 정책설계가 요구된다.

다문화 인프라에 대한 인지도는 21~89%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고 주민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높은 데 비해, 건강가정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정부지원 여성센터의 인지도는 저조하였다. 특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인지도에 비해 절반정도 이용하였고, 고용센터도 1/3 정도가 이용하였다. 또한 동부지역 거주자, 남성, 고연령층, 중국 조선족과 한족 출신, 이혼·별거·사별자, 국적 미취득자, 한국어수준이 하인 경우에

서 다문화 관련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넷째,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사각지대는 여가나 취미생활부터 자산 집안 어려운 일 의논 관련, 일자리 관련이 대가 높았고, 특히 동부지역 거주자, 고연령층, 저학력소지자, 이혼·별거·사별자에서 발견되어 사회통합과 취약가족 예방차원에서 사회적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사회적 네트워크 사각지대는 18~37%이었고, 여가나 취미생활 사각지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산·집안 어려운 일 의논 관련, 일자리 관련 네트워크 사각지대가 높았고, 자녀교육 관련해서 사각지대가 가장 낮았다. 특히 동부지역 거주자, 고연령층, 저학력소지자, 이혼·별거·사별자 등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제8장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방안

- 제1절 다문화가족의 범위 확대와 가족정책·이주민정책 접근으로 전환
- 제2절 효과적 정책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간 역할과 기능 재편
- 제3절 다문화가족 지원 전달체계 개선안
- 제4절 다문화가족 지원의 형평성 담보
- 제5절 가족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지원 사각지대 개선안
- 제6절 다문화가족 지원의 전문화 방향 개선안
- 제7절 다문화가족의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안

8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방안 <



다문화가족 지원 개선방안은 선행연구 고찰,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 진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 분석, 포커스집단 인터뷰(FGI), 다문화가족 특성 및 정책욕구, 사각지대 분석 등을 근거로 도출하였다.

제1절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 확대와 가족정책이주민정책 접근으로 전환

1. 다문화가족 지원 범위 확대

다문화가족의 지원 범위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을 중심으로 한 것에서 다양성에 기반을 둔 이민자와 국내체류외국인을 포괄하는 범위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법령에서 정하는 다문화가족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한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에 의해 출생 시부터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국적법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동법에 의해 출생 시부터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할 경우 적용대상은 결혼이민자, 난민, 영주권자, 전문외국인력, 외국국적동포, 이주노동자 사실혼 관계자 등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전부를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이를 다 포괄하기 보다는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합법적 체류가 아닌 불법적 체류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등 다양한 문화의 가족에 대해서도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다문화가족을 다양한 문화가 있는 가족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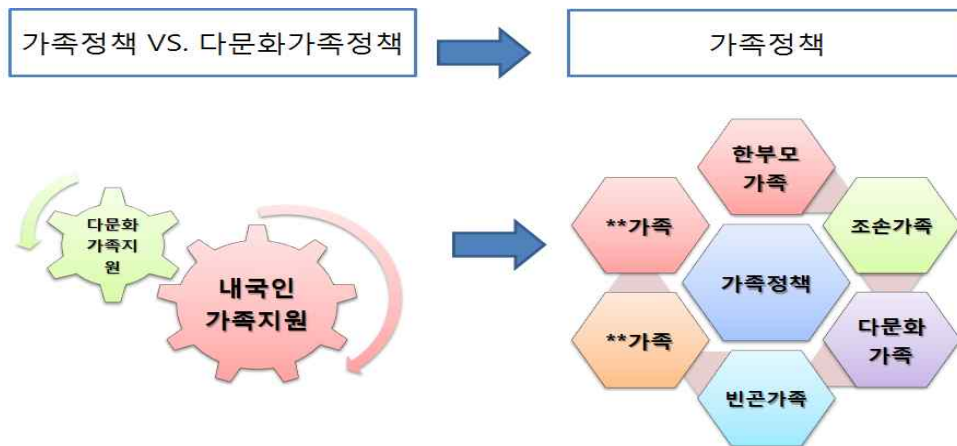
2. 가족정책 틀 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접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 여성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을 접근하는 것이 일반국민과 다문화가족을 분리하는 접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족 정책의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인 접근의 방향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기본법에 의한 지원정책은 여성 결혼이민자를 지원하는 것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가 있는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틀과 함께 가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정책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면서 가족 구성원인 여성 결혼이민자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으로 흡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 조손가족지원처럼 다문화가족 지원도 일부 고유한 욕구를 중심으로 가족정책의 틀에서 조명하면서 이들이 직면한 욕구에 대한 차별된 지원의 방향으로 재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1] 다문화가족정책 대상 확대



여성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에서 이민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정책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족을 가족정책의 측면에서 조명을 할 경우, 현재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접근은 이주민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선진외국에서 결혼이민에 대한 가족의 지원보다 이주로 인한 적응에 초점을 두고 지원을 하는 것과 같이 현재의 여성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접근

에 있어 ‘다문화가족’이라는 분리된 시각보다는 국내로 유입된 이민자의 한국사회의 적응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초기 한국사회의 정착을 지원하고 그 이외의 가족의 다양한 욕구는 가족정책의 틀에서 조명하는 것이 다문화가족을 한국사회의 가족 정책에 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절 효과적 정책수행을 위한 중앙부처 간 역할과 기능 재편

1. 중앙부처 간 기능 초점화 : 다문화가족 욕구 중심

다문화가족중심에서 다문화가족의 욕구 중심으로 부처 간에 기능 초점화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함에 있어 현재 11개 중앙부처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면서 예산의 비효율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부처 간의 중복을 피하고 부처의 역할과 기능에 있어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현재 다문화가족이라는 대상 중심의 지원에서 다문화가족의 욕구와 문제 중심의 지원에 초점을 두면서 부처 간의 기능에 있어 책임의 명료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2. 부처간 컨트롤 타워 정비

부처 간 다문화가족의 특정 욕구중심의 접근을 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현재 부처 간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각 부처의 역할에 대한 책임이 명료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욕구를 포괄하는 독립된 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 보다는 기존의 중앙부처 간의 역할과 기능을 조정하면서 각 부처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력 및 연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할 것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합동을 지향하고 있으나 전체 부처 간의 역할과 기능을 명료히 하면서 조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부처 간의 사업의 조정하며 역할과 기능을 명료히 하는 강력한 추진체계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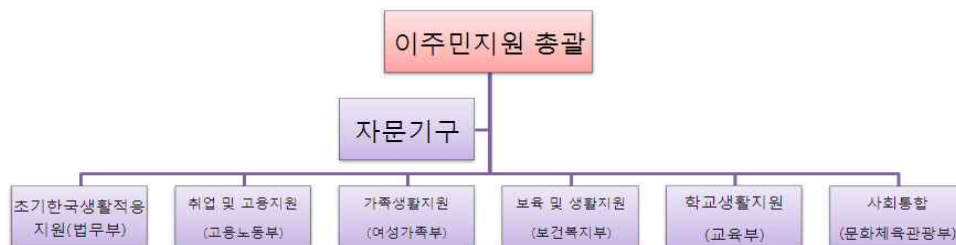
3. 중앙부처 간 역할과 기능 재편방향

중앙부처 간의 역할과 기능조정 및 재편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초기 한국생활 적응지원은 법무부가, 취업 및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가, 다문화가정의 가족생활관련 지원은 여성가족부, 보육·빈곤·장애·노인 등의 복지관련 욕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은 교육부, 다양한 문화가 있는 사회구현 등 사회통합의 지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담당하는 방향을 추진하며, 그 이외의 다양한 욕구에 대한 접근은 다문화가족이라는 분리된 접근보다는 다문화가족이 지닌 욕구와 문제의 측면에서 각 해당 부처가 소관을 하는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부처 간의 과제의 중복을 최소화하면서 다문화가족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명료히 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여성가족부의 경우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해체, 이혼, 갈등 등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적응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해 원국가의 문화적 다양성을 강점으로 한 전문적인 가족지원에 초점을 둔 접근을 지향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의 욕구에 따른 각 부처 중심의 정책과제 수행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다문화가족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 특성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가 배치되어 이들에 의해 서비스가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문화적 효능감을 보유한 학교교사 및 상담가와 학교사회복지사, 고용지원과 관련된 직업상담사, 복지부 및 법무부 직원, 민원담당 공무원등의 문화적 역량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이해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역량을 구비한 인력이 배치되어 정책과제 수행에 있어 효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그림 8-2] 중앙부처 간 역할과 기능 재편방향



제3절 다문화가족 지원 전달체계 개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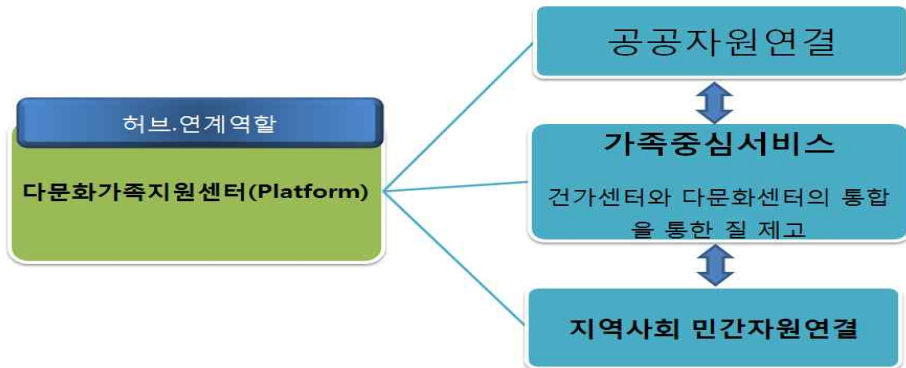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플랫폼 역할 강화

외국인근로자, 여성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 전달체계상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플랫폼 역할로의 강화가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지원과 관련하여 전달체계상의 문제가 지적된 바, 지자체 단위에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소관부처가 다양하고 일원화되어 있지 않을지라도 이를 일선에서 실행하는 전달체계 상의 최일선 기관 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주민을 위한 종합센터로서의 조정과 연계 등의 윈스톱 역할을 담당할 경우 서비스전달체계 상의 분절과 파편화는 최소화 될 것이다.

최근 단계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병합되는 과정에 있는 바, 이 과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부분은 여성 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 상황에서 그 동안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통합에 있어 핵심역할을 수행해 온 기관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는 점이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내국인과 다른 독특한 욕구가 존재하고 있으며 각각의 다문화가족의 고유한 욕구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접근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 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의 적응 및 다문화가족의 가족생활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에의 적응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know-how가 건강가정센터로의 병합으로 인해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건강가정센터로 병합이 불가피할 경우라면, 별도의 다문화팀을 운영하므로 가족정책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능적인 역할 수행을 전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림 8-3]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플랫폼 역할 강화



2.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 제고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접근성 및 이용 용이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취업으로 인해 평일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일부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용을 원하지 않거나 가족원이 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용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농촌의 경우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용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첫째, 주말이나 야간 등 이용 실질적으로 가능한 시간적인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가족원의 반대 등으로 인해 이용에 제한이 있을 경우, 초기 정착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의 이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가정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시간과 인력의 제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선-후배 멘토링을 활용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적응단계별 자원을 연결하도록 하는 지원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농촌지역의 경우 교통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일정 인원이 있는 지역의 경우 다문화가족지원이동사무소 등을 설치하므로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적인 지원연계 및 조정의 역할을 수행함이 요구되며, 필요시 지역자원 등을 활용하여 차량지원을 하거나 정기적인 방문 등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다문화가족의 경우 시간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에 의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의 방문을 꺼리거나 서비스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접근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다문화(가족)센터에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아래의 도식과 같이 접근성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정시간의 한국어를 의무로 이수하게 하거나(프랑스의 경우 40시간), 한국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법률과 한국의 문화와 역사 등에 대한 기본 이수를 필수적으로 시행하고 결혼이민자로 하여금 이를 이수하도록 한다면, 결혼이주여성 본인 및 다문화가족에게 유용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뿐 아니라 다문화가족이 직면한 욕구에 대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그 과정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정이 이뤄지면서 필요시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이 직면한 문제에 실질적인 자원연결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4]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의 접근 및 이용 제고



제4절 다문화가족 지원의 형평성 담보

1. 가족정책 틀 내에서 접근

여러 부처에서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편성된 예산이 다문화가족에 국한된 예산이라는 시각에서 다문화가족이 직면한 고용, 복지, 교육 및 안정 등에 대한 욕구와 문제에 대한 지원이라는 욕구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여러 부처에서 다문화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이를 합산하므로 다문화가족지원정책과제의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것과 같은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역차별 논란

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이 직면한 문제를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예산으로 국한하여 해석하는 것에서 관점을 전화하여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함과 동시에,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국인과 공통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은 공통적으로 지원하고, 그 외에 특별히 필요한 부분만 다문화가족의 욕구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다문화가족 지원의 성과중심의 접근

다문화가족의 이용률을 지향하는 정책은 오히려 필요이상의 이용으로 연결되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용률에서 성과지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이용률에 대한 지자체의 단순비교 등의 경우 욕구가 없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다문화가정을 이용하도록 하거나 다문화가족에 대한 단순지원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 동안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문제점으로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단순지원 등 오히려 내국인과 비교하여 역차별적인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용률에 대한 비교보다는 단순 지원을 지양하고 다문화가족이 직면한 문제의 개선을 지향하므로 성과와 역차별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그림 8-5] 다문화 지원의 성과중심의 접근



3. 다문화가족 지원의 차별성 제거

다문화가정의 특혜성 지원(다문화가정 자녀의 대학입학 할당 및 가산점, 주택분양의 우선순위)은 기회균등 보장 측면에서 내국인과의 역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되므로 다문화의 선별적 접근을 지양하고 내국인의 취약계층 측면에서 동일하게 접근하여 형평

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과 내국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는 특혜성 지원으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대학입시 할당 및 가산점제도와 주택분양 우선순위제도를 사례로 제시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대학입시에 기회균등 할당제를 도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및 다문화가정 자녀 등 사회적 배려자를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 주거안정 지원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또는 민간업체에서 주택공급시 전체 공급물량 중 10% 범위 내에서 무주택세대주인 다문화가족을 포함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공무원 등에서 특별 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혜제도는 다문화가족의 배려라는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내국인과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역차별의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높다.

동 특혜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회균등을 위한 사회통합에 있으나 한국에서 출생하여 한국인으로 생활한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대학 입학 할당이나 가산점에 대한 논리는 설득력을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다문화라는 낙인을 최소화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담보하려면 다문화인이라는 특혜성 지원을 지양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지원 틀인 경제 또는 가족구조 및 신체적 취약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8-6] 다문화가족 지원의 차별성 제거



제5절 가족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지원 사각지대 개선안

1. 접근성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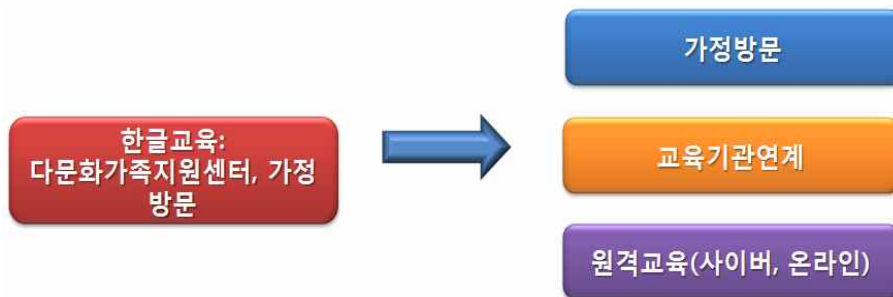
결혼 후 초기적응기에 있어 중요할 수 있는 한국어 강좌의 대부분이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기초의 취업을 한 경우 한국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제로 취업 후에는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고급한국어 교육과정의 경우 개설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혼이주여성의 선택에 의해 강좌가 개설되기 때문에 고급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여성 결혼이민자

의 한국어 능력을 일정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후 자녀의 언어발달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언어역량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일정 수준까지 한국어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시간이나 지리적 혹은 다문화가족센터의 이용에 심리적인 제약이 있을 경우 다문화가족센터 이외에 지역사회 대학이나 학교, 온라인 강좌 등을 통해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하므로 시간적 및 지리적인 접근성을 보완한 지원정책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접근성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즉, 재혼으로 인한 전혼자녀의 중도입국시 심사기간이 2년 정도 소요되는 과정에서 가정에서 방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지 못하는 것은 아동인권선언문이 지향하는 가치와도 상충되는 부분이다.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공적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영유아 및 아동이 적절한 교육 및 양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입국심사와 무관하게 아동의 보육과 교육 지원이 행해질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동인권차원에서의 공감대 형성 및 이와 관련된 실효성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그림 8-7] 접근성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개선



2. 가족생활주기별 욕구에 따른 지원 시스템 마련

초기 입국 후 결혼 전 상대방 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와 결혼 후 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예비 배우자가 함께 참여하는 결혼준비교실 등을 진행하여 결혼 이후의 가족 갈등

을 예방하는 접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의 기능강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하여 취학전 자녀의 양질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역차별의 논란이 되었던 다문화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일반가정에 대한 무상보육으로 확장되므로 역차별의 논란은 해소되었다. 현 보육지원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양육수당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도록 설계되어 다문화가정의 부모가 자녀 양육과 관련된 보육의 선택권과 이용권을 보장하고 있다. 아동의 건전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의 이용을 권장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 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인 가정의 기능과 역할을 제한할 소지도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 이용과 함께 가정보육 등 보육의 선택권을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와 함께 양질의 보육을 위해 가정에서의 보육이 질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 이들의 사회성과 자기효능감을 증진하기 위한 개입이 보육시설 및 가정보육에서 영유아기 발달단계별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효과적 부모역할에 대한 교육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학령준비기의 부모역할, 학령기의 부모의 역할, 사춘기 자녀와의 대화법 등 다문화자녀의 건전양육을 직접지원 하는 것 뿐 아니라 모에 대한 자녀양육교육 뿐 아니라 부모가 함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역할 교육 등,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방문생활지도 대상자의 경우 13세까지 한정이 되어 있어 그 이후에 도움이 요구되는 청소년은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불법체류자의 아동의 경우 교육 및 복지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아동의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한국생활의 안정적인 적응을 지원하는 방향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다문화자녀가 시기적으로 요구되는 교육과 지원이 적시에 연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 자원이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3. 여성결혼이민자에서 가족중심의 지원으로 전환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주로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족의 발달 주기에 따른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이나 결혼이주남성에 대한 지원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부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연령의 증가에 따라서 가족생활주기 상 다문화가정 부부가 중년기·노년기를 맞게 되므로 이들의 생활적응 및 지원과 관련된 정책이 요구된다. 특히, 부부간 연령차가 클 경우, 배우자의 노년기는 빠른 시기에 도래되며, 사별이나 재혼과 관련된 새로운 욕구가 출현 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초기입국 후의 한국생활 적응과 자녀의 출산과 양육 및 교육에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생활주기에 따른 다양한 욕구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중년기와 노년기 부부관계 개선, 노년기의 우울, 노년기의 경제적인 문제 등 새로운 욕구와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 지역사회 서비스기관과의 연계

다문화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함에 있어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 최일선 서비스 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인력과 재원의 면에 있어 현실적으로 제한이 따르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을 수도 있으나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지역사회의 전문화된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의 전문화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정신보건센터, 청소년센터, 가족상담센터 등 다문화가족센터의 한계로 인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전문기관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자의 초기 정착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능한 짧은 기간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과 다문화가족의 독특한 상황으로 야기되는 문제와 욕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는 것은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일반적으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욕구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내국민과 동일한 기준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아래의 도식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의 적응 및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선별에서 보편으로, 그리고 지원에서 선택적 이용을 지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8-8] 지역사회서비스기관과의 연계



제6절 다문화가족 지원의 전문화 방향 개선안

1. 지역사회 사례관리접근 : 복합적 욕구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의 가족위기 혹은 갈등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초기적응과 자녀의 학교적응 문제 뿐 아니라 다문화가정의 가족생활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위기가정 혹은 위험에 노출된 다문화가정에 대해 가족 단위의 사례관리를 통해 이들의 복합적인 욕구와 지역사회의 자원의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사회적응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상담, 자원 연결, 가족의 정신건강의 문제, 자녀의 학교적응 문제, 갈등 및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복합적인 욕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2. 학교 내 상시인력 필요 : 중도입국 자녀의 학교적응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복합적이면서도 전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학교 상주형 사회복지사나 다문화역량을 구비한 청소년상담사의 개입 등을 통해 이들의 학교생활의 안정적인 적응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3. 인력의 문화적 역량 강화 및 다문화상담인력 배출

대인서비스의 질은 인력의 전문성에 크게 의존을 하게 된다. 현재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문화적인 민감성과 역량은 높지 않은 것인 현실이다(여성가족부, 2012; 최소연, 2012). 따라서 우리나라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문상담인력의 확보와(국회예산처, 2009)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인력의 전문화 추진(강복정, 2012)은 필요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교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상담가 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전문 인력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문화라는 용어로 한국문화 이외의 다른 문화를 단일화 하고 있는 것은 다문화의 관점과 상치되는 것이며 문화의 강점을 실천 과정에서 활용함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다. 각 인종과 민족, 국가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대한 인식, 이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를 실천과정에서 강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겸비한 다문화인력들이 양성되어 실천과정에서 다양성의 존중과 다양성을 강점으로 활용하는 문화적 역량의 실천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문화적 역량을 교육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비해 먼저 다문화를 경험한 미국의 경우, 상담사, 보건 및 의료 인력, 사회복지사, 교사 등의 문화적 역량을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졸업 전에 기본적인 역량을 구비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다. 다양성의 한국 사회에서 서비스 질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다양한 인력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접근이 대학교육에서 수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문화충돌 예방을 위한 ‘문화 안전망’ 구축

미국의 9.11 테러 이후 반-무슬림 감정이 고조되었고 다문화주의를 표방하던 나라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때로는 정치적인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노르웨이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또한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이 문화 간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캐나다의 Host Program처럼, 이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안정적인 자국민과 이주민을 매칭해 주는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호주의 경우 다문화 서비스 담당공무원(Multicultural Service Officers)이 호주 전역에 70명 정도 관련 부처에 상주하여 이민자와 정부 간 의사소통을 돕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타 문화 간 상호 이해와 의사소통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할 때 사회전반의 문화적 민감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문화 안전망’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절 다문화가족의 합리적 지원기준 마련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안

1. 다문화가족의 합리적·균형적 지원기준 마련

가. 다문화가족 우선순위 설정에 따른 지원기준 마련

해외사례를 살펴볼 때 우리보다는 훨씬 체계화된 이민자 지원정책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6년 이래 추진되어 온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문화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이 절실히 요청되므로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우선되고 인식이 고양되며 다문화 현상에 대한 자문화중심주의나 동화주의적 관점은 상호존중과 다문화주의 관점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 기준이 개선되어야 한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이민자 지원 목표를 다문화주의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나 스웨덴의 경우처럼 이주자의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해 이주자의

모국어를 존중하고 그 자녀에 대한 지원을 펼치는 것이 좋은 예라 하겠다. 이민자 부모가 자녀 양육에 있어서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할 때 특별 지원을 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만 하다. 자칫 각 민족의 고유성을 강조하는 듯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자신의 민족 자긍심 함양을 통해 우리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현재 정부정책이 아동보육 및 교육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실제 이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으로 특히, 고용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이나 취업 지원을 필요로 하므로 지역별 특성에 맞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직업교육이나 기초적인 직업훈련,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지원이 요청된다. 호주의 초기정착 가족지원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취업지원계획 프로그램이나 캐나다의 이주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취업상담자 제도의 도입, 고용지원금 제공,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사회적 기업 지원, 생계형 일자리 연계 확대 등이 요청된다(이정민, 2012). 이러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취업지원방안은 일반 저소득층 대상의 취업지원과는 많은 면에서 차이가 있다. 농어촌 중심의 거주지역이나 낮은 연령, 언어장벽, 취업에 대한 신념, 구직방식이나 직장생활의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세심한 접근이 요청된다.

나. 다문화 관련 기관 간 지역사회 네트워킹을 통한 지원기준 마련

최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이주민센터, 사회복지관 실무자들이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많은 장애요인을 경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마련은 공공 및 민간 관련기관 간 지역사회를 기반한 협력을 통해 마련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내 중복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상호 정보가 필요하며 좀 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위기 가족에 대한 지원을 특화하기 위해서는 실무자 간 팀 접근이 요청된다. 한 예로, 가족원의 정신건강상의 문제나 알코올 문제, 가정폭력 문제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알코올상담센터, 가정폭력 지원기관과 긴밀히 사례회의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캐나다의 'Inter-Action Projects and Events' 처럼 지방정부, 주정부, 사회기관, 비영리기관의 통합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공공-민간 기관의 협력과 네트워킹에 대한 지원이 좋은 예라 하겠다. 또한, 호주의 이주민 정착지원 체계에서도

보듯이, 정착지원 프로그램이나 난민, 이주자의 서비스 욕구에 초점을 두고 적합한 서비스기관으로의 의뢰와 지역사회 관련 서비스를 조정하는 호주 이민청(DIMA)의 이주민 정착계획부서가 핵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 배치나 전문인력 양성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 내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또한 지역사회 내 관련기관 간 팀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각각의 기관에서 제시하는 지원기준은 큰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다문화가족 지원기준은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기준이 적절하다고 하겠다.

다. 다문화 취약한 계층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 보편적인 초기적응서비스 후

호주나 프랑스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 이민자의 초기적응에 필요한 언어와 문화 교육을 실시하되, 3년~5년 정도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취직하기 어렵거나, 취업하였다도 언어가 부족하여 직장 내 언어교육이 필요한 경우,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해체된 가족의 경우, 직업훈련 시 아동보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자녀를 출산하거나 본국에서 자녀를 동반하게 된 경우 등 좀 더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취약한 계층에게 서비스를 연장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보편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정기한을 정하고, 그 외의 예산으로는 사회적응에 어려운 다문화가족의 신청을 받아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2.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개선안

가. 지원대상의 균형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지원정책에서 이민자, 학생, 가족에 대한 지원의 균형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나 중도입국청소년을 다문화로 분류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지역사회와 학교에서의 통합을 저해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이주민정책을 통해 학교에서 일반아동과 동일하게 교육의 기회

를 부여하면서 언어와 적응에 있어 개별적인 접근을 지향하고 있다. 학생을 다문화학생으로 분류하는 것이 오히려 차별적인 접근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다문화가족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통합적 교육과 접근이 요구된다.

나. 거주기간을 고려한 정책차별화

결혼이민자는 한국사회 거주기간에 따라서 일반 지역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초기 적응기간이후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기관을 이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사회에 적응을 지향하는 방향이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지원서비스의 포괄성

여성 결혼이민자의 역량강화 및 지역사회참여제고를 위한 서비스의 포괄성이 요구된다.

여성 개인으로서 독립적 삶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 비중이 부족한 상황이고(마경희 외, 2011),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에서의 경력을 활용한 일자리 연계는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취업의 어려움으로 한국어가 서투러(25.5%), 맞는 일자리가 부족해서(22.3%), 한국에서 경력이 부족해서(18.3%), 외국인에 대한 차별(14.5%) 등으로 취업과 관련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3). 또한 취업과 관련하여서도 언어적 역량 뿐 아니라 자녀 양육문제 등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기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취업을 위한 언어지원과 함께 지역사회의 특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역량 등을 고려한 일자리가 확충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 취업을 위한 구직, 취업, 취업 후 적응, 취업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보육, 언어 등)등의 포괄적인 지원이 있어야 결혼이주여성의 역량 강화 및 지역사회참여가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청년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현재의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보다는 다문화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보육교사, 다문화상담사, 다문화사회복지사, 다문화보조교사 등 이중문화의 강점을 활용한 전문적인 일자리의 창출과 사회적 역할의 가치에 대한 인정을 통해 사회통합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 강복정 (2012). 한국의 다문화가족정책 및 서비스의 현황분석-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5(1), pp143-184.
- 강휘원·강성철(2010). “독일 이주정책의 변화와 사회통합 거버넌스,”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4(4): 291-316
- 강휘원(2007).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과 지방정부. 2007년 한국행정학회·구미시 춘계공동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 77-96.
- 구건서(2004). 다문화주의 이론과 색채. 「현상과 인식」. (90), pp. 29-52.
- 국민권익위원회(2011).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예산정책처(2009). 11월 29일 보도자료.
- 길강목(2011).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의 현황과 과제,” 「다문화사회연구」 4(2):
- 김계선(2010). 한국의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광운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남국(2005). 다문화시대의 시민: 한국사회에 대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45(4), pp. 97-121.
- 김민경 (2012). 다문화가족의 이해. 이담북스.
- 김세환(2011). 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 평가와 과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세훈(2006). 문화사회의 문화정책. 한국행정학회·서울행정학회·한국거버넌스학회 2006년 도 하계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461-470.
- 김승권·김유경 외(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영란·장혜경·김소영·선보영(2012). 지역특성별(도농, 도농복합형)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모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미(2009). 한국 사회 다문화정책의 방향성. 「지역사회」. 한국지역사회연구소. 74-78.
- 김용희(2011).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정책대응.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유경·조애저·최현미 외(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유경·최현미·김가희 외(2012).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응성(2011). 한일양국 다문화정책의 변화과정 비교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이선·민무숙·최은희(2010).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정해숙·김영옥·마경희·김효선·이순미(2012a). 다문화가족지원사업군 심층평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이선·주유선·방미화(2012b).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사각지대 대응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준식·안광현(2012).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책연구. 12(4), pp. 127-150.
- 남영옥(2012).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 다문화교육연구. 5(2), pp.173-191
- 마경희·정해숙·이순미·김효선(2011) 범부처 다문화사회 정책예산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기관(2009). 다문화시대 결혼이민자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 박기관(2011). 다문화시대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1(1), pp. 193-213.
- 박병희(2013). “복지의 대명사 스웨덴, 최근 연일 소요 사태,” 아시아경제 2013.05.23.
- 박현주(20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 욕구반영 비교연구: 학령기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의 서비스 이용경험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배금태(2011). 다문화가정의 실태와 정책적 지원방안: 구미시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백석인(2008) “스웨덴의 이민자 복지와 사회통합 정책에 관한 연구 및 한국사회에 주는 시사점,” 「스칸디나비아 연구」 9: 35-68.
- 서병훈(2011). 국제결혼 이민자가족의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호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원상(2011). “다문화사회의 법적 기반에 관한 소고: 국제인권법을 중심으로,” 「法學研究」 Vol. 21(1): 161-190.
- 설동훈(2010). “특집 : 한국의 다문화제도화 방안: 이민자 사회통합 관련 기금 제도의 국제비교,” 「민족연구」 44: 145-200.
- 설동훈·강기정·이병하(2011).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관련 정책과제 개발 및 발전방안 연구: 우리나라와 외국의 정책현황 및 추진체계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여성가족부.
- 손경희·정일선(2010). 한국의 다문화제도화 방안; 지방정부 다문화가족서비스 지원체계의 효

- 올화 방안 -안동시 사례를 중심으로 민족연구. 44. pp 92-126.
- 신재주(2010). 일본, 독일, 호주의 다문화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원. 17(3), pp. 5-37.
- 여성가족부(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 보도자료.
-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3a).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2013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3b)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2013년 시행계획.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2012). 제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여성가족부 관계부처 합동
- 여성정책연구원(2012). 2011년도 제정사업 심층평가보고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군 심층평가. 여성정책연구원.
- 원숙연(2008). 다문화주의시대 소수자 정책의 차별적 포섭과 배제: 외국인 대상 정책을 중심으로 한 탐색적 접근, 한국행정학보, 42(3), pp. 29-49.
- 유숙란 (2010). “독일의 이민정책 결정과정 분석 : 2004년 이민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 50(2): 213-235.
- 은선경(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가족기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경희(201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다문화가족의 정의 및 범위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32, pp.509-536.
- 이로미·장서영(2010). “다문화국가 이민자 정착 정책 및 지원 서비스 분석: 미국과 캐나다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1): 179-208.
- 이병량(2011). 한국 정책연구에서 다문화정책의 수용 :우리는 다문화정책을 연구하고 있는가. 「하계학술대회논문집」. 한국정책학회. pp. 205-220.
- 이삼식 외(2009).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 이선주 외(2008).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사회서비스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성순(2011). “한국과 독일의 사회통합정책 연구 :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9: 179-208.
- 이용승(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pp. 177-205.
- 이용재(2010). “다문화정책에서의 새로운 배제: 제3세계 남성과 결혼한 한국여성에 대한 배제의 모습을 중심으로,” 「젠더와 문화」 3(1): 131-173.
- 이정민 (2012).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경제적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윤(2010). 한국의 다문화정책 관련법에 관한 일 고찰. 「다문화콘텐츠연구」. 중앙대학교 문화콘텐츠기술연구원. 4, pp.163-185.
- 이혜승·김난영(2011). 다문화가족지원정책 성과평가.
- 임형백(2012). “미국 이민정책 연구 : 시기 구분과 특징,” 「한국정책연구」 12(2): 273-300.
- 장명선·은애(2011).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방안 연구. 서울여성가족재단.
- 장문자(2010).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울산광역시 남구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임숙(2012).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 장혜경(2006).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자치행정연구」. (5), pp. 97-110.
- 정상기·정윤수(2010).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에 관한 실태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7(2), pp. 229-255.
- 정상우(2009).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체계 개선 방안 연구. 법학논총, 26(1), pp.483-510.
- 정일선(2006). 결혼이민자가족실태와 통합의 가능성. 경북여성정책개발원, pp. 127-114.
- 조석주(2007). 다문화공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강화 방안
- 조현미(2006). 국제화시대의 지자체의 역할: 일본의 가나가와현과 대구광역시의 국제이해 교육을 사례로. 「일본어문학」, 33, pp. 479-508.
- 조흥식 외(2010).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 주성훈(2010).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예산정책처
- 지종화·정명주·차창훈·김도경(2009). 다문화정책 이론 확립을 위한 탐색적 연구. 「사회복지정책」.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36(2), pp. 471-501.
- 최무현(2008). 다문화시대의 소수자정책 수단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의 ‘다문화정책’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2(3), pp. 51-78.
- 최소연(201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의 문화적 역량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사회복지학. 39, pp. 113-141.
- 통계청(2010). 시도별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2012). 주민등록인구통계.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www.liveinkorea.kr
- 한승준(2008). 프랑스 동화주의 다문화정책의 위기와 재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42(3), p.463-486.

- 안전행정부(2010). 201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 안전행정부(2012). 201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 홍기원(2009). 한국 다문화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공공관리학보』. 한국공공관리학회. 23(3), pp. 169-189.
- Akkerman, T. and Hagelund, A. (2007). “Women and children first!’ Anti-immigration parties and gender in Norway and the Netherlands,” *Patterns of Prejudice* vol. 41(2): 197-214.
- Banting, K. and Soroka, S. (2012). “Minority nationalism and immigrant integration in Canada,” *Nations & Nationalism* 18(1): 156-176.
- Bloemraad, I., Korteweg, A. and Yurdakul, G. (2008). “Citizenship and Immigration: Multiculturalism, Assimilation, and Challenges to the Nation-State” *Annual Review of Sociology* 34: 153-179.
- Carter 와 McGoldrick(1999), 권진숙 외(2006). 가족복지론, 공동체, 재인용.
- Castles, S. and Miller, M. (2009). *The Age of Migration*, Palgrave Macmillan.
- Collins, Jordan, 그리고 Coleman(1999), 이원숙(2012). 가족복지론. 학지사. 재인용.
- Daley, Suzanne (2011) “Swedes Begin to Question Liberal Migration Tenets” *The New York Times* 2011. 02. 26
- Dib, K., Donaldson, I. and Turcotte, B. (2008). “Integration and Identity in Canada: The Importance of Multicultural Common Spaces,” *Canadian Ethnic Studies* 40(1).
- Favell, A. (2001). “Integration policy and integration research in Europe: a review and critique” *Citizenship Today: Global Perspectives and Practices* edited by T. Alexander Aleinikoff and Doug Klusmeyer pp.349-399.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e/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Givens, T. E. (2007). “Immigrant Integration in Europe: Empirical Research”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0: 67-83.
- Hero, R. E. (2010). “Immigration and Social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13: 445-468.
- Integration Report (2009).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 Bertelsmann Stiftung
- Koeth, E. (2010). “Multiculturalism: a review of Australian policy statements and recent debates in Australia and overseas Research” *Parliamentary Department Report Paper* 6.

- Koopmans, Ruud (2013). "Multiculturalism and Immigration: A Contested Field in Cross-National Comparis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39: 147-169.
- Krysan, M. (2000). "Prejudice, Politics, and Public Opinion: Understanding the Sources of Racial Policy Attitud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135-168.
- Martin, P. L. (2003). *Promise Unfulfilled: Unions, Immigration, and the Farm workers*. Ithaca,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 Ministry of Integration and Gender Equality (2009) "Swedish Integration Policy" FACT SHEET: 1-4
- Mulholland, Mary-lee and Biles, J. (2004). "Newcomer Integration Policies in Canada"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 Paluck, E. L. and Green, D. (2009). "Prejudice Reduction: What Works? A Review and Assessment of Research and Practi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0: 339-367.
- Romero, V. C. (2009). *Everyday Law for ImmigrantS*. Boulder and London: Paradigm Publishers.
- U.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2009) "Summary of Immigrant Eligibility Restrictions Under Current Law" retrieved by
- Wayland, S. (2010). *Integration of Immigrants through Local Public Services*. Region of Peel Immigration discussion Paper, Department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 Wolfensberger, W., Tullman, S.(1982) "A Brief Outline of the Principle of Normalization", *Rehabilitation Psychology*, 27(3), pp. 131-145.

<http://aspe.hhs.gov/hsp/immigration/restrictions-sum.shtml>

<http://australia.gov.au/topics/benefits-payments-and-services/migrants-payments-and-services>

<http://australia.gov.au/topics/benefits-payments-and-services/migrants-payments-and-services>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052316562289062&nvr=Y>
Government Offices of Sweden Regeringskansliet Policy Areas-Integration

http://www.aph.gov.au/About_Parliament/Parliamentary_Departments/Parliamentary_Library/pubs/rp/rp1011/11rp06

<http://www.cic.gc.ca/english/index-int.asp>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http://www.government.se/sb/d/2188/a/19443> Swedish Migration Board(SMB)

<http://www.health.gov.au/>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Health and Ageing)

<http://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crisis-payment>
Special Benefit

<http://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ervices/centrelink/special-benefit>

<http://www.humanservices.gov.au/customer/subjects/payments-for-visa-holders>
Crisis Payment

<http://www.immi.gov.au/> (Australian Government Department of Immigration and
Citizenship)

<http://www.immi.gov.au/living-in-australia/a-multicultural-australia/government-policy/australians-together/support-programs/>

<http://www.immi.gov.au/media/fact-sheets/06australias-multicultural-policy.htm>

http://www.immi.gov.au/media/publications/multicultural/pdf_doc/amac-response-to-recommendations.pdf

http://www.immi.gov.au/media/publications/multicultural/pdf_doc/people-of-australia-multicultural-policy-booklet.pdf

http://www.migrationsverket.se/info/start_en.html

<http://www.mofat.go.kr/inboard/freeboarddetail.jsp?txtBoardId=F0005&txtBoardSeqNo=64026>

http://www.nytimes.com/2011/02/27/world/europe/27sweden.html?pagewanted=all&_r=0

<http://www.sweden.se/eng/Home/Society/Migration/>

<http://www.tisnational.gov.au/Non-English-speakers/Frequently-Asked-Questions-for-non-English-speakers>

<http://www.welcomebc.ca/Communities-and-Service-Providers/Service-Providers/funded-services/Immigrant-settlement-agencies.aspx>

<http://www.whitehouse.gov/issues/immigration>

<http://www.cic.gc.ca/english/newcomers/map/services.asp>

Multicultural Family Standard for Support Improvement Plan Research

Kim YuKyung

Choi Hyunmi

Choi Soyun

Kim Kahee

Since a turning point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had been occurred by enactment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in 2008, amendment of the bill extended the cover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to 'Koreans by recognition or nationalization' and 'foreigners and nationalized citizens', so specification and ramification of the policy are required. The central government establishes and pursues 「The first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basic plan」 「The Secon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basic plan」 based o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and municipal governments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local plan related with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nd the oper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ies provided by cent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and private sector are similar and duplicated. Practices partitioned by administrations result in wasteful budget spending. The policy supports are too uniform, temporary and showy, so its effects are decreased. Because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only focuses on the initial settlement and adaptation of married immigrants, it can not include the changes of multicultural family frequency and the dynamic and different desires appearing in multicultural family.

Moreover, The amount of budget invested into the support reach 200 billion won but the proportions of multicultural family account for 0.53% in all population, therefore, the criticism that the budget has been recklessly supported for specific minor group, as well as the arguments about reverse discrimination against Koreans are suggested, which act as a conflict-induced factor against Koreans and likely result in lowering the social integration. However, the studies of multicultural family, which have been conducted, are very limited to fragmentary and individual aspects around general married immigrants and foreign workers, thus, the basic studies comparing and analysing the multicultural family and Korean policies are not sufficient to induce the integrative and balanced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hus, the study for inferring the beneficial conditions and blind spot of multicultural family policy to create balanced policy including multicultural family with various features in coping with multicultural society is required. In particular, A standard for new support frame needs to be developed by examining the current support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y withing the frame of overall welfare policies since a new policy for multicultural family policy is required due to the change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expansion of subjects of the policy. The reverse discriminate and unbalanced factors should be revealed by comparing beneficiaries of policy and standard of support with entire standard of social work services and analyzing them.

The aims of this study are to induce the improvements in the diversified aspects such as scope and subjects of multicultural policies, transmission system, specialization and community integration etc and develop the standard plan of rational and balanced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by evaluating and examining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policy

in terms of supply, and analyzing the beneficiary condition and blind point, policy needs in terms of deman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multicultural family extends from family-based married immigrants to diversity-based immigrants and foreigners staying in Korea. Moreover, the multicultural family policy should be accessed in terms of various forms of family within Korean family policy frame; second, the functions of inter-agency should be focalized and a control tower has to be arranged through the reorganization of role and function of central government; third, the platform role of multicultural center must be strengthened and temporal, geographical and psychological accesses to and use of cultural services should be elevated to improve the transmission system; fourth, it is necessary to approach multicultural needs from a view of family policy and multicultural policy based on the performance to ensure the fairness of multicultural policy. In addition, some preferences such as quota of university entrance, grant of additional points and priority setting of house sale should be refrained and Korean poor classes have to be equally treated to remove the discrimination of multicultural policy; fifth, security of various infrastructures, strengthening of public system, focus shift from married immigrant to the change of family development frequency such as middle and old age should be considered together and service specialization through networking with various agencies in a community has to be pursued to improve the blind points by family life cycle and eliminate the temporal, geographical, psychological and institutional limits; sixth, for the enhancement of multicultural support specialization, the case management access is required, and base for experts training and cultural capability

reinforcement of them as well as cultural safety net should be established to protect cultural conflicts; seventh,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tandard requires the examination of diversified factors such as priority setting, community networking between agencies related with multi-culture and general and selective support standards based on residence periods, as well as support balancing of beneficiaries, differentiation of the policy by considering residence periods and comprehensive supports.

연구보고 2013-45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2013년 10월 일 인쇄

2013년 10월 일 발행

발행인 : 000

발행처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전화 / 02-2075-4500(代)

인쇄처 : 경성문화사

전화 / 02-786-2999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행정간행물등록번호 11-1383000-000445-01